



PUBLIC PROCUREMENT MANAGER

공공조달관리사 마스터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필기 제1과목

출제기준 완전매핑판 · 이론+시험전략 통합

2026 출제기준 완전매핑

PART 1 · 제1장

공공조달 개요

① 학습목표 · 핵심키워드

PART 1 · 필기 제1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30문항)

제1장 「공공조달 개요」는 전 과목의 **토대가 되는 장**입니다. 공공조달이 무엇이고(정의·연원·중요성·목적·범위), 누가 참여하며(참여자·이해관계자·수요자·공급자·대상물), 민간 구매와 어떻게 다르고(특성), 어떤 법적·조직적·운영적 틀 위에서 실행·감독되는지(구성체계)를 단계적으로 익힙니다.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이 장을 학습한 후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공공조달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 공공조달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 공공조달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공공조달의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를 설명할 수 있다.
- 공공조달과 민간조달(구매)의 **특성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 공공조달 프로세스가 **순환적·연속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 공공조달의 **구성체계**에 따른 실행·관리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 (Keywords)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 공공조달 특성 · 공공조달 중요성 · 민간조달(Private Procurement) · 구매(Purchasing) · 공공조달 성숙 단계 · 공공조달 구성체계(Public Procurement Framework) · 비용 대비 가치(VFM) · 전략적 활용 · 본원적 역할

이 단원의 4단 구조

- ① 학습목표·핵심키워드 (이 화면)
- ② 본문 — 1-1 정의·목적 / 1-2 참여자 / 1-3 특성 / 1-4 구성체계 (법조문→해설→도식→사례)
- ③ 요약노트 — 한눈에 보는 핵심
- ④ 예상문제 —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1-1

공공조달의 정의 및 목적

이 절의 핵심

공공조달은 공공부문이 공공재정으로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활동이며, 정의는 **협의(공급 초점의 전통적 정의)**와 **광의(정책 성과 지원의 전략적·현대적 정의)**로 나뉩니다. 핵심 가치는 **VFM·윤리·경쟁·투명성·책임성**입니다.

1-1-① 공공조달의 정의

☞ 근거법령(예정) · 조달사업법 § 2 · 국가계약법 § 2· § 3 · WTO 정부조달협정(GPA)

단어적 의미에서 공공(public)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조달(procurement)은 구매·획득·공급을 뜻합니다. 따라서 공공조달은 **공공부문이 필요한 물품·용역(서비스)·공사를 구매하는 절차**로 정의됩니다(Thai, 2001). 다만 이 정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그 넓이가 달라집니다.

관점	정의
협의(전통적 정의)	정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공공재정 을 활용해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일련의 연계된 활동 . 조달 대상물의 공급 에 초점을 둔 수요·공급 관점의 정의
광의(현대적·전략적 정의)	공공서비스의 실행·관리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정부 정책·제도의 성과 를 효율성과 효과성의 균형 속에서 지원·주도하는 활동. 조달의 정책적 기능(전략적 활용) 에 중점을 둔 정의

공공조달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핵심 전달 수단으로,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공조달 규모는 국가 **GDP의 12~15%**, OECD 회원국 기준 정부 총지출의 약 **34%**에 이릅니다. 공공조달에 요구되는 핵심 기본 원칙으로는 **비용 대비 가치(VFM: Value For Money)·윤리(Ethics)·경쟁(Competition)·투명성(Transparency)·책임성(Accountability)**이 강조됩니다(Siyal & Xim, 2019).

연원 — 고대에서 현대까지

공공조달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BC 2700년경, 서기관의 자재·인력 관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세에는 왕실·교회·영주 중심으로 체계화되었고, 근대에는 나폴레옹 시대 「**교량과 도로의 조직에 관한 제국 칙령**」(1806)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3원칙 — **공개적 광고·경쟁입찰·운영 통제** — 을 확립했습니다. 현대적 공공조달 체계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총력전 대응)과 전후 국제기구(UN·World Bank·GATT·WTO·OECD 등)를 거치며 표준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임시외자총국, 1961년 **조달청** 설치로 공식화되었습니다.

1-1-② 공공조달의 목적

☞ 근거법령(예정) · 조달사업법 § 3(기본원칙) · 국가계약법 § 5(계약의 원칙)

공공조달의 목적은 규칙에 설정된 원칙·절차에 따라 자격을 갖춘 공급자와 **시기 적절하고 비용 효율적인 계약을 체결해 조달**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봅니다.

차원	내용
① 기능·역할 수행	공공부문의 기능·역할 수행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고려 해 공급
② 원칙·가치 준수	법령·규정·절차에 부합하도록 책임감 있게 수행하여 경쟁성·투명성·공정성·청렴성 등 핵심 가치와 원칙 준수
③ 정책·제도 지원·주도	국가적 수준에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실행·성과를 지원 하고 주도 하는 역할 수행

목표는 다시 **운영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됩니다. 운영적 측면은 차별 없는 경쟁을 통해 비용 대비 가치에 기반해 대상물을 공급하는 것(**본원적 역할**), 정책적 측면은 이를 전제로 지속가능성·혁신·사회적 가치 같은 국가 의제를 지원·주도하는 것(**전략적 활용**)입니다.

운영적 목표 (6)	정책적 목표 (3)
비용 대비 가치(VFM) · 공정성(Fairness) · 투명성(Transparency) · 책임성(Accountability) · 효율성(Efficiency) · 경쟁성(Competition)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혁신(Innovation) · 사회적 책임성(Social Responsibility)

 **공공조달 성숙도 7단계 (Harland et al., 2013)**

운영적 목표(1~5단계) → 1 공급대상 확보 · 2 법령·규정 준수 · 3 예산 효율 운영 · 4 성과 책임 · 5 **비용 대비 가치(최적가치)** 추구. **정책적 목표(6~7단계)** → 6 정부 정책 지원 · 7 정책의 본질적 성과 구현. 5단계는 운영적 효율성을 기반으로 정책적 효과성으로 **전환·균형**하는 단계로, OECD·EU 선진국은 대부분 5단계 이상을 운영합니다.

1-1-③ 공공조달의 범위

 근거법령(예정) · 조달사업법 시행령 § 4 · 국가계약법 § 4(국제입찰) · 헌법 제119조

공공조달의 범위는 체계를 구성하는 **7개 차원**에서 살펴봅니다.

범위 차원	내용
① 조달 대상물	전통적으로 물품·용역·공사 3유형. 최근 결합·복합·융합 상품으로 확대
② 수요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중심. 위임·위탁·보조사업으로 공공재정을 활용하는 민간기관까지 포함
③ 공급자	민간 개인·기업·단체. 필수 공익산업(주택·전력·상하수도·도로·철도 등)을 공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도 포함
④ 조달 재원	세금 기반 예산이 주된 재원. 기금·특별회계, 나아가 민관합동사업(PPP)의 민간 투자자금까지 확대. 순수 민간재원 사업은 제외
⑤ 시장	국내 공공조달시장(중앙·지방) + 국제(해외) 공공조달시장(WTO·FTA·GPA 개방)
⑥ 정책	재정정책을 넘어 경제·산업·노동·건강·국방 등 정부 전반의 정책까지 관리 범위 확대(전략적 활용)
⑦ 업무	입찰·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계획 수립부터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업무 범위로 인식

📌 공공조달 업무 수행 6단계 (순환적·연속적)

① **조달계획 수립**(요구사항 분석·시장조사·조달방법 결정·예산 배정) → ② **조달 실행**(입찰문서 작성·공고·접수·평가·낙찰·협상·계약체결) → ③ **계약관리**(계약 실행·납품검사·대금지급) → ④ **계약 완료**(완료 확인·사후관리) → ⑤ **공급자 평가**(조달성과·이행 성실도) → ⑥ **피드백**(디브리핑·시사점 보고). 이 6단계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므로 입찰·계약만으로는 성공적 조달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 쉽게 이해하기

공공조달은 결국 '**누가·무엇을·어떻게**' 사는가로 쪼개면 쉽습니다. 누가=공공부문, 무엇을=물품·용역·공사, 어떻게=세금으로·법이 정한 절차로. 정의가 협의·광의로 갈리는 건 이 '어떻게'의 폭 때문입니다. 계약 한 건에만 초점을 두면 협의, 수요분석부터 성과평가까지 전 주기를 보면 광의(전략적 활용)입니다.

🔑 **암기: 공공조달 핵심가치 '가·윤·경·투·책' — VFM(가치)·윤리·경쟁·투명성·책임성.**

⚠ **함정: '조달=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조달의 이행수단일 뿐, 조달은 계획→실행→계약관리→완료→평가→피드백으로 순환합니다. '계약 성공·조달 실패'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1-2

공공조달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이 절의 핵심

공공조달 참여자·이해관계자는 크게 **정부·기업·시민사회·국민**으로 구성되며, 실질적으로는 **수요자(발주기관)·공급자(조달기업)·국민(최종 수요자·감독자)**의 3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직접(협의) 이해관계자는 **수요기관+조달기업**, 광의는 **감독기관·시민사회·국민**까지 포함합니다.

1-2-① 공공조달 수요자 (발주기관)

☞ 근거법령(예정) · 조달사업법 §2제5호·시행령 §4 · 국가재정법 §6 · 지방자치법

공공조달의 실행·관리 책임이 부여된 대상을 **조달기관(계약기관)**이라 하며, 수요·공급의 주체로 볼 때는 **수요기관**이라 칭합니다. 최초의 원인행위인 수요를 제기하는 주체로서 **발주기관·발주처·계약당국** 등으로도 불립니다. 조달사업법령상 수요기관은 **10개 유형**으로 관리됩니다.

유형	예시 · 근거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 국립 교육기관 — 국가재정법 §6, 조달사업법 §2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지자체, 지방의회, 공립 교육기관 — 지방자치법 §2
그 밖의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지자체출연연구원, 사립 교육기관
특수법인·기타	중소기업중앙회 등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 위탁·대행법인 등

특징적인 것은 예산·기금을 직접 재원으로 운영되지 않는 **특수법인·보조사업자**도, 공적 목적의 업무에 공공부문 자금을 보조받는 경우 수요기관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수요기관은 약 7.2만 개**로, 국가기관 7.8%, 지방자치단체 27.9%, 기타기관 64.3%로 구성됩니다.

1-2-② 공공조달 공급자 (조달기업)

☞ 근거법령(예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공급자는 3대 조달 대상물(물품·용역·공사)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공급기업·조달기업**으로 통용됩니다. 법적으로는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를 말하며, 규모·성격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됩니다(**2024년 약 60만 개**).

대상물	공급자 구분
물품	직접 생산·제조하는 제조업체 / 타인 생산품을 유통·판매하는 공급업체
용역(서비스)	업종별 자격·면허·등록 요건 충족. 국내 실무상 일반용역·정보기술(ICT)용역·기술용역 으로 분류(해외는 컨설팅/비컨설팅)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공사 등을 자격·등록 요건을 갖춰 수행하는 공사업체

국적에 따라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으로 구분되며, 외국 기업은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국제입찰에 참여하는 본사·국내지사 등이 해당합니다.

1-2-③ 공공조달 이해관계자

☞ 근거법령(예정)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감사원법 · 국회법

공공조달의 이해관계자는 관련된 모든 개인·조직으로 확대될 수 있으나,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2개 관점**으로 구분합니다.

- **협의(직접)**: 조달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계약당사자 — **수요기관**(공공기관)과 **공급자**(조달기업)
- **광의(간접)**: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연계된 유관 중앙행정기관, 광범위한 감독을 수행하는 **국회·감사원**, 잠재적 공급업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국내 공공조달 체계에서는 **공공부문·민간부문·일반대중** 3유형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구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일반대중
직접	수요기관(수요기관 등록)	조달기업(입찰참가 등록)	국민(납세자)
내부	계약심의위원회, 사업·계약·법률·감사부서(담당자)	생산·입찰·계약·법률부서	-
간접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계약법령 소관 부처, 조달청, 자체조달기관	하도급·자문기업, 협회·조합, 시험검사기관, 컨설팅업체	공공서비스 수요 국민
감시·감독 (외부)	국회, 감사원, 부패방지 공공기관	-	시민사회단체

공공부문 이해관계자는 외부(공공계약법령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중앙조달기관 **조달청**, 정책 소관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 관리감독의 **국회·감사원**)와 내부(사업부서·계약부서·계약심의위원회·내부감사부서)로 나뉩니다. 민간부문은 조달기업을 비롯해 하도급·자문 기업, 조합·협회(예: 중소기업중앙회), 인증·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하며, 국민·시민사회는 재정의 원천이자 조달성과의 최종 판단자·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 쉽게 이해하기

등장인물은 딱 세 유형으로 잡으면 됩니다. **사는 쪽**(수요기관·발주기관), **파는 쪽**(조달기업·공급자), 그리고 **지켜보는 쪽**(국민·감독기관). 헷갈리기 쉬운 건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곳'인데, 이건 사는 쪽이 아니라 **파는 쪽**(공급자)입니다.

🔑 **암기**: 이해관계자 3분할 — ①**직접**(수요기관+공급자) ②**간접**(유관부처·조합·협회) ③**감시**(국회·감사원·시민사회).

⚠ **함정**: 예산·기금을 직접 재원으로 쓰지 않는 특수법인·보조사업자도, 공적 목적에 공공자금을 보조받으면 '수요기관'에 포함됩니다.

1-3

공공조달의 특성

이 절의 핵심

공공조달과 민간구매는 필요한 대상을 대가를 주고 확보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목적·재원·법규·관리감독·책임**의 다섯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매(Purchasing)는 조달(Procurement)이라는 상위 프로세스에 포함되는 단위 절차입니다.

1-3-① 상업적 구매행위 특성

☞ 근거법령(예정) · 민법(계약자유 원칙) · 상법

상업적 구매는 기업의 경영·생산 활동에 필요한 대상을 **이익 창출**을 위해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현대에는 공급망(Supply Chain) 관점으로 확장되었으나, 본질은 여전히 기업 이익 추구에 있으며 공급업체 선정·계약·납품·대금지급이라는 **거래적(Transaction)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상업적 구매는 **7R** 같은 경제적·단기적 목표 달성에 집중합니다.

구매의 7R

Right Product(적합한 상품) · Right Price(적정한 가격) · Right Time(필요한 시점) · Right Quality(적정한 품질) · Right Quantity(정확한 수량) · Right Customer & Right Place (필요한 고객·장소). 이런 측면에서 구매는 공공조달 과정에 포함된 **하위 프로세스**로 볼 수 있습니다.

1-3-② 공공조달의 조달행위 특성 (민간과의 결정적 차이)

☞ 근거법령(예정) · 국가계약법 전반 · 국가재정법 · 감사원법

공공조달은 공익적 목적의 행정서비스·정책·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대상을 확보하는 프로세스로, 민간구매와 다음 **일반적 특성**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반적 특성	내용
① 공공서비스 목적	법적으로 정해진 임무 수행과 연계된 공공서비스 제공이 궁극적 목적 → 기술적·법적·제도적 요구사항이 동시에 복잡하게 제시됨
② 공공재정 기반	세금·공공기금 기반의 재정으로 운영 → 예산 확보·자금 할당·비용 예측 등 조달계획 이 매우 중요
③ 입찰 중심 경쟁성	경쟁성·투명성·공정성 보장을 위해 입찰을 기본 으로 공급자 선정, 종합적 비용 대비 가치가 우수한 자를 선정
④ 고유 법적 체계	엄격·세밀하며 고유의 공공조달 법령·규정·기준·절차 를 통해 운영(민·상법과 구별)

이를 민간과 비교하면 **다섯 가지 차이**로 정리됩니다.

구분	공공조달	민간구매
목적	공공의 이익 — 정책·제도 실행 지원	사적 이익 — 기업 이윤 창출
재원	세금 기반 공공재정(예산)	기업 수익·주주 투자금
법규	공공조달·계약 고유 법령(민·상법 준용)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
관리감독	국회·감사원·감사부서·시민사회·국민의 다차원 감독	기업 내부 감사부서 전담
실무책임	행정적 책임 + 경제적 책임의 이중·무한 책임	내부 업무 결과의 유한 책임

조달(Procurement) vs 구매(Purchasing)

조달은 수요 식별·소싱·입찰·낙찰·평가·협상·계약·이행관리·납품·검수·지급·관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범위(Scope)**이자 **관계적(Relational)·사전 예방적** 접근입니다. 반면 구매는 그 안의 **단위 절차(process)**로서 **거래적(Transaction)·사후 대응적** 접근입니다. 공공조달은 5R(수량·품질·가격·시점·장소)을 넘어 조직의 사명·비전에 기반한 **전략적·중장기 목표**를 우선합니다.

조달 ≠ 계약 — 성공적 계약도 조달 실패일 수 있다

계약은 조달의 **구체적 이행 수단**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설비를 경쟁을 통해 유리한 업체와 계약하고 성공적으로 납품받았더라도(계약 성공), 그 청소용액이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업체 폐업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지면 **조달은 실패**한 것입니다. 조달과 계약을 구분하지 않으면 "계약 성공, 조달 실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민간이라면 5분이면 끝낼 거래가 공공에선 몇 주씩 걸립니다. 비효율 같지만 사실 '**의도된 비효율**'입니다. 세금이라는 재원은 아무도 함부로 못 쓰게 하고, 결정은 나중에도 추적·검증돼야 하니까요. 절차 비용이 곧 **부패 방지·공정성의 비용**인 셈입니다. 그래서 공공조달의 모든 절차엔 이유가 있습니다.

 **암기: 공공 vs 민간 5대 차이 '목·재·법·감·책' — 목적·재원·법규·관리감독·책임.**

 **함정: '구매(Purchasing)'는 조달의 하위 단위절차(거래적·사후대응), '조달(Procurement)'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범위(관계적·사전예방). 상하관계를 뒤집어 내지 마세요.**

1-4

공공조달의 구성체계

이 절의 핵심

공공조달의 구성은 **법적 · 조직적 · 운영적** 3개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조직적으로는 법령(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집행(조달청·자체조달기관)·감독(국회·감사원)이 분업하며, 운영적으로는 **중앙집중형·분산형·혼합형** 중 우리나라는 **혼합형 (중앙 30%·자체 70%)**입니다.

1-4-① 조직적 구성체계

☞ 근거법령(예정) · 헌법 § 119 · 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 · 지방계약법(행정안전부) · 조달사업법·전자조달법(조달청)

① **법적 체계**는 조달 방법을 규율하는 법령·행정규칙·기준의 집합으로, 「**헌법**」 → 「**공공조달법**」 → 「**공공계약법**」 → 「**행정규칙**」 → 「**개별 입찰·계약조건**」 순으로 구체화됩니다. 헌법 제119조(경제질서)·제123조(중소기업 보호)·제127조(과학기술 혁신) 등이 전략적 공공조달의 헌법적 근거이며, 구체적 이행은 아래 법령으로 규율됩니다.

적용 대상	법률	시행규칙·규정	소관
국가기관·소속기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계약예규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중앙조달·전자조달	조달사업법 · 전자조달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달청

② **조직적 체계**는 법령·조달·감독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됩니다.

구분	법적(정책)	운영적(집행)	감시·감독
총괄기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조달청	국회·감사원
유관기관	유관 중앙행정기관	개별 조달기관	부패방지기관(국민권익위 등)
조정·실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별 기관 계약심의위원회	개별 기관 내부 감사부서

조직은 국가 전반의 수요를 총괄하는 **국가 중앙조달기관**, 특정 대상물을 총괄하는 **개별 중앙조달기관**, 자체 수요를 충족하는 **자체조달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 중앙조달기관은 조달청(PPS, 나라장터 G2B)이며, 부문별로 방위사업청(국방 D2B)·aT(공공급식 NeaT)·한국교직원공제회(교육 S2B) 등이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③ **운영적 체계**는 실제 조달 실행·관리 방식으로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구분	중앙집중형	분산형	혼합형(Hybrid)
내용	모든 수요를 통합해 실행·관리	개별 기관이 각자 실행·관리	대상·규모에 따라 통합/분산 이원화
강점	규모의 경제·정책 지원에 적합	개별 수요의 유연한 대응	운영적·정책적 목표의 균형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혼합형을 채택하며, 우리나라도 **조달청 중심의 중앙집중적 조달 약 30%, 지자체 등 자체조달 약 70%**의 혼합형 운영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4-② 감독 및 기능적 책임

🔑 근거법령(예정) · 감사원법 · 국가재정법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공공조달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예산 낭비 방지와 공익 실현을 위한 **감사(監査)**의 중요성이 어느 분야보다 큼니다. 우리나라 감사는 감사원이 실시하는 **결산검사·회계검사·직무감찰**로 정의되며, 공공조달 감사는 조달 프로세스가 법적·기술적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는지, 관행이 효율적·효과적인지를 평가합니다. 유형은 **4가지**입니다.

감사 유형	내용
규정준수감사(Compliance)	법령·규칙·기준·내부 운영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성과감사(Performance)	비용 대비 가치 확보, 조달 정책·제도의 목적·목표 달성 여부 평가
재무감사(Financial)	지출 기록의 정확성 검토, 리베이트·입찰담합·횡령 등 부패·사기 여부 점검
특수목적감사(Special Purpose)	부패 발생·이행능력·신규 시스템 성과 등 특정 문제 식별·개선을 위한 감사

주요 국제기구(UN·WTO·OECD·EU·WB·ADB)는 공공조달의 **3대 기본원칙**으로 **경쟁 (Competitiveness) · 차별 금지·평등 대우(Non-discrimination·Equal treatment) · 투명성 (Transparency)**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법령·회계기준의 형식적 준수와 함께 이들 원칙이 실제로 구현되었는지를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 감사 절차는 ① 목적·범위 설정 → ② 계획 수립 → ③ 정보·자료 수집 → ④ 내부통제 접근 → ⑤ 법규 준수 검토 → ⑥ 공급자 관리 분석 → ⑦ 위험·기회 식별 → ⑧ 결과·권고 보고의 8단계로 진행됩니다.

🌟 쉽게 이해하기

구성체계는 **법·조직·운영** 세 갈래로 나눠 보면 정리됩니다. 조직 쪽은 다시 **정책(법령) / 집행 / 감독**의 분업으로, 서로 견제·균형을 이룹니다. 정책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집행은 조달청, 감독은 국회·감사원이 맡습니다.

법령	소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조달사업법·전자조달법	조달청

- 🔑 **암기:** 법 체계 순서 '헌→달→약→규→건' — 헌법→공공조달법→공공계약법→행정규칙→개별 입찰·계약조건.
- ⚠️ **함정:** 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행정안전부를 서로 바꿔 내는 문제가 단골입니다. 우리나라 운영은 중앙 30%·자체 70%의 혼합형입니다.

③ 요약노트

한눈에 보는 핵심

✦ 한눈에 보는 핵심 (제1장)

- **정의:** 협의=공급 초점(전통적) / 광의=정책·제도 성과 지원(전략적·현대적). 핵심 가치 **VFM·윤리·경쟁·투명성·책임성**
- **규모:** GDP의 12~15%, 정부 총지출의 약 30~34%
- **목적 3차원:** ① 효율·효과적 공급 ② 경쟁·투명·공정·청렴 등 원칙 준수 ③ 정책·제도 지원·주도
- **목표:** 운영적(VFM·공정·투명·책임·효율·경쟁) + 정책적(지속가능·혁신·사회적책임) / **성숙도 7단계**
- **범위 7차원:** 대상물·수요자·공급자·재원·시장·정책·업무 / **업무 6단계**(계획→실행→계약관리→완료→평가→피드백)
- **3주체:** 수요기관(발주기관, 10개 유형·7.2만) · 조달기업(공급자·60만) · 국민(최종 수요자·감독자)
- **특성:** 공공 vs 민간 = 목적·재원·법규·관리감독·책임의 5대 차이 / **조달(범위·관계적) ≠ 구매(단위절차·거래적)**
- **구성체계:** 법적(헌법→공공조달법→공공계약법→행정규칙)·조직적(기재부·행안부/조달청/국회·감사원)·운영적(중앙집중·분산·혼합) / 한국=**혼합형(중앙30·자체70)**
- **감사:** 규정준수·성과·재무·특수목적 4유형 / 국제기구 3대 원칙=경쟁·차별금지평등·투명성

☑ 자가 진단

1. 공공조달의 협의·광의 정의와 5대 핵심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가?
2. 목적의 3차원과 운영적·정책적 목표를 구분할 수 있는가?
3. 범위 7개 차원과 업무 6단계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는가?
4.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정의·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가?
5. 공공조달과 민간구매의 5대 차이, 조달과 구매의 구분을 설명할 수 있는가?
6. 법적·조직적·운영적 구성체계와 감사 4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가?

④ 예상문제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객관식 (10문항)

1. 공공조달의 '광의(현대적·전략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달 대상물의 공급 그 자체에 한정된 정의이다.
- ② 계약의 체결·이행에만 초점을 둔 전통적 정의이다.
- ③ 정책·제도의 성과를 효율성과 효과성의 균형 속에서 지원·주도하는 활동이다.
- ④ 민간구매와 동일한 개념이다.
- ⑤ 국제입찰에만 적용되는 정의이다.

정답 · 해설

✓ 정답 ③ 광의는 정책 성과 지원(전략적 활용)에 중점을 둔 현대적 정의다.

협의를 조달 대상물의 공급에 초점을 둔 전통적 정의이고, 광의는 조달을 통해 정부 정책·제도의 성과를 효율성·효과성의 균형 속에서 지원·주도하는 전략적·현대적 정의입니다.

2. Siyal & Xim(2019)이 제시한 공공조달의 핵심 기본 원칙(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비용 대비 가치(VFM)
- ② 윤리(Ethics)
- ③ 이윤 극대화
- ④ 경쟁(Competition)
- ⑤ 투명성·책임성

정답 · 해설

✓ 정답 ③ '이윤 극대화'는 민간구매의 목적이다.

공공조달의 핵심 기본 원칙은 비용 대비 가치(VFM)·윤리·경쟁·투명성·책임성입니다. 이윤 극대화는 상업적 구매의 목적으로, 공공조달의 가치가 아닙니다.

3. 공공조달의 목표 중 '정책적 측면'의 목표로만 묶인 것은?

- ① 공정성·투명성·경쟁성
- ② 지속가능성·혁신·사회적 책임성
- ③ 비용 대비 가치·효율성·책임성
- ④ 경쟁성·효율성·투명성
- ⑤ VFM·공정성·책임성

정답 · 해설

✓ 정답 ② 지속가능성·혁신·사회적 책임성이 정책적 목표다.

운영적 목표는 VFM·공정성·투명성·책임성·효율성·경쟁성 6가지이며, 정책적 목표는 지속가능성·혁신·사회적 책임성 3가지입니다. 정책적 목표 달성을 강조한 것이 '전략적 활용'입니다.

4. 공공조달의 범위 7개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달 대상물
- ② 수요자·공급자
- ③ 조달 자원
- ④ 기업의 주가(株價)
- ⑤ 시장·정책·업무

정답 · 해설

✓ 정답 ④ '기업의 주가'는 공공조달의 범위 차원이 아니다.

공공조달의 범위는 ① 조달 대상물 ② 수요자 ③ 공급자 ④ 조달 자원 ⑤ 시장 ⑥ 정책 ⑦ 업무의 7개 차원으로 살펴봅니다. 기업의 주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공공조달 업무 수행 6단계의 순서로 옳은 것은?

- ① 조달 실행 → 계획 수립 → 계약관리 → 완료 → 평가 → 피드백
- ② 계획 수립 → 조달 실행 → 계약관리 → 계약 완료 → 공급자 평가 → 피드백
- ③ 계약관리 → 계획 수립 → 조달 실행 → 평가 → 완료 → 피드백
- ④ 계획 수립 → 계약관리 → 조달 실행 → 완료 → 피드백 → 평가
- ⑤ 조달 실행 → 계약관리 → 계획 수립 → 완료 → 평가 → 피드백

정답 · 해설

✓ 정답 ② 계획→실행→계약관리→완료→평가→피드백.

공공조달 업무는 '조달계획 수립 → 조달 실행 → 계약관리 → 계약 완료 → 공급자 평가 → 피드백'의 6단계가 순환적·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6. 조달사업법령상 공공조달 '수요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해당한다.
- ③ 공공재정을 보조받는 특수법인·보조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다.
- ④ 발주기관·계약당국 등으로도 불린다.
- ⑤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기업'은 수요기관이 아니라 공급자(조달기업)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는 공급자(조달기업)입니다. 수요기관은 수요를 제기하는 발주기관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물론 공공재정을 보조받는 특수법인·보조사업자까지 포함하는 10개 유형입니다.

7. 조달(Procurement)과 구매(Purchasing)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달은 구매의 하위 단위 절차이다.
- ② 조달은 범위(Scope), 구매는 그 안의 단위 절차(process)이다.
- ③ 조달은 거래적, 구매는 관계적 접근이다.
- ④ 둘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다.
- ⑤ 구매가 조달보다 넓은 개념이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조달=범위(Scope, 관계적), 구매=단위 절차(process, 거래적).

조달은 수요 식별부터 관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범위이자 관계적·사전 예방적 접근이고, 구매는 그 안의 단위 절차로서 거래적·사후 대응적 접근입니다.

8. 공공조달과 민간구매의 차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적 — 공공은 공익, 민간은 사익
- ② 자원 — 공공은 세금 기반 재정, 민간은 기업 수익·투자금
- ③ 법규 — 공공은 고유 계약법령, 민간은 민·상법
- ④ 관리감독 — 공공은 기업 내부 감사부서가 전담
- ⑤ 책임 — 공공은 이중·무한 책임, 민간은 유한 책임

정답 · 해설

✓ 정답 ④ 내부 감사부서 전담은 '민간'이다.

공공조달은 국회·감사원·감사부서·시민사회·국민이 다차원으로 감독합니다. 기업 내부 감사부서가 전담하는 것은 민간구매의 특성입니다.

9.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법적 체계를 상위에서 하위 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 ① 공공계약법 → 헌법 → 공공조달법 → 행정규칙
- ② 헌법 → 공공조달법 → 공공계약법 → 행정규칙 → 개별 입찰·계약조건
- ③ 행정규칙 → 공공계약법 → 헌법 → 공공조달법
- ④ 공공조달법 → 헌법 → 행정규칙 → 공공계약법
- ⑤ 헌법 → 행정규칙 → 공공계약법 → 공공조달법

정답 · 해설

✓ 정답 ② 헌법 → 공공조달법 → 공공계약법 → 행정규칙 → 개별 조건.

법적 체계는 「헌법」 → 「공공조달법」 → 「공공계약법」 → 「행정규칙」 → 「개별 입찰·계약조건」 순으로 구체화·세분화됩니다. 국가계약법 소관은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 소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10.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운영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완전한 중앙집중형이다.
- ② 완전한 분산형이다.
- ③ 조달청 중심 중앙조달 약 30%, 자체조달 약 70%의 혼합형이다.
- ④ 자체조달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⑤ 구성체계는 운영적 차원 하나뿐이다.

정답 · 해설

✓ 정답 ③ 중앙 약 30%·자체 약 70%의 혼합형.

우리나라는 조달청 중심의 중앙집중적 조달 약 30%, 지자체 등 자체조달 약 70%의 혼합형(Hybrid) 운영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성체계는 법적·조직적·운영적 3차원입니다.

OX (5문항)

11. 공공조달의 협의 정의는 조달을 통해 정부 정책·제도의 성과를 지원하는 전략적 활동까지 포괄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X

정책 성과 지원(전략적 활용)까지 포괄하는 것은 '광의' 정의입니다. 협의는 조달 대상물의 공급에 초점을 둔 전통적 정의입니다.

12. 국가계약법의 소관 부처는 기획재정부이고, 지방계약법의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가 소관합니다. 조달사업법·전자조달법 관련 중앙조달·전자조달은 조달청이 담당합니다.

13. 공공조달과 계약은 동일한 개념이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X

계약은 조달의 구체적 이행 수단일 뿐, 조달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구분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공했으나 조달은 실패'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4. 공공조달 감사는 규정준수감사·성과감사·재무감사·특수목적감사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공공조달 감사는 규정준수(Compliance)·성과(Performance)·재무(Financial)·특수목적(Special Purpose)의 4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5. UN·WTO·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공공조달의 3대 기본원칙은 경쟁·차별금지(평등대우)·투명성이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주요 국제기구는 공공조달의 3대 기본원칙으로 경쟁(Competitiveness)·차별 금지·평등 대우(Non-discrimination·Equal treatment)·투명성(Transparency)을 제시합니다.

PART 1 · 제2장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

① 학습목표 · 핵심키워드

PART 1 · 필기 제1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30문항)

제2장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은 공공조달을 어떤 원칙에 따라(원칙), 어떻게 실행하는지(방법)를 다루는 장입니다. 앞에서 공공조달이 무엇인지 배웠다면, 이 장에서는 국제기구가 공통으로 채택한 5대 기본원칙과 OECD의 12대 실행원칙을 익히고, 조달을 실행하는 중앙집중형·분산형 유형과 경쟁적(일반·제한·지명경쟁)·비경쟁적(수의계약·소액구매) 조달 방법을 단계적으로 학습합니다.

🎯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이 장을 학습한 후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공공조달의 기본원칙(투명성·VFM·경쟁·차별금지·책임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공공조달의 실행원칙(OECD 12대 원칙)의 구조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공공조달의 운영 유형(중앙집중형·분산형)의 개념과 강·약점을 설명할 수 있다.
-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일반·제한·지명경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수의계약·소액구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핵심 키워드 (Keywords)

공공조달 기본원칙(Basic Principle) · 공공조달 실행원칙(Principle of Implementation) · 비용 대비 가치(VFM) · 투명성 · 청렴성 · 접근성 · 균형성 · 경쟁적 공공조달(Competitive) · 공개경쟁(Open) · 제한경쟁(Restricted) · 지명·선별경쟁(Selective) · 수의계약(Sole/Single Source) · 소액구매(Micro Purchase) · 중앙조달(CPB)

■ 이 단원의 4단 구조

- ① 학습목표·핵심키워드 (이 화면)
- ② 본문 — 2-1 원칙 / 2-2 유형 / 2-3 경쟁적 방법 / 2-4 비경쟁적 방법 (법조문→해설→도식→사례)
- ③ 요약노트 — 한눈에 보는 핵심
- ④ 예상문제 —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2-1

공공조달 원칙

이 절의 핵심

GPA·UN·World Bank·OECD·EU가 공통으로 채택한 공공조달 5대 기본원칙은 **투명성·비용 대비 가치(VFM)·경쟁성·차별금지**와 **동등한 대우·책임성**입니다. 이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OECD(2015)는 **12대 실행원칙**을 제시했으며, 이는 **실행기반(전자조달·통합·역량) → 핵심 실행원칙(투명성·청렴성·접근성·참여) → 목표원칙(균형성) → 관리원칙(위험관리·평가·책임성)**의 구조로 유기적으로 연계됩니다.

2-1-① 공공조달 기본 원칙

☞ 근거법령(예정) · 정부조달협정(GPA) · 국가계약법 § 5 · § 5의2 · § 5의3 · 조달사업법 § 5 · § 6

공공조달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행정서비스의 품질·성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조달기관 담당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법적·윤리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부여됩니다. 이를 위해 요구사항 식별부터 계약 이행, 사후관리까지 **전체 조달 주기**에 걸쳐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표준적 기본원칙**입니다. 정부조달협정(GPA)·UN·세계은행(World Bank)·OECD·EU가 공통으로 채택하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은 다음 5가지입니다.

기본원칙	내용
투명성 (Transparency)	전체 조달 과정에서 정책·계획·입찰공고·계약정보 등을 특정 법적요건·기밀보호 사유를 제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접근 보장 . 공정성의 선행 조건 이며, 완전히 공개적인 입찰 절차가 투명성 확보의 가장 효과적 방법
비용 대비 가치 (VFM)	비용·품질·기타 요소의 최적 조합 확보. 구매 시점 최저가가 아니라 총소유비용(TCO)·생애주기비용(LCC) , 공급자 역량, 정책·제도 목표까지 종합 고려
경쟁(Competition)	합리적 가격·품질로 원하는 조달 대상물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투명성은 공개적 경쟁을 통해 달성되며 경쟁을 촉진하면 책임성·공정성·청렴성도 확보
차별 금지·동등한 대우	입찰·평가·계약 전 과정에서 잠재적 공급업체에 동등한 참여 기회 부여. 국적·인종·종교·연령·성별 등에 따른 차별 방지. 불필요·비합리적 자격·요건 설정 금지(GPA·UN·OECD·EU·WTO가 특히 강조)
책임성 (Accountability)	조달 의사결정과 그 결과·성가에 책임을 다해 성실히 수행. 이해관계자가 상시 정보에 접근·이의제기할 수 있고, 제기된 문제를 신속·공개적으로 처리·피드백

☞ 청렴성은 어디에?

완전히 공개적인 입찰 절차로 **투명성**을 확보하면 그 결과로 **청렴성(Integrity)**도 함께 향상됩니다. 즉 청렴성은 투명성·경쟁 원칙의 준수를 통해 입증·구현되는 가치로, OECD 12대 실행원칙 체계에서는 별도의 실행원칙(핵심 실행원칙)으로도 다루어집니다.

2-1-② 공공조달 실행 원칙

☞ 근거법령(예정) · OECD 공공조달 이사회 권고(2015) · 국가계약법 § 5의2(청렴계약)

5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실제 실행·관리 과정에서 준수·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실행원칙**입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OECD 권고**가 제시한 **12대 실행원칙**은 전통적 목표인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새로운 목표인 **범정부 정책지원 효과성**의 균형적 달성에 적합합니다. 12대 원칙은 각각 독립성이 있으나, 원칙 실현을 위해 **유기적 연계성**을 통한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구분	실행원칙	핵심 내용
실행 기반	전자조달(e-Procurement) 활용	디지털 기술로 투명성·책임성·효율성·공정성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이행. 대부분 국가에서 기본이 됨
	통합(Integration)	재정관리·예산·용역 등 정부 주요 시스템과 통합. 나라장터는 dBrain+·e호조와 연계
	역량(Capacity) 개발	조달 담당자의 전문성·역량을 표준화 교육·인증으로 개발. 2025년 공공조달관리사 제도 시행 확정
핵심 실행원칙	투명성(Transparency)	공급업체·대중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전 과정 공개·접근 보장. 국내 나라장터·조달데이터허브·사전규격공개
	청렴성(Integrity)	부패·사기·이해상충 방지. 행동강령, 청렴교육, 내외부 통제. 국가계약법 §5의2 청렴계약서 의무화
	접근성(Access)	소외계층·중소기업 등 모든 잠재적 공급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진입장벽 제거.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 의무
	참여(Participation)	규모·배경과 관계없는 동등한 참여 보장. 지역사회·시민사회 참여. 중소기업 참여 확대에 중점
목표원칙	균형성(Balance)	1차 재정운영 효율성과 2차 정책지원 효과성(지속가능·중소기업·혁신 등)의 균형 추구
관리원칙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식별→평가→해결→모니터링→지속개선 5단계.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활용
	평가(Evaluation)	실행·관리 결과를 주기적·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피드백해 시스템 개선
	책임성(Accountability)	행동·결정에 책임을 지고 정당화. 명확한 업무경계·제재·불만처리·내외부 통제 연계

시험 포인트 — 기본원칙 vs 실행원칙 겹침

OECD는 12대 항목 중 **투명성·청렴성·효율성·접근성·책임성**을 기본원칙으로, **균형성·참여·전자조달 활용·역량개발·평가·위험관리·통합**을 실행원칙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즉 **투명성·책임성**은 기본원칙이자 실행원칙에 모두 등장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국제기구 공통 **5대 기본원칙**(투명성·VFM·경쟁·차별금지·책임성)과 OECD **12대 실행원칙**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행원칙 사례 요약

- **투명성**: 국내 나라장터·조달데이터허브(120종 보고서, 로그인 없이 공개), 사전 규격 공개(물품·용역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의무·2주 이내 회신), 영국·미국 **사후브리핑(디브리핑)** 제도
- **청렴성**: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2006)·복무규정(2004), 청렴교육, 평가위원 **3중 관리(모니터링단·사전신고센터·평가이력관리)**, 브라질 공공지출감시기구
- **접근성**: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학교장터·NeaT·온비드) 게시 의무(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 33)
- **참여**: 판로지원법 § 4 중소기업 구매목표비율 **50% 이상**, 여성기업(물품·용역 5%·공사 3%)·장애인기업(1%),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고시금액 2.3억 원 미만)·소기업·소상공인(1억 원 미만)
- **효율성**: 중앙구매·기본협정(FA)·다수공급자계약(MAS)·전자카탈로그·전자경매. 중앙조달로 평균 12~25% 비용절감 (EU, 2017)

쉽게 이해하기

기본원칙은 조달이라는 집을 떠받치는 **기둥 5개**(투명성·VFM·경쟁·차별금지·책임성)이고, **OECD 12대 실행원칙**은 그 기둥 위에 얹은 **4층 건물**(실행기반→핵심→목표→관리)입니다. 왜 굳이 원칙을 세웠을까요? 조달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담당자의 재량을 그냥 두면 특혜·부실로 새기 때문입니다. 특히 **VFM은 '가장 싼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가치'**—총소유비용(TCO)·생애주기비용(LCC)까지 따지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암기: 기본원칙 5 = '투브(VFM)경차책'** — 투명성·VFM·경쟁·차별금지·책임성 / 실행원칙 4단 = '기핵목관'(기반→핵심→목표→관리)

 **함정: 투명성·책임성은 기본원칙이자 실행원칙에 모두 등장합니다.** 또 청렴성은 5대 기본원칙 목록에는 없고 투명성·경쟁의 준수로 구현되는 값으로, 12대 실행원칙에서 별도 항목으로 나옵니다.

2-2

공공조달 유형

💡 이 절의 핵심

공공조달을 실행·관리하는 방식은 수요를 어디서 통합·집행하느냐에 따라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으로 나뉩니다. 중앙집중형은 **규모의 경제·정책 지원**에, 분산형은 **개별 수요의 유연한 대응**에 강점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두 유형을 결합한 **혼합형(Hybrid)**을 채택하며, 중앙조달(구매)기관(CPB)의 확대가 세계적 추세입니다.

2-2-① 중앙집중형 공공조달

🔗 근거법령(예정) · 조달사업법 · 전자조달법(조달청 중앙조달)

중앙집중형 공공조달은 다수 수요기관의 수요를 **통합해** 중앙조달(구매)기관(CPB: Central Purchasing Body)이 실행·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수요의 통합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보다 경쟁력 있는 조달 시장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OECD·EU 등 세계 각국은 효율성 확보와 전략적 활용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CPB 설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OECD 조사 결과, 응답국(회원 35개국·비회원 5개국)의 **93%**가 일반 상품 대상 국가·연방 수준 CPB를 설립했다고 보고했으며, 보건부문(50%)·ICT부문(30%) 등 특정 부문별 CPB도 운영됩니다.

구분	내용
운영 방식	모든(다수) 수요를 통합해 실행·관리. 기본협정(FA)·동적구매시스템(DPS)·다수공급자계약(MAS)·전자카탈로그·쇼핑몰 등 중앙집중 구매수단 활용
강점	규모의 경제·정책 지원 에 적합. 거래비용 중심 평균 12~25% 비용 절감(EU, 2017), 절차 합리화로 지출의 7~35% 절약 가능(Guerry, 2018)
전략적 활용	중소기업·환경·사회적 책임·혁신 등 전략적 활용과 연계된 대규모 수요를 창출·통합·안정 공급하는 기반 강화
국내 사례	중앙조달기관 조달청(나라장터 G2B) . 부문별로 방위사업청(국방 D2B)·aT(공공급식 NeaT)·한국교직원공제회(교육 S2B) 등이 전문화

2-2-② 분산형 공공조달

🔗 근거법령(예정)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개별 기관 자체조달)

분산형 공공조달은 개별 조달기관이 **각자 자체적으로** 수요를 실행·관리하는 방식으로, 흔히 **자체(분산)조달**로 불립니다. 개별 수요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조달과 분산(자체)조달 간의 조정·협약이 부재할 경우 부적절한 공공조달 의사결정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방식 간 운영적 효율성과 전략적 활용의 효과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OECD 조달지출의 **61.2%**가 지방정부 수준에서 발생하는 만큼, CPB가 하위 국가 수준(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달을 간소화하는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분	중앙집중형	분산형	혼합형(Hybrid)
내용	수요를 통합해 실행·관리	개별 기관이 각자 실행·관리	대상·규모에 따라 통합/분산 이원화
강점	규모의 경제·정책 지원	개별 수요의 유연한 대응	운영적·정책적 목표의 균형

 시험 포인트 — 우리나라는 혼합형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두 방식을 결합한 **혼합형(Hybrid)**을 채택합니다. 우리나라도 조달청 중심의 **중앙집중적 조달 약 30%**, 지자체 등 **자체조달 약 70%**의 혼합형 운영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중앙집중형은 여러 기관 장바구니를 하나로 모아 **대량으로 싸게 사는 공동구매**(조달청 나라장터)이고, **분산형**은 각 기관이 **동네 가게에서 필요할 때 알아서 사는 방식**(자체조달)입니다. 대량으로 모으면 단가는 내려가지만 개별 특수요구는 놓치기 쉬워, 대부분 나라는 둘을 섞은 **혼합형**을 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시험 포인트입니다.

구분	강점	약점
중앙집중형	규모의 경제·정책 지원	개별 특수요구 반영 곤란
분산형	유연한 대응·신속	가격협상력 약화

-  **암기:** 한국 = 혼합형, '중앙 30 · 자체 70' — 자체조달 비중이 더 크다. 단답형 정답은 언제나 '혼합형'.
-  **함정:** 숫자 두 개를 헛갈리지 말 것 — CPB 설립국 **93%**(2024 OECD)는 '중앙조달기관을 둔 나라 비율', **61.2%** (2021)는 'OECD 조달지출 중 지방정부 비중'입니다.

2-3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이 절의 핵심

UNCITRAL 공공조달모델법의 **10개 유형** 중 입찰서류가 공고되어 적격 기업 모두에게 공개되는 **공개입찰·제한입찰·제안요청서·2단계입찰**이 경쟁적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입찰 방법으로 **일반경쟁(공개)·지명경쟁(선별)·제한경쟁** 3가지를 채택하며, 구체적 실행 방법으로 제안요청(RFP)·2단계입찰·경쟁적 대화·전자적 역경매(ERA)가 있습니다.

UNCITRAL 10개 방법	경쟁 유무
①공개입찰 ②제한입찰 ④협상없는 제안요청 ⑤2단계경쟁 ⑥대화기반 제안요청 ⑦연속협상 제안요청 ⑧경쟁적 협상 ⑨전자적 역경매	경쟁적
③견적요청(소액직접구매) ⑩단독공급원조달	비경쟁적

견적요청은 복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격 중심으로 평가하면 경쟁적, 특정 업체의 가격 제안만으로 결정하면 비경쟁적이므로 **양쪽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3-① 일반경쟁 (공개입찰)

☎ 근거법령(예정) · 국가계약법 § 7(경쟁의 원칙) · 정부조달협정(GPA)

공개입찰(Open Tendering)은 경쟁적 조달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절차로, 우리나라는 이를 **일반경쟁**이라 칭합니다. 입찰 참여 자격·요건의 제한을 **최소화**해 가능한 한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완전한 경쟁을 통해 투명성·비용 대비 가치를 달성합니다. 공개경쟁입찰(국내·국제)·공개경쟁이라고도 합니다.

공개입찰 입찰공고의 **필수 요건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요건
① 중립적이고 명확한 기술사양 을 갖출 것
② 자격을 갖춘 관심 있는 모든 잠재적 입찰자에게 개방 될 것
③ 객관적인 입찰참가자격 기준 을 제시할 것
④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공고 될 것
⑤ 공정한 낙찰자 선정을 위해 명확·객관적인 평가기준 을 제시할 것

공개입찰은 경쟁성·접근성·차별금지·공정한 대우를 구현하는 기본 방법이나, ①완료까지 **긴 시간** 소요 ②엄격한 절차 준수 요구 ③기술사양 작성 내부 역량 필요 ④공급업체의 사양 결정 참여 제한 ⑤장기적 관계 구축 제한 ⑥**최소 비용 솔루션**에만 집중 ⑦혁신 제약 ⑧과도한 형식주의로 참가 제한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저가 초점은 생애주기 비용(유지보수·A/S·폐기)을 고려하지 못해 전반적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㉔ 단일·2단계 응용

이행 난도가 높거나 기술적 요구조건·사양이 사전 결정되지 않은 경우, 공개입찰을 **2단계**로 나눠 1단계에서 기술제안서로 기술요건을 평가하고, 통과 기업만 2단계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최소한의 기술·재무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정보 부족·자격 제한으로 참가에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3-② 제한경쟁 (제한적 입찰 절차)

㉔ 근거법령(예정) · 국가계약법 § 7(경쟁의 원칙)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한경쟁입찰)

제한적 입찰(Restricted Tendering)은 공개입찰·선별입찰로는 적합한 조달기업을 선택하지 못했거나 참가 기업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국가적 비상사태·보안·긴급 상황·공익상 편의성·연속성(예비부품·추가·확장)·특수 요구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제한경쟁입찰**로 적용해 수행 경험·기술·전문 인력·자격·면허 등을 갖춘 조달기업에만 참여를 허용합니다.

제한적 입찰로 진행하더라도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 기업 간 경쟁입찰·선택적 입찰로 **경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기업과 직접 계약할 수도 있는데, 형식은 같으나 내용이 다른 **두 가지 직접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격·계약조건
단일기업 계약(Single Contracting)	요구를 충족하는 복수의 기업 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1개 기업을 선정 해 계약	조달기관에 상대적으로 유리
단독공급기업 계약(Sole Source)	공급 가능 기업이 많지 않거나 선택할 수 없어 1개 독점적 공급원 과 계약	조달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

제한적 입찰은 과도한 제한 요건을 설정하면 자격을 갖춘 기업조차 참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한 요건이 **합리적·적정하게** 설정되면 경쟁적 조달 방법으로 봅니다.

2-3-③ 지명경쟁 (선별적 입찰 절차)

㉔ 근거법령(예정) · 국가계약법 § 7(경쟁의 원칙) · 국가계약법 시행령(지명경쟁입찰)

선별적 입찰(Selective/Restricted Tendering)은 우리나라의 **지명경쟁**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공개입찰과 동일하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조달기업만** 초대되어 경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기관이 사전 공급자 탐색·시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초대 요건 충족 기업 목록을 작성하고, 그중 적합도가 높은 기업에 공식 초대합니다.

선별적 입찰의 실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성 확보를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조달기업이 초대되는 것이 일반적
- 개별 입찰마다 적용하거나, 대상물별 적격 업체를 선정·주기적 업데이트해 **상시 관리**
- 오남용 시 **경쟁성·접근성·차별금지·동등한 대우** 원칙 위배 위험이 크므로 사전 선정기준·운용기준의 타당성 확보 필요

• 초대된 입찰기업에는 **공개입찰에 준하는** 입찰 절차 적용 요구

✳ **경쟁적 입찰 절차의 실행 방법 (RFP·2단계·경쟁적 대화·ERA)**

- **제안요청(RFP)**: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를 **2개 봉투(Two Envelope)**로 제출. 기술제안서 먼저 평가해 최소 통과점수 이상만 가격제안서 개봉·합산. 컨설팅형 전문용역에 주로 적용. 평가방법 4유형 — QCBS(품질·비용)·QBS(품질)·FBS(고정예산)·LCS(최소비용). 국내 **협상에 따른 계약(연속협상)·적격심사제도**(협상없는 RFP)가 대응
- **2단계입찰**: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를 **단계별로 분리 제출**. 사전 완전한 기술사양 마련이 곤란한 경우 적합. 국내는 **유형 2만** 적용하며, 규격(기술)입찰·가격입찰 각 단계 **2인 이상** 유효입찰로 성립(규격·가격 동시입찰은 규격 적격자 1인이어도 개봉 가능)
- **경쟁적 대화(협상)**: 최종 제안 전 후보 입찰자와 **반복 대화**로 요구사항·해결책 구체화. 국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 대응(상용화되지 않은 물품·복잡·고난도 사업)
- **전자적 역경매(ERA)**: 여러 공급업체가 **최저가**를 제시하며 경쟁하는 온라인 실시간 기법. 기존 경매와 반대로 가격을 낮춰 입찰하므로 비용 절감. 다만 품질 저하·소규모 혁신기업 배제 우려

✳ **쉽게 이해하기**

경쟁 방법은 문을 **얼마나 여느냐**로 갑니다. **일반경쟁**은 자격만 되면 누구나 들어오는 **활짝 열린 문**(원칙), **제한경쟁**은 자격·면허 조건을 건 **반쯤 열린 문**(예외), **지명경쟁**은 초대장 받은 곳만 들어오는 **선별 초대**입니다. 문을 넓게 열수록 투명성·공정성은 올라가지만 시간·전문성은 떨어지는 **트레이드오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발주기관은 늘 '왜 일반경쟁이 아닌가'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 **암기: 공개입찰 필수요건 5** = '사개기공평' — 중립적 기술사양 · 개방(모든 잠재입찰자) · 객관적 참가자기준 · 국내·국제 공고 · 명확한 평가기준

⚠ **함정: 지명경쟁은 '최소 3개 이상' 초대가 일반적**이라는 마스터 기준을 따르세요. 또 RFP는 **2봉투(기술→가격)**, 2단계입찰은 국내 **유형2·각 단계 2인 이상** 유효입찰로 성립합니다.

2-4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 이 절의 핵심

비경쟁적 방법은 조달기관이 특정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해 공급받는 방식으로, **신속성**이 강점이나 **투명성 저하·과다 비용·특정 기업 의존**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수의계약**이라 하며, 여기에는 견적요청(RFQ)·단독/단일공급원조달이 포함됩니다. **소액구매**는 사전 설정 금액 이하를 구매카드로 간소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2-4-① 수의계약 (견적요청 · 단독/단일공급원조달)

📖 근거법령(예정) · 국가계약법 § 7 단서(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 UNCITRAL 공공조달모델법 § 30

비경쟁적 조달 방법은 **공익적 긴급성**, 조달 대상물의 **기술적 전문성**, 맞춤형 특화 용역 등 조달 요구의 특수성이 높거나, **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기존 조달물과의 **호환성**이 중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쟁 절차 없이 조달기업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수의계약**이라 부르며, 형식 요건으로 견적요청서를 받아 예산 범위 내인지 확인합니다.

구분	장점	위험
비경쟁적 조달 일반	① 절차·기간이 짧아 신속 ② 특화 대상물 접근성 향상 ③ 민감 사안 비밀 보장 ④ 검증된 공급자 관계 강화	① 검증·조정 부재로 과도한 비용 ② 절차·기준 비공개로 투명성 저하 ·특혜 논란 ③ 반복 시 특정 기업 과도한 의존

따라서 비경쟁적 방법을 활용할 경우 해당 조달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절차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구체적 실행 방식은 견적요청과 단독/단일공급원조달입니다.

① **견적요청(RFQ)**은 조달기관이 표준 상품·단순 용역·작업 제공자에게 가격·납품기간·지불조건 등 기본 약관을 요청하는 수단으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가격 외 선정기준의 고려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용품**에 적합합니다. 진행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적요청 절차 원칙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준 문서로 최소 3명 이상 입찰자 요청(2명 이하면 예외 절차·기록)
품질·수량·조건·납품기간 등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독소조항·특정 기업 유리 조건 배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일반적으로 5일 내외), 제출 후 변경·추가 협상 불허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최저가격 수준을 설정하기도 함)

견적요청은 복수 견적을 받아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면 실질적으로 **제한경쟁과 유사**하나, 참가 요건을 공시하지 않고 제한된 수(1개~최소 3개 이상) 기업에 요청하므로 기본적으로 **비경쟁적** 방법입니다. 서면·이메일·팩스·택배로 요청할 수 있으나 접수 근거 확인이 어려운 **전화는 불가**합니다. 계약 규모를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류·금액·빈도 등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② **단독/단일공급원조달**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직접조달(Direct Procurement)**로, 두 가지로 세분됩니다.

구분	내용
단독공급원(Sole Source)	공급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단 하나만 존재 하는 경우에 적용
단일공급(Single Source)	공급 가능한 다수 기업이 존재 함에도 전략적 관계 구축 등의 목적으로 1개 기업을 직접 선택 해 계약

직접조달이 적합한 경우는 ①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 ② 요구를 충족할 기업·개인이 **하나만 존재** ③ 특허·호환성·지식재산권 등 **배타적 권리**·업무 연속성 ④ 직접계약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유리** ⑤ 생산·공급 기업이 단 하나 ⑥ 법령상 **법적 정당성** 확보 등입니다. 정당성은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엄격한 내용적·형식적·법적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상위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요청기관·요구사항·해당 기업만 충족 가능한 이유·추가 공급자 파악 조치·총비용·단독 필요성 배제 조치를 문서화).

2-4-② 소액구매

📌 근거법령(예정) · UN 조달규정 ·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 정부구매카드 운영지침

소액구매는 **사전 설정된 금액 이하**의 소규모 조달에서 필요한 프로세스와 서류를 **최소화**해 신속하게 공급받는 간소화된 조달 방법입니다. 경쟁적·비경쟁적 계약 방식이 아니라 **민간의 단순 구매 형태와 유사**하며, 국가·국제기구별로 **소액구매임계값(MPT: Micro Purchase Threshold)**을 설정해 운영합니다.

기관	소액구매임계값(MPT)
UN(유엔)	5,000달러(사전 승인 시 최대 1만 달러)
미국 (FAR)	국내 체결 1만 달러 / 국외 체결 3만 5,000달러
우리나라	정부·지자체 발급 정부구매카드 로 일상경비 중 소액(기관별 상이, 500만 원 내외)의 소모품 구매, 정부유류구매카드로 주유비 지출

소액구매는 표준화된 상용품·단순 용역·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며, 지출 통제를 위해 정부 발행 **구매카드(Purchase Card)** 활용을 우선합니다. 공급 기회의 편중을 막기 위해 특정 업체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다수 조달기업에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요구합니다. 장점은 ① 경쟁 절차의 시간·비용·인력 감소로 **거래비용 절감** ② 대량의 유사 소규모 구매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 ③ 관리 부담 대폭 감소입니다.

📌 시험 포인트 — 수의계약 vs 소액구매

수의계약은 경쟁을 배제하고 특정 기업과 직접 계약하는 **비경쟁적 조달 방법**(견적요청·단독/단일공급원)이고, **소액구매**는 경쟁·비경쟁 계약이 아니라 임계값(MPT) 이하를 구매카드로 처리하는 **간소화 방법**입니다. 단독공급원은 공급자가 **유일**, 단일공급은 다수가 있으나 **전략적으로 1개 선택**이라는 구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쉽게 이해하기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단골 가게에 바로 주문**하는 방식—빠르지만 특혜·과다비용 위험이 커서 정당성 문서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액구매**는 아예 계약 절차를 건너내고 **회사 법인카드로 소모품 사듯** 처리하는 간소화 방법이라, 경쟁·비경쟁 계약과는 결이 다릅니다. 헛갈리기 쉬운 두 쌍을 표로 정리합니다.

구분	공급자 상황
단독공급원(Sole)	충족 업체가 '단 하나만' 존재
단일공급(Single)	다수가 있으나 전략적으로 '1개 선택'

🔑 **암기: 견적요청(RFQ) '3·5·최저·전화X'** — 최소 3인 이상 요청 · 준비기간 5일 내외 · 최저가 선정 · 접수근거 없는 전화는 불가.

⚠ **함정: 소액구매 임계값(MPT) 숫자 매칭** — UN 5,000달러(승인 시 1만) · 미국 FAR 국내 1만·국외 3.5만 달러 · 한국은 정부구매카드로 500만 원 내외. 규모를 인위적으로 쪼개는 '분할'은 오남용으로 금지됩니다.

③ 요약노트

한눈에 보는 핵심

🌸 한눈에 보는 핵심 (제2장)

- **5대 기본원칙**(GPA·UN·WB·OECD·EU 공통): **투명성·비용 대비 가치(VFM)·경쟁성·차별금지와 동등한 대우·책임성**
- **VFM**은 최저가가 아니라 총소유비용(TCO)·생애주기비용(LCC)·역량·정책목표까지 종합한 **최적 조합**
- **OECD 12대 실행원칙**: 실행기반(전자조달·통합·역량) → 핵심(투명성·청렴성·접근성·참여) → 목표(균형성) → 관리(위험관리·평가·책임성)
- **균형성** = 1차 재정 효율성 + 2차 정책지원 효과성의 균형 / **위험관리 5단계**: 식별→평가→해결→모니터링→지속개선
- **유형**: 중앙집중형(규모의 경제·정책 지원, CPB) / 분산형(유연 대응, 자체조달) / 한국=**혼합형(중앙 30·자체 70)**
- **경쟁 유무**: 경쟁적=공개·제한·2단계·제안요청·경쟁적협상·ERA / 비경쟁적=단독공급원·견적(소액) / 견적요청은 **양쪽 모두 가능**
- 한국 입찰 3방법: **일반경쟁**(공개, 자격 최소화·필수요건 5) · **제한경쟁**(자격·면허 등 요건, 예외적) · **지명경쟁**(선별, 최소 3개 초대)
- 실행 방법: **RFP**(2봉투, 기술→가격, QCBS·QBS·FBS·LCS) · **2단계입찰**(국내 유형2, 각 단계 2인 이상) · **경쟁적 대화·ERA**(최저가 온라인)
- **수의계약**: 견적요청(RFQ, 최소 3인·5일 내외·최저가·전화 불가) + 단독(유일)/단일(다수 중 1개 선택)공급원조달 / 정당성 문서·승인 필요
- **소액구매**: MPT 이하 간소화·구매카드 / UN 5천(승인 1만)\$·미국 국내 1만·국외 3.5만\$·한국 정부구매카드 500만 원 내외

✅ 자가 진단

1. 국제기구 공통 5대 기본원칙을 열거하고 VFM을 설명할 수 있는가?
2. OECD 12대 실행원칙의 4단계 구조(실행기반·핵심·목표·관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
3. 중앙집중형·분산형·혼합형의 강점과 한국의 비중(30:70)을 말할 수 있는가?
4. 일반·제한·지명경쟁의 차이와 공개입찰 필수요건 5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
5. RFP·2단계입찰·경쟁적 대화·ERA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가?
6. 수의계약(견적요청·단독/단일공급원)과 소액구매(MPT)를 구분할 수 있는가?

④ 예상문제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객관식 (10문항)

1. GPA·UN·World Bank·OECD·EU가 공통으로 채택하는 공공조달의 5대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투명성(Transparency)
- ② 비용 대비 가치(VFM)
- ③ 경쟁성(Competitiveness)
- ④ 이윤 극대화
- ⑤ 책임성(Accountability)

정답 · 해설

✓ 정답 ④ '이윤 극대화'는 기본원칙이 아니다.

공공조달의 5대 기본원칙은 투명성·비용 대비 가치(VFM)·경쟁성·차별금지와 동등한 대우·책임성입니다. 이윤 극대화는 상업적 구매의 목적으로,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이 아닙니다.

2. 공공조달의 '비용 대비 가치(VFM)'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언제나 구매 시점의 최저가격을 의미한다.
- ② 비용·품질·기타 관련 요소의 최적 조합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품질은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 평가한다.
- ④ 생애주기비용(LCC)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⑤ 정부 정책·제도 목표와는 무관하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비용·품질·기타 요소의 최적 조합 확보.

VFM은 단순 최저가가 아니라 총소유비용(TCO)·생애주기비용(LCC), 공급업체 역량, 정부 정책·제도 목표 달성까지 모두 고려한 비용·품질·기타 요소의 최적 조합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2015년 OECD가 제시한 공공조달 12대 실행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청렴성(Integrity)
- ② 접근성(Access)
- ③ 균형성(Balance)
- ④ 전자조달(e-Procurement) 활용
- ⑤ 이윤성(Profitability)

정답 · 해설

✓ 정답 ⑤ '이윤성'은 12대 실행원칙이 아니다.

OECD 12대 실행원칙은 투명성·청렴성·접근성·참여·효율성·균형성·전자조달 활용·역량개발·통합·평가·위험관리·책임성입니다. 이윤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운영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완전한 중앙집중형이다.
- ② 완전한 분산형이다.
- ③ 조달청 중심 중앙조달 약 30%, 자체조달 약 70%의 혼합형이다.
- ④ 조달청 중심 중앙조달 약 70%, 자체조달 약 30%의 혼합형이다.
- ⑤ 자체조달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정답 · 해설

✓ 정답 ③ 중앙 약 30%·자체 약 70%의 혼합형.

우리나라는 조달청 중심의 중앙집중적 조달 약 30%, 지자체 등 자체조달 약 70%의 혼합형(Hybrid) 운영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앙집중형은 규모의 경제, 분산형은 유연한 대응에 강점이 있습니다.

5. UNCITRAL 공공조달모델법의 조달 방법 중 성격이 비경쟁적인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공개입찰 · 제한입찰
- ② 2단계경쟁 · 전자적 역경매
- ③ 견적요청(소액) · 단독공급원조달
- ④ 협상없는 제안요청 · 경쟁적 협상
- ⑤ 대화기반 제안요청 · 연속협상 제안요청

정답 · 해설

✓ 정답 ③ 견적요청(소액) · 단독공급원조달이 비경쟁적이다.

입찰서류가 공고되어 적격 기업 모두에게 공개되는 공개입찰·제한입찰·제안요청서·2단계입찰 등은 경쟁적 방법이며, 사전 지정한 기업에만 허용하는 견적요청(소액)·단독공급원조달은 비경쟁적 방법입니다. 견적요청은 운영에 따라 경쟁적일 수도 있습니다.

6. 공개입찰(일반경쟁) 입찰공고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립적이고 명확한 기술사양을 갖출 것
- ② 자격을 갖춘 모든 잠재적 입찰자에게 개방될 것
- ③ 객관적인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제시할 것
- ④ 특정 1개 기업만 참여하도록 자격을 제한할 것
- ⑤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할 것

정답 · 해설

✓ 정답 ④ 특정 1개 기업 제한은 공개입찰의 취지에 반한다.

공개입찰은 자격을 갖춘 관심 있는 모든 잠재적 입찰자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참가 자격·요건 제한을 최소화합니다. 필수 요건은 ①중립적·명확한 기술사양 ②모든 잠재적 입찰자 개방 ③객관적 참가자격 기준 ④국내·국제 공고 ⑤명확·객관적 평가기준입니다.

7. 제한적 입찰 절차에서 특정 기업과 직접 계약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단일기업 계약은 공급자가 유일한 경우에만 쓴다.
- ② 단독공급기업 계약은 조달기관에 유리한 가격조건을 설정하기 쉽다.
- ③ 단일기업 계약(복수 중 1개 선정)은 조달기관에, 단독공급기업 계약(유일)은 조달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 ④ 두 방법은 형식과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 ⑤ 제한적 입찰은 경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정답 · 해설

✓ 정답 ③ 단일=조달기관 유리, 단독=조달기업 유리.

복수의 기업 중 1개를 선정하는 단일기업 계약(Single Contracting)은 조달기관에 유리한 조건 설정이 가능한 반면, 공급자가 유일한 단독공급기업 계약(Sole Source)은 조달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제한적 입찰도 요건 충족 기업 간 경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나라의 지명경쟁(선별적 입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조달기업만 초대되어 경쟁한다.
- ② 경쟁성 확보를 위해 최소 3개 이상 기업이 초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 오남용 시 경쟁성·접근성·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크다.
- ④ 초대된 입찰기업에는 공개입찰에 준하는 절차를 적용한다.
- ⑤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무제한 개방하는 방식이다.

정답 · 해설

✓ 정답 ⑤ 무제한 개방은 지명경쟁이 아니라 공개입찰(일반경쟁)이다.

선별적 입찰(지명경쟁)은 사전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만 초대해 경쟁하며 최소 3개 이상 초대가 일반적입니다. 모든 기업에 무제한 개방하는 것은 공개입찰(일반경쟁)의 특성입니다.

9. 견적요청(RFQ)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소 3명 이상 입찰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견적서 제출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추가 협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③ 접수 근거 확인이 어려운 전화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 ④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⑤ 상용품 등 가격 외 선정기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다.

정답 · 해설

✓ 정답 ③ 전화는 서면 접수 근거 확인이 어려워 활용되지 않는다.

견적요청은 서면·이메일·팩스·택배로 요청할 수 있으나, 서면 자료로 접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전화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최소 3명 이상 요청, 제출 후 변경·협상 불허, 최저가 선정, 상용품 적합은 옳은 설명입니다.

10. 소액구매(Micro Purcha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국은 연방조달규정(FAR)상 국내 체결 3만 5,000달러를 임계값으로 한다.
- ② UN은 소액구매 한도를 10만 달러로 설정했다.
- ③ 우리나라는 정부구매카드로 일상경비 중 소액(500만 원 내외) 소모품 구매에 활용한다.
- ④ 공급 기회를 특정 1개 업체에 집중시키도록 요구한다.
- ⑤ 대규모 전문 공사에 우선 적용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③ 정부구매카드로 500만 원 내외 소모품 구매.

우리나라는 정부·지자체 발급 정부구매카드로 일상경비 중 소액(기관별 상이하나 500만 원 내외) 소모품 구매에 활용합니다. 미국 FAR은 국내 1만·국외 3.5만 달러, UN은 5,000달러(승인 시 1만)이며, 공급 기회는 다수 기업에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요구합니다.

OX (5문항)

11. 공공조달의 투명성은 완전히 공개적인 입찰 절차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되며, 이를 통해 청렴성도 향상될 수 있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완전히 공개적인 입찰 절차의 실행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를 통해 청렴성(Integrity)도 함께 향상할 수 있습니다.

12. OECD 12대 실행원칙 중 '균형성'은 1차 재정운영 효율성과 2차 정책지원 효과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목표원칙에 해당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균형성은 공공조달의 본원적 1차 목표인 효율적 재정운용과 2차 정책지원 효과성을 전략적으로 균형 있게 달성하는 목표원칙입니다.

13. 제안요청(RFP) 방식에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하나의 봉투에 함께 담아 동시에 개봉·평가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X

제안요청(RFP)은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각각 밀봉한 2개 봉투(Two Envelope)로 제출합니다. 개찰 시 기술제안서만 먼저 개봉·평가하고, 최소 통과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의 가격제안서만 개봉합니다.

14. 단독공급원조달은 공급자가 유일한 경우에, 단일공급조달은 공급 가능한 다수 기업이 있음에도 전략적으로 1개 기업을 직접 선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

정답 · 해설

정답: ○

단독공급원(Sole Source)은 공급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 단일공급(Single Source)은 다수 기업이 존재함에도 전략적 관계 구축 등의 목적으로 1개 기업을 직접 선택해 계약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5. 국내 2단계경쟁입찰은 UNCITRAL의 2단계입찰 유형 중 '유형 1'만 적용하며,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은 각각 1인의 입찰만으로도 성립한다. (○ / ✕)

정답 · 해설

정답: ✕

국내 2단계경쟁입찰은 '유형 2'만 적용하며,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은 각각 독립된 입찰로 각 단계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합니다(단,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규격 적격자가 1인이어도 개봉 가능).

PART 1 · 제3장

전자조달시스템

① 학습목표 · 핵심키워드

PART 1 · 필기 제1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30문항)

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은 현대 공공조달의 실행·관리가 **어떻게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다루는 장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의 **개념·유형·구성요소·기능·성과(1절)**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와 그 연계 **지원플랫폼(종합쇼핑몰·혁신장터·벤처나라·디지털서비스몰·이음장터, 2절)**, 그리고 전자조달의 기준정보 체계인 **목록정보시스템·물품목록제도(3절)**를 단계적으로 학습합니다.

🎯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이 장을 학습한 후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 배경·발전과정**과 공공조달 실행환경과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유형(전자적 소싱·전자적 구매)**과 지출분석 4개 사분면을 설명할 수 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성요소·표준기능·도입 성과**를 설명할 수 있다.
- 나라장터 연계 **계약관리 지원플랫폼(종합쇼핑몰·혁신장터·벤처나라·디지털서비스몰·이음장터)**을 구별할 수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과 2단계경쟁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 **물품목록제도·물품목록법·UNSPSC** 기반 목록화 절차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핵심 키워드 (Keywords)

전자조달시스템(e-Procurement System)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 · 나라장터 · 전자입찰(e-Tendering) · 전자계약(e-Contract) · 전자지불(e-Payment) · 종합쇼핑몰 · 혁신장터 · 벤처나라 · 디지털서비스몰 · 이음장터 · 다수공급자계약(MAS) · 2단계경쟁 · 목록정보시스템 · 물품목록법 · UNSPSC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이 단원의 4단 구조

- ① 학습목표·핵심키워드 (이 화면)
- ② 본문 — 3-1 전자조달시스템 개요 / 3-2 연계 계약관리 지원시스템 / 3-3 목록정보시스템
- ③ 요약노트 — 한눈에 보는 핵심
- ④ 예상문제 —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3-1

전자조달시스템 개요

💡 이 절의 핵심

전자조달시스템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소싱·구매·지불**을 자동화하는 전자적 프로세스의 집합입니다. 유형은 **전자적 소싱 / 전자적 구매**로 나뉘고, 지출분석(지출규모·복잡성·위험)에 따라 **기술적·전략적·인수·레버리지** 4개 사분면으로 구축 중점이 달라집니다. 발전은 **5단계**, 표준기능은 **10개**, 도입 성과는 **투명성·효율성·비용절감·공급업체관리** 등입니다.

3-1-① 전자조달시스템 개념

📖 근거법령(예정) · 조달사업법 · 전자조달법(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e-Procurement)시스템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이나 용역(서비스)의 **소싱·구매·지불** 등을 자동화로 처리하는 전자적 처리 프로세스의 집합입니다. 기존의 **종이 기반 구매 프로세스**를 전자적 업무처리로 전환해 **비용 절감·효율성 향상·구매활동 가시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민간부문(B2B·B2C·B2G)에서도 활용되나, ‘조달’이 공공부문 구매활동과 정합성이 높아 **공공부문의 전자적 업무처리시스템**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의 주체	정의
세계은행(2003b)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요구하는 공사·상품·컨설팅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조달관계를 수행하는 데 정보기술(특히 인터넷) 을 사용하는 것
유럽연합(EU)	공공조달 절차 전반에 걸친 ICT 기반 공공조달 업무처리 시스템 (입찰공고·입찰문서 제공·입찰서 제출·평가·수주·주문·송장·지불 등 구현)

도입 초기에는 모든 조달 프로세스를 전자화하는 ‘**End-to-End(E2E)**’ 달성이 어려웠으나, 오늘날 한국·미국·영국·EU·OECD 주요국과 UN·세계은행 등은 사실상 E2E 수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용합니다. 그중 우리나라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 Korea ON-lin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은 2002년 서비스 개통 이후 유엔 전자정부 대상 등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3-1-② 전자조달시스템 유형

📖 근거자료 · UK OGC(2005, 현 UK CCS: Crown Commercial Service)

공공조달은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연방조달데이터시스템(FPDS)** 등으로 전산화가 시작되었고, 1980~90년대 **EDI** 기반 문서처리 플랫폼을 거쳐, 2000년대 중반 입찰 단계 중심 전자조달 솔루션의 확산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전자조달을 본격화해 2000년 11월 전자입찰시스템, 2002년 통합 나라장터를 구축했습니다. 2014년까지 모든 OECD 국가가 하나 이상의 전자조달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2005년 영국 조달청(UK OGC)은 전자조달시스템을 **2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했습니다.

유형	초점	주요 기능
전자적 소싱(e-Sourcing)	공급자를 찾고 평가 하는 소싱 활동 지원 (공급망 관리 차원)	공급업체 DB·전자입찰(e-Tendering)·평가(e-Evaluation)·협업(e-Collaboration)·협상(e-Negotiation), 전자경매(e-Auction)·계약관리
전자적 구매(e-Purchasing)	정확한 주문정보 기반 구매·지불 처리에 초점	전자구매(Purchasing)·지불(Payment)·구매카드(P-Card)·전자송장(e-Invoicing)

3-1-③ 전자조달시스템 운영환경

📖 근거자료 · Schapper(2006) 지출분석 사분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어떤 유형으로 구현할지는 **공공조달 지출분석(포트폴리오 분석)**에 기반해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출분석은 **지출규모(Spend)**와 **시장의 난이도(Difficulty=복잡성+위험)** 2개 차원, 즉 **지출규모·복잡성·위험** 3요소로 공공조달 지출을 **4개 사분면**으로 분류합니다.

지출 유형	특성	전자조달 구축 중점
기술적 (Technical)	높은 복잡성·위험, 낮은 지출 — 경쟁 약화·독과점, 전환비용 큼	계약관리·수요관리 중심, 필요 시 인소싱(In-Sourcing) 선호
전략적 (Strategic)	높은 복잡성·위험, 높은 지출 — 협상 필요, 고객화 (Customization) 요구. 비중 가장 높음	제안요청·관심표명(EOI)·공개경쟁입찰·장기관계, 전자입찰(e-Tendering) 중심
인수 (Acquisition)	낮은 복잡성·위험, 낮은 지출 — 표준화·일상거래, 완전경쟁에 근접	전자카탈로그·전자지불·워크플로 , 기본협정(FA)·정부구매카드(P-Card)
레버리지 (Leverage)	낮은 복잡성, 높은 위험, 높은 지출 — 수요자(구매력) 주도 시장	구매력 레버리지 — 전자경매(e-Auction)·전자견적·기본협정(FA)

📖 기본협정(FA: Framework Agreement)

중앙조달기관(CPB) 등이 사전 검증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기본 계약조건·이행절차를 미리 정해 놓은 포괄적 합의**입니다. 수요 발생 시 입찰 없이 바로 납품요구하거나 추가 경쟁을 거쳐 신속 구매가 가능하며, 한국·미국의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유사한 특성을 갖습니다.

3-1-④ 전자조달시스템 구성요소

📖 근거자료 · UN(2006) 전자조달 발전 5단계 · 조달포털·PMIS 기술 아키텍처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은 **5단계**로 구분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전통적 공공조달 — 종이 기반 오프라인, 일부 파일 형식 문서처리
2단계	메인프레임·PC·ERP·EDI로 정보 입력·전송·저장·처리 지원
3단계	이메일·웹사이트 등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 수단 활용
4단계	인터넷 기반 전용 플랫폼·도구(온라인 공급자등록 DB·전자카탈로그·웹 기반 EDI)로 보완
5단계	전통적 프로세스를 인터넷 전용 플랫폼으로 대체 — 도구·기능을 완전 통합한 공공조달 플랫폼

전자조달 도구는 전통적 프로세스 지원(EDI·XML·WWW·ERP·이메일)과 대체 도구·플랫폼(전자소싱·전자입찰·전자경매·전자주문·전자정보)으로 나뉩니다. 보완·확장 도구로는 전자카탈로그(e-Catalogue), 전자역경매(e-Reverse Auction), 동적구매시스템(DPS) 등이 있으며, DPS는 사전 자격을 갖춘 공급자 풀에 직접 접근하는 ‘오픈마켓’ 솔루션으로 EU 지침에 반영되어 있고 미국·한국의 다수공급자계약(MAS)이 유사 제도입니다. 국내는 전자역경매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봉인입찰 등으로 대체합니다.

전자조달 기술 아키텍처는 조달포털과 조달관리정보시스템(PMIS)의 두 상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조달포털은 게이트웨이로서 공급업체·구매자 등록부, 식별·인증(비밀번호·전자서명)을 제공하고, PMIS는 조달계획·재고관리·계약관리(변동·연장·해지)·FMIS 연계 등 관리·통제·보고 기능을 담당합니다. 계약의 재무 처리를 위해 국내 디브레인(dBrain)·e호조 같은 재정정보시스템(FMIS)과 연계됩니다.

3-1-⑤ 전자조달시스템 기능

📎 근거자료 · 전자조달시스템 표준 기능 및 요구사항(표 3)

전자조달시스템의 표준 기능은 다음 10개 기능으로 정리됩니다.

기능	주요 요구사항
전자조달계획(e-Procurement Plan)	상품·공사·용역 예산 정의, 계층적 그룹화·통합해 국가 조달계획 공표, FA 수립, FMIS 통합
공급업체 위험평가	전자조달 활동 평가로 공급업체 위험 파악
전자게시/알림	입찰공고 게시, 결제 게이트웨이 연동 수수료 온라인 결제
전자입찰 모듈	암호화된 전자입찰서 제출, 표준시 기반 타임스탬프(내부 시스템 시계 비의존)
전자평가/낙찰	온라인 열람·복호화·평가, 위원회 접근통제, 정지기간/불만 처리, 낙찰 지원
전자계약관리	계약 협상·수정·갱신, KPI 보고, 지급일정·송장 등 재무 측면 FMIS 통합
전자구매(e-Purchasing)	요청·견적·구매오더·입고·송장·지급 프로세스 지원
공급업체관리	전자증명서문지·사전자격심사·실적관리, 부정적 업체 향후 입찰 금지
경매(Auction)	역경매 플랫폼 제공(국내 나라장터는 실효성 낮아 미채택)

전자입찰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요소는 전자적 입찰서 제출의 보안으로,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게 전송·저장해야 합니다. 전자입찰 시간은 입찰서 유효 여부를 결정하므로 일방의 장비나 내부 서버 시계에 의존하지 않는 표준시 기반 타임스탬프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품코드는 일반적으로 UNSPSC 체계를 사용합니다.

3-1-⑥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성과

📎 근거자료 · 세계은행 · OECD 전자조달 성과 분석

전자조달시스템은 공공조달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 성과를 크게 향상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패 가능성을 줄이며** 온라인 입찰 기회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구체적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	내용
① 투명성·책임성	실시간 입찰공고·온라인 낙찰결과 확인으로 자의적 결정 여지 제거, 표준화 문서관리로 사기·부패 저감
② 효율성·속도	문서 기반 절차를 전자화해 처리시간 단축, 서류작업 감축으로 담당자 핵심업무 집중도 제고
③ 비용 절감	인쇄물·우편·문서기록·관리 관련 직간접 비용 절감
④ 공급업체 관리	참가자격 정보 수집·위험 평가로 안정적 공급업체 선정, 공급업체 DB 관리
⑤ 입찰 참여 촉진	중소기업 의 수월한 참여 지원, 지리적·물리적 제약 없는 접근성으로 경쟁 확대
⑥ 데이터·보고	상세 데이터 생성·분석으로 조달전략 최적화·자원배분 개선 지원

✳ 쉽게 이해하기

종이 입찰서를 봉투에 넣어 발주기관 1층에 줄 서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마감·개봉을 놓고 의심이 끊이지 않던 이 불신을 인터넷 처리로 없앤 것이 전자조달입니다. **e-Sourcing**은 공급자를 '찾고 평가'(입찰·협상)하는 쪽, **e-Purchasing**은 주문을 '사고 지불'(구매·송장)하는 쪽으로 나뉩니다.

Schapper의 4사분면은 **지출규모(큰가)**와 **난이도(어려운가)** 두 축으로 갑니다. 돈도 많이 쓰고 어려우면 협상·입찰 중심의 **전략적**, 쉽고 소액이면 카탈로그·구매카드의 **인수**가 답입니다.

🔑 **암기:** 유형은 '소싱=찾기, 구매=사기'. 4사분면 '기술적·전략적·인수·레버리지'는 「기전인레」. 발전 5단계·표준기능 10개.

⚠ **함정:** 국내 나라장터는 전자역경매(e-Auction)를 표준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봉인입찰로 대체). 또 대금 연계 재정정보시스템(FMIS)은 디브레인·e호조입니다.

3-2

연계 계약관리 지원시스템

💡 이 절의 핵심

나라장터에는 계약관리를 지원하는 **5대 연계 플랫폼**이 있습니다. **종합쇼핑몰**(2006, 다수공급자계약), **혁신장터**(2019, 혁신 촉진), **벤처나라**(2016, 창업·벤처 판로), **디지털서비스몰**(2022,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이음장터**(2022, 소액 용역 직거래)입니다. 이 중 이음장터만 **조달청 사전 계약 없이** 직거래하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3-2-① 종합쇼핑몰 활용 계약

📖 근거법령(예정) · 조달사업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종합쇼핑몰**(shop.g2b.go.kr)은 2006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과 함께, 수요기관이 검증된 공급업체 물품을 쉽게 구매하도록 민간 오픈마켓 개념으로 구축된 디지털마켓플레이스입니다. 전자조달의 **전자카탈로그 +전자구매** 기능을 결합했습니다. 등록 가능 물품은 조달청이 체결한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물품·용역입니다. 수요기관이 물품을 검색·장바구니 담기 후 조달요청서를 발송하면 조달청이 **납품요구서**를 발행하고 공급업체가 납품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최저가 1인 낙찰의 다양성 부족·품질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이 동등·유사한 물품에 대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고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선택·납품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물품은 ①규격 확정·상용화 ②연 납품실적 3,000만 원 이상 업체 3개사 이상 ③공통 상용규격·시험기준 존재 ④단가계약 가능 물품 등입니다.

🎯 시험 포인트 — MAS 2단계경쟁 적용 기준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1회 납품요구금액 **1억 원 이상**
- **일반 제품**: **5,000만 원 이상** (중소기업 제조품목 5,000만~1억 원 미만은 바로 구매 가능)
- **5억 원 이상**: 제안공고 후 5개사(2개사 가능) 이상 지정해 제안경쟁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제안 불가**(90% 미만 제안 불가), 제안요청 마감 **공휴일 제외 5일 이상**

2단계경쟁 납품업체 선정은 ① 종합평점 최고 → ② 동점 시 품질관리 점수 최고 → ③ 가격평가 A형은 낮은 가격/B형은 낮은 제안을 → ④ 동점 시 **자동 추첨**의 순서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은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과 **표준평가방식** 2가지이며, 표준평가방식은 별도 항목 추가·배점 조정이 불가합니다.

3-2-② 혁신장터 활용 계약

📖 근거법령(예정) · 조달사업법 § 5·§ 27 · 국가계약법 시행령 § 26 · 지방계약법 시행령 § 25

혁신장터(2019~)는 공공부문 구매력을 활용해 ① 국민 요구 부응 서비스 ② 민간 기술혁신·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혁신 촉진)**에 해당합니다. **혁신조달 포털**과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합한

플랫폼입니다. 혁신제품은 「조달사업법」 제5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지정 후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 26, 지방계약법 시행령 § 25)하고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전용몰은 **직접 계약 기능이 없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조달청에 조달요청하는 방법으로 구매합니다(다만 MAS·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납품요구로 구매 가능). 등록하려면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물품목록화(식별번호 발급)**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지정 유형은 기존 3개(Fast Track 1·2·3)에서 **2개 유형**으로 통합(기존 FT1+FT3→유형1, FT2→유형2)되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시 지원

전용몰 등록·종합쇼핑몰·벤처나라 연계 노출, 나라장터 엑스포 홍보부스, 해외 판로개척 지원, 그리고 기관별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고 달성도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혁신구매 목표제**가 있습니다. 또한 「조달사업법」 § 27에 따라 구매 책임자는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손실 면책**이 적용됩니다.

3-2-③ 벤처나라 활용 계약

 근거법령(예정) · 조달사업법 § 25 · 벤처기업법 § 2의2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2

벤처나라(venture.g2b.go.kr)는 2016년 창업기업·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사업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되었습니다. 등록 제품은 **바로주문·견적주문**으로 구매하며, 구매 가능 금액은 추정가격 기준 **2,000만 원 이하**(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5,000만 원)입니다. 지정제품(‘벤처창업기업제품’)의 유효기간은 **6년**입니다.

등록 기업 요건은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요건을 갖춘 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입니다. 등록 대상 제품은 디지털·가전, 컴퓨터·주변기기, 자동차·공구·기계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추천기관 추천 → 온라인 신청 → 조달청 심사 등 **7단계**로 지정됩니다. 추천기관은 17개 광역지자체·7개 국가기관·14개 공공기관 등 **총 38개 기관**입니다. 지정 시 나라장터 연계 구매 지원, 지정증서 발급, **G-PASS 제도**를 통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받습니다.

3-2-④ 디지털서비스몰 활용 계약

 근거법령(예정) · 클라우드컴퓨팅법 § 20·시행령 § 15의2 · 국가계약법 시행령 § 26 · 조달사업법 시행령 § 16

디지털서비스몰(digitalmall.g2b.go.kr)은 2022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의 공공부문 도입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이 나라장터와 연계 구축한 **디지털서비스 전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대상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법」 § 20에 따른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③ 융합서비스의 **3개 유형**이며, 시행령 § 15의2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어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됩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 26)과 **카탈로그계약**(조달사업법 시행령 § 16)으로 공급합니다. 카탈로그계약은 조달청이 서비스의 기능·특징·가격을 담은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3-2-⑤ 이음장터 활용 계약

☎ 근거법령(예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 26 · 지방계약법 시행령 § 25

이음장터(service.g2b.go.kr)는 2022년부터 **용역(서비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전용 플랫폼으로, 수요기관과 민간 용역 공급업체가 **자유로운 협상으로 직접 거래**합니다. 거래 대상은 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2,000만 원(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 용역이며,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은 **부가세 포함 5,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중소 용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공공 용역 공급을 다양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시험 포인트 — 이음장터의 차별점

종합쇼핑몰·벤처나라·혁신제품 전용몰·디지털서비스몰은 **사전에 조달청과 계약·승인**을 받은 뒤 공급하지만, 이음장터는 **조달청과 별도의 사전 계약·검증 없이** 공급기업이 자유롭게 용역을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직거래합니다. 다만 등록 상품가격은 업체의 **판매 희망가격**이므로 계약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은 ‘구해요 탭’, 공급기업은 ‘팔아요 탭’을 통해 거래하며 가격·납품조건·공급시기를 이음장터에서 직접 협의합니다.

✳ 쉽게 이해하기

5대 플랫폼은 '공공기관용 특화 쇼핑몰'이라고 보면 직관적입니다.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미리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MAS)을 맺어 둔 물품을 고르는 곳이고, 나머지는 대상 기업·목적이 다른 전용관입니다. 합격의 갈림길은 각 몰의 '대상 기업'과 '금액 한도'를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몰	핵심
종합쇼핑몰(2006)	MAS 물품, 2단계경쟁
혁신장터(2019)	혁신제품, 3년 수의계약
벤처나라(2016)	창업·벤처, 2천만원 이하
디지털서비스몰(2022)	클라우드, 카탈로그계약
이음장터(2022)	소액 용역, 직거래

🔑 **암기:** MAS 2단계경쟁 기준은 '일반 5천만, 중기간 경쟁제품 1억, 5억↑ 제안공고'. 「오천만·일억·오억」으로 끊어 외웁니다.

⚠ **함정:** 두 금액을 '모두 5천만' 또는 '모두 1억'으로 통일해 내는 함정이 있습니다. 또 이음장터만 조달청 사전 계약·검증 없이 직거래한다는 점이 다른 몰과의 결정적 차별점입니다.

3-3

목록정보시스템 개요

이 절의 핵심

목록정보시스템은 **UNSPSC 국제 상품분류체계**에 기반해 조달 대상물·계약 목적물을 식별하는 **기준정보 체계**입니다.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8자리)+물품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되며, 국내는 세부품명번호(10자리)까지 관리합니다. 근거법은 「**물품목록법**」(1991 제정, 1995 시행)이고, 소관은 **조달청**입니다. 세부품명번호가 없는 조달 대상물은 원칙적으로 나라장터 계약이 불가합니다.

3-3-① 물품목록법령의 개요

☎ 근거법령 · 물품목록법(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물품관리법 · 군수품관리법

1962년 「물품관리법」 제정, 1968년 미국 군급(群級)분류체계(FSC) 도입, 1970년 정부물품분류표 발간을 거쳐, 급증한 물품 관리를 위해 1991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물품목록법**)이 제정(1995년 시행)되었습니다. 2002년 나라장터 도입과 함께 국제 전자상거래 표준인 **UNSPSC**를 채택하고, 2006년부터 정부부문 단일 물품관리 기준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품목록제도는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해 목록화·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조달 계약의 **목적물은 일반 상품명**이 아닌 **물품목록번호**로 식별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조달 대상물은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소관 기관은 「물품목록법」 제4조에 따라 **조달청**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 제도·정책을 관장합니다.

주요 용어(법 §2)	정의
물품	동산 중 현금·유가증권을 제외한 것
물품분류	물품을 기능·용도·성질에 따라 대·중·소·세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체계
물품식별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체계
품명	물품목록번호(법 §8)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
품목	물품식별번호(법 §6)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

적용 범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보유·소요 예상하는 물품이며,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다만 2020년 7월부터 급식·피복·항공유 등 일반 군수품 조달을 조달청이 수행하며 물품목록법을 적용). 목록화 **일반 원칙**은 ① 통일성 ② 포괄성 ③ 상호배제성 ④ 단순성입니다.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법 §6)입니다.

3-3-② 목록정보시스템 이용 일반절차

☎ 근거법령 · 물품목록법 §7·§14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나라장터와 연계된 **목록정보시스템**(goods.g2b.go.kr)은 물품정보를 수집·분석·목록화·전산화해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도록 지원합니다. 메뉴는 **5개**로 구성됩니다.

메뉴	내용
① 지능형 검색	검색엔진이 DB를 분석해 결과 제공(통합검색·상세검색). 신규·변경 정보는 반영에 약 30분 소요
② 검색	품목검색·품명검색·물품안내지도·분류변경이력·품목변경이력 등 5개. DB에서 실시간 검색
③ 목록화 요청	품목등록(식별번호 발급)·품목변경·품명등록(세부품명 신설)·속성등록·업체명 변경·진행상태 조회 등
④ 공지사항 / ⑤ 이용안내	운영 안내 정보 제공

각 기관의 장은 보유·취득 물품 중 목록화되지 않은 물품의 목록화를 조달청장에게 요청(법 § 7)하며, 조달청장은 사전검색·품명 부여·물품분류번호 부여·식별자료 작성·물품식별번호 부여·결과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실무상 품목 등록 업무는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수행됩니다.

3-3-③ 목록정보시스템 활용 목록화 절차

🔗 근거법령 · 물품목록법 시행령 § 9 · 목록화지침(조달청훈령)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8자리)+물품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됩니다. 물품분류번호는 UNSPSC 기반으로 **대·중·소·세 4단계 계층 각 2자리씩 총 8자리**이며, 국내는 2자리를 추가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까지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공공조달은 **10자리 세부품명번호**를 기준으로 입찰공고·계약을 진행합니다.

구분	내용
물품분류번호(8자리)	UNSPSC 기반 대·중·소·세 분류. 국내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확장
물품식별번호(8자리)	제조업체·모델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 UNSPSC 표준과 무관 . 분류가 달라져도 한번 부여된 번호는 불변
품목명 구성	세부품명(예: LED경관조명기구), 제조업체명(○○전기), 모델명(AB60C), 대표속성값(15W) 순

목록화 신청은 두 형태입니다. **품명(세부품명) 신설**이 필요한 경우 ‘로그인 → 물품분류번호 확인 → 품명등록 신청 → 신설 여부 검토 → 품명신설’의 5단계로, **품목등록**은 ‘로그인 → 물품분류번호 확인 → 품목등록 신청 → 신청자료 검토·승인’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담당자는 기존 번호가 없을 경우 품명은 **상품목록심의회**를 거쳐 신설(8단계), 품목은 목록화 작업 후 등록(7단계)합니다. 상품목록심의회는 조달청 **물품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 심의기구입니다.

🔗 목록화 처리기간·제조업체명 원칙

품목등록 목록화는 요건·심사 통과 시 신청 후 **8업무일 이내** 처리됩니다. 신기술·융복합 물품은 일반 소요일수(24업무일)보다 단축된 **17업무일 이내** 처리하나, UNSPSC로 분류되지 않는 품명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품목명의 제조업체명은 **실제 제조업체** 기준이 원칙이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해당 세부품명의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OEM은 제조계약서 첨부 시 상표권 업체명 기입).

3-3-④ 목록정보시스템 활용 분류·품명·품목 관리 절차

🔗 근거법령 · 목록화지침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상품분류체계는 UNSPSC에 따라 대·중·소·세 분류합니다. UNSPSC에 분류가 없으나 필요한 경우 **유보코드**로 분류하되, 확장을 고려해 동일 단계 뒷부분 숫자인 ‘99’부터 **역순**으로 부여합니다.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뒤에 ‘01’부터 차례로 2자리를 추가합니다. 세부품명의 범위가 바뀌는 등 중대 변경 시 새 세부품명번호를 부여하며, **삭제된 세부품명번호는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품목관리에서 물품식별번호는 검색 결과 기존 품목이 없고 등록요건을 충족할 때 새로 부여합니다. 같은 모델명이라도 **원산지가 다르면 각각** 부여합니다. 품목의 용도 구분은 **일반용(1)·계약용(3)·시설자재용(4)·입찰공고용(5)·물품관리용(6)**이며, 계약용·시설자재용·입찰공고용은 물품관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품목은 계약용으로 구분합니다.

식별기준·속성에서 측정단위가 수반되면 ‘UOM(측정단위)’ 항목을 추가하며, 단위는 대소문자를 바꾸지 않고 복수형 ‘-s’를 붙이지 않으며 약자를 쓰지 않되 리터는 대문자 ‘L’을 사용합니다. **상품이미지**는 jpg·gif·png 중 하나로 파일당 **2MB 이하, 최대 5개**까지 등록하며 첫 번째가 대표 이미지(400×400px, 90×90px 축소본 자동 생성)입니다. 품질 확보를 위해 품목에 **1~3등급**을 부여해 관리합니다. 원산지국가명은 **영문 대문자 두 자리 코드**(예: 미국 US)로 표기하되 대한민국은 생략합니다.

3-3-⑤ 목록정보시스템 활용 최신화 및 분류 정비

🔗 근거법령 · 물품목록법 § 11 · § 15 · 목록화지침

물품·기술·품질이 향상되면 목록정보의 **최신화**가 필수적입니다. 품명·세부품명의 최신화(수정·추가·삭제, 해설 수정, 개별속성 수정·삭제)는 **상품목록심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품목의 최신화는 분류 담당자 검토로 진행하되 판단이 어려우면 심의회 등 추가 절차를 거칩니다.

🎯 시험 포인트 — 품목 삭제 원칙

품목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① **10년 이상** 물품관리·조달계약에 사용되지 않았고 추후 사용 가능성이 없거나 ② 등록 정보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③ **중복 등록**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품목정보의 수정은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가 원칙이나, 이미지 상태 개선(형상 동일)이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상품분류체계 정비는 관련 법령·규정·학술적 분류·유통정보를 참고해 객관적 정비보고서를 작성하고 상품목록심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분류 정비보고서에는 ① 상품분류 현황 ② 관련 규정·학술적 분류기준 ③ 관련 상품분류 ④ 유사 상품 통합 여부 ⑤ **UNSPSC 간 매핑테이블** ⑥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여부·계약 현황이 필수 포함되어야 합니다.

3-3-⑥ 목록정보시스템 활용 분류체계 국제 표준화

🔗 근거법령 · 물품목록법 · 목록화지침 · UNSPSC

조달청장은 국내 상품과 해외 상품의 효과적 비교를 지원하고,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개발되는 상품과 전통 고유 상품을 **UNSPSC 등 국제분류체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UNSPSC**는 전자상거래를 위해 개발된 상품분류체계로, 공급사슬 내 모든 참여자(구매사·공급사·제3자 물류사 등) 간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공통 관리기준입니다.

UNSPSC 분류의 추가·수정·이동·삭제가 필요한 경우, 조달청 상품분류 담당자가 상정 대상 분류를 선정하고 **UNSPSC 분류 신설·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뒤 상품목록심의회를 거쳐 상정 대상을 결정하고, 신청서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해 UNSPSC 관리 누리집을 통해 상정합니다.

✳ 쉽게 이해하기

'복사기'로 검색해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복합기', 누구는 '인쇄기'로 올렸기 때문이죠. 이 혼란을 막으려고 모든 조달 물품에 표준 코드·표준 품명을 붙이는 것이 **목록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계약 목적물은 **상품명**이 아니라 **물품목록번호**로 식별하며, 세부품명번호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나라장터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번호	구성
물품분류번호	8자리(UNSPSC 대·중·소·세, 각 2자리)
세부품명번호	국내 2자리 추가 = 10자리(계약 기준)
물품식별번호	8자리(제조업체·모델, UNSPSC 무관)

🔑 **암기:** 근거는 '물품목록법'(1991 제정·1995 시행, 소관 조달청). 코드는 '분류 8 → 세부품명 10'. 목록화 원칙 「통·포·상·단(통일·포괄·상호배제·단순)」, 1물품 1식별번호.

⚠ **함정:** 근거를 '물품관리법'으로 바꿔 내는 함정이 있습니다(정답은 물품목록법). 유보코드는 '99'부터 역순, 세부품명은 '01'부터 차례, 품목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요약노트

한눈에 보는 핵심

✦ 한눈에 보는 핵심 (제3장)

- **개념**: 전자조달시스템 = 인터넷 기반 소싱·구매·지불 자동화 프로세스 집합. 우리나라 **KONEPS(나라장터)**는 2002년 개통, E2E 수준 모범사례
- **유형**: 전자적 소싱(e-Sourcing) / 전자적 구매(e-Purchasing) — 영국 UK OGC(2005) 분류
- **지출분석 4사분면**(Schapper): 기술적 · 전략적(비중 최대·e-Tendering) · 인수(전자카탈로그·P-Card) · 레버리지(전자경매·FA)
- **발전 5단계**: 종이→EDI·ERP→인터넷 커뮤니케이션→전용 플랫폼 보완→전용 플랫폼 대체(완전 통합). 구성=조달포털 +PMIS
- **표준기능 10개**: 전자조달계획·공급업체 위험평가·전자게시/알림·전자입찰·전자평가/낙찰·전자계약관리·전자구매·공급업체관리·경매 등 (국내 전자역경매 미채택)
- **도입 성과**: 투명성·책임성 / 효율성·속도 / 비용절감 / 공급업체관리 / 중소기업 참여촉진 / 데이터·보고
- **5대 연계 플랫폼**: 종합쇼핑몰(2006·MAS) · 혁신장터(2019·혁신) · 벤처나라(2016·창업/벤처) · 디지털서비스몰(2022·클라우드) · 이음장터(2022·소액 용역 직거래)
- **MAS 2단계경쟁**: 중기 간 경쟁제품 1억 원 ↑ / 일반 5천만 원 ↑ / 5억 원 ↑ 제안공고. 중기 경쟁제품 계약단가 10% 초과 인하 불가
- **이음장터 차별점**: 조달청 사전 계약·검증 없이 직거래. 거래 한도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상향 대상 5,500만 원)
- **목록정보**: 근거 「 **물품목록법** 」 (1991제정·1995시행, 소관 조달청). 물품목록번호=물품분류번호(8, UNSPSC)+물품식별번호(8). 국내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준. 세부품명번호 없으면 나라장터 계약 불가
- **목록화**: 일반원칙 통일성·포괄성·상호배제성·단순성. 1물품 1식별번호. 유보코드 '99' 역순, 세부품명 '01' 차례. 품목 삭제 원칙 불가(10년 미사용·중대흡결·중복 시 예외)

✅ 자가 진단

1. 전자조달시스템의 두 유형과 지출분석 4사분면을 설명할 수 있는가?
2. 전자조달 발전 5단계와 표준기능 10개를 말할 수 있는가?
3. 5대 연계 플랫폼의 도입 연도·목적·근거를 구별할 수 있는가?
4. MAS 2단계경쟁 적용 기준(금액)을 설명할 수 있는가?
5. 이음장터가 다른 플랫폼과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6. 물품목록번호 구성(분류번호·식별번호·세부품명번호)과 목록화 원칙을 설명할 수 있는가?

④ 예상문제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객관식 (10문항)

1.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터넷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으로 소싱·구매·지불을 자동화하는 전자적 프로세스 집합이다.
- ② 종이 기반 프로세스를 전자화해 비용 절감·효율성·가시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③ 우리나라 KONEPS(나라장터)는 2002년 개통 후 국제적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 ④ ‘조달’이 공공부문 구매활동과 정합성이 낮아 민간부문 전용 시스템으로만 인식된다.
- ⑤ 오늘날 주요국은 사실상 End-to-End(E2E) 수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용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④ 조달은 공공조달과 의미적 정합성이 높아 오히려 공공부문 시스템으로 인식된다.

전자조달의 대상인 ‘조달’은 공공부문 구매활동인 공공조달과 정합성이 높아, 민간보다 공공부문의 전자적 업무처리시스템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2005년 영국 조달청(UK OGC)이 범주화한 전자조달시스템의 두 유형은?

- ① 전자적 소싱(e-Sourcing) 시스템과 전자적 구매(e-Purchasing) 시스템
- ② 전자입찰 시스템과 전자지불 시스템
- ③ 중앙집중형과 분산형
- ④ 포털형과 PMIS형
- ⑤ EDI형과 인터넷형

정답 · 해설

✓ 정답 ① 전자적 소싱 시스템과 전자적 구매 시스템.

UK OGC(2005, 현 UK CCS)는 전자조달시스템을 공급자를 찾고 평가하는 전자적 소싱 시스템과, 구매·지불에 초점을 둔 전자적 구매 시스템의 2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했습니다.

3. Schapper의 지출분석 사분면 중 ‘높은 복잡성·위험과 높은 지출’을 수반하며, 비중이 가장 높아 전자입찰(e-Tendering) 중심 구축이 효과적인 유형은?

- ① 기술적(Technical)
- ② 전략적(Strategic)
- ③ 인수(Acquisition)
- ④ 레버리지(Leverage)
- ⑤ 인소싱(In-Sourcing)

정답 · 해설

✓ 정답 ② 전략적 지출 유형이다.

전략적 지출 유형은 높은 복잡성·위험과 대규모 지출을 수반하며, 공공조달 전반에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제안요청·공개경쟁입찰과 전자입찰(e-Tendering) 중심의 구축이 효과적입니다.

4. 전자조달시스템 발전 5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단계는 웹 기반 EDI를 활용하는 단계이다.
- ② 2단계는 종이 기반 오프라인 단계이다.
- ③ 5단계는 전통적 프로세스를 인터넷 전용 플랫폼으로 대체해 완전 통합하는 단계이다.
- ④ 4단계는 이메일만 활용하는 단계이다.
- ⑤ 발전 단계는 총 3단계로 구분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③ 5단계는 전용 플랫폼으로 대체·완전 통합하는 단계다.

1단계는 종이 기반 오프라인, 2단계는 메인프레임·PC·ERP·EDI, 3단계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4단계는 전용 플랫폼·도구로 보완, 5단계는 전통적 프로세스를 전용 플랫폼으로 대체해 완전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5.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저가 1인 낙찰의 다양성 부족·품질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한다.
- ③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선택·납품요구할 수 있다.
- ④ 대상 물품은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등이다.
- ⑤ 오직 1인의 최저가 공급자만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⑤ MAS는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제도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해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합니다. ⑤는 개선 대상이었던 기존 최저가 1인 낙찰 방식입니다.

6.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2단계경쟁 적용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5천만 원 이상, 일반제품은 1억 원 이상
- ②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1억 원 이상, 일반제품은 5천만 원 이상
- ③ 금액과 무관하게 항상 2단계경쟁을 시행한다.
- ④ 모든 제품이 3억 원 이상일 때만 시행한다.
- ⑤ 2단계경쟁은 폐지되었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중기 간 경쟁제품 1억 원 이상, 일반제품 5천만 원 이상.

MAS 2단계경쟁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금액 1억 원 이상, 일반제품은 5,0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합니다. 1회 납품요구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제안공고 후 5개사(2개사 가능) 이상을 지정해 제안경쟁을 실시합니다.

7. 나라장터 연계 지원플랫폼과 도입 배경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합쇼핑몰 — 2006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과 함께 구축
- ② 혁신장터 — 2019년 혁신 촉진(전략적 활용)을 위한 플랫폼
- ③ 벤처나라 — 2016년 창업·벤처기업 판로 개척 지원(조달사업법 § 25)
- ④ 디지털서비스몰 — 2022년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 활성화
- ⑤ 이음장터 — 조달청과 사전 계약·검증을 거친 대규모 공사 전용 플랫폼

정답 · 해설

✓ 정답 ⑤ 이음장터는 사전 계약·검증 없이 소액 용역을 직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이음장터(2022~)는 조달청과 별도의 사전 계약·검증 없이 수요기관과 공급기업이 소액 용역(서비스)을 직접 협상·거래하는 플랫폼입니다. 거래 한도도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상향 대상 5,500만 원)으로 소액에 한정됩니다.

8. 물품목록번호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물품분류번호 8자리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로 구성된다.
- ② 물품식별번호는 UNSPSC 표준을 그대로 따른다.
- ③ 국내는 물품분류번호를 6자리로 축소해 사용한다.
- ④ 세부품명번호는 12자리이다.
- ⑤ 물품분류번호는 제조업체·모델별로 부여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① 물품분류번호(8자리)+물품식별번호(8자리).

물품목록번호는 UNSPSC 기반의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물품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됩니다. 국내는 물품분류번호에 2자리를 추가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까지 관리합니다. 물품식별번호는 제조업체·모델별 고유번호로 UNSPSC 표준과 무관합니다.

9. 「물품목록법」과 물품목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품목록법」은 1991년 제정, 1995년 시행되었다.
- ② 물품의 목록화·물품목록제도 운영 소관 기관은 조달청이다.
- ③ 공공조달 계약의 목적물은 일반 상품명인 아닌 물품목록번호로 식별된다.
- ④ 하나의 물품에 복수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목록화 일반원칙은 통일성·포괄성·상호배제성·단순성이다.

정답 · 해설

✓ **정답 ④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품목록법」 제6조에 따라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물품이 2개 품명의 기능을 가져도 주된 기능의 품명을 지정해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합니다.

10. 목록정보시스템의 목록화·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UNSPSC에 분류가 없어 유보코드를 쓸 때는 '01'부터 순서대로 부여한다.
- ② 품목은 어떤 경우에도 삭제할 수 없다.
- ③ 같은 모델명이라도 원산지가 다르면 각각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
- ④ 상품이미지는 파일당 20MB까지, 최대 10개 등록할 수 있다.
- ⑤ 세부품명번호가 없어도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 **정답 ③ 같은 모델명이라도 원산지가 다르면 각각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

유보코드는 확장을 고려해 '99'부터 역순으로 부여하고, 세부품명번호는 '01'부터 차례로 부여합니다. 품목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10년 미사용·중대흠결·중복 시 삭제 가능합니다. 상품이미지는 파일당 2MB 이하, 최대 5개입니다. 세부품명번호가 없는 대상물은 원칙적으로 나라장터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OX (5문항)

11. 우리나라 나라장터의 전자조달시스템은 전자역경매 방식을 적극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X

국내 나라장터는 전자역경매의 운영 실효성이 낮아 이를 채택하지 않고, 봉인입찰(암호화된 전자입찰) 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2. 종합쇼핑몰에 등록 가능한 물품은 조달청이 체결한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및 용역이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종합쇼핑몰(2006년 구축)에는 조달청이 체결한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과 용역이 등록되며, 수요기관은 검색·장바구니 후 조달요청을 통해 구매합니다.

13. 혁신제품 전용몰은 직접 계약 기능을 제공하므로, 수요기관은 전용몰에서 곧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X

혁신제품 전용몰은 직접 계약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조달청에 조달요청하는 방법으로 구매하며, MAS·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에만 납품요구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4. 물품분류번호는 UNSPSC 기반의 8자리이며, 국내에서는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세부품명번호까지 관리한다. (○ / ✕)

정답 · 해설

정답: ○

물품분류번호는 대·중·소·세 4단계 각 2자리씩 총 8자리(UNSPSC 기반)이며, 국내는 2자리를 추가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까지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공공조달은 10자리 세부품명번호를 기준으로 입찰공고·계약을 진행합니다.

15. 이음장터의 거래 대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200만 원 이하 용역이며,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5,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 ✕)

정답 · 해설

정답: ○

이음장터는 부가세 제외 추정가격 2,000만 원(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 용역을 거래하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의 경우 부가세 포함 5,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PART 1 · 제4장

전략적 공공조달

① 학습목표 · 핵심키워드

PART 1 · 필기 제1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30문항)

제4장 「전략적 공공조달」은 공공조달을 **비용 지출을 통한 수요 충족**을 넘어 국가 정책·사회적 성과를 **지원·주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원리와 우리나라의 구체적 **우선구매제도**를 다룹니다. 전략적 활용의 4대 분야인 **중소기업지원·녹색·혁신·사회적가치(책임)** 조달을 별도배정(Set-aside)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학습합니다.

🎯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이 장을 학습한 후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과 별도배정(Set-aside)·우선구매제도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중소기업자 간 경쟁·직접생산확인·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설명할 수 있다.
- **녹색조달**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녹색제품 우선구매·생애주기비용(LCC)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 **혁신조달**(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 지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사회적가치 지원조달**(장애인·중증장애인·여성·사회적기업 우선구매)과 ESG를 설명할 수 있다.

🔑 핵심 키워드 (Keywords)

전략적 공공조달(SPP) · 별도배정(Set-aside)·우선구매제도 · 구매목표비율제도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 직접생산확인제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녹색공공조달(GPP)·녹색제품 우선구매 · 생애주기비용(LCC)·종합낙찰제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13종) · 우수조달물품 · 혁신제품(혁신시제품) · 사회적책임조달(SRPP) · 중증장애인생산물품 · ESG

■ 이 단원의 4단 구조

- ① 학습목표·핵심키워드 (이 화면)
- ② 본문 — 4-1 중소기업지원 조달 / 4-2 녹색조달 / 4-3 혁신·기술개발 촉진조달 / 4-4 사회적가치 지원 조달
- ③ 요약노트 — 한눈에 보는 핵심
- ④ 예상문제 —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4-1

중소기업지원 조달

💡 이 절의 핵심

우리나라 전략적 공공조달은 **우선구매(Set-aside) 방식**을 우선 적용하며, 그중 비중이 가장 큰 분야가 **중소기업지원 조달**입니다.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고, 지정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만 제한·지명경쟁으로 공급합니다.

4-1-① 중소기업과 공공구매제도 이해

📖 근거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 2 · 판로지원법 § 2 · § 5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3

중소기업은 2015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이면서 업종 구분 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됩니다. 2015년 개정으로 종전의 상시근로자 수·자본금·매출액 기준이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되었으며, 이들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3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2022년 기준 중소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99.9%(804.3만 개)**, 종사자 수는 전체의 **81.0%(1,895.6만 명)**이나,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44.2%**에 그쳐 대기업·중견기업과 경제적 격차가 큼니다. 이 격차를 정부의 구매력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의 목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를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로 통칭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일련의 제도를 총칭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는 이를 **12개 제도**로 제시하며,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유형	대표 제도
구매 (5)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계약 (4)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제도,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추천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금융 (2)	공공구매론,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
운영기반 (1)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제도의 실행·관리 기반은 **구매목표비율제도**(「판로지원법」 § 5)입니다. 공공기관은 기관별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매목표비율	근거법령
중소기업제품	총구매액[물품·용역(서비스)·공사]의 50% 이상	판로지원법 § 5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	판로지원법 § 13
여성기업제품	물품·용역(서비스) 각 구매총액의 5% , 공사는 3% 이상	여성기업법 § 9
장애인기업제품	총구매액의 1% 이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9의2
창업기업제품	총구매액의 8% 이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38

공급 자격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부여되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세부품명별 **직접생산확인서**를 받아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구매목표비율은 **법정 의무구매 비율**로, 대상 공공기관(2024년 기준 **863개**)은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구매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등으로 이행력이 관리됩니다. 2023년 말 기준 중소기업 공공구매액은 **127.3조 원**으로 전체 공공조달의 약 **77.4%**를 차지했습니다.

4-1-②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이해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 6· § 7· § 8· § 9 · 판로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용역(서비스)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법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국내에서 직접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일 것
- ②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수요가 **20억 원 이상**일 것
- ③ 세부품명 기준 직접생산 가능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구매 실적이 **10억 원 이상**일 것

최종 지정은 대기업·수입 유통업체의 시장 진출로 해당 중소기업의 판로가 위축된 사실을 확인한 후 **산업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경쟁제품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의 **지정 유효기간은 모두 3년**이며, 만료 전 심사를 통해 유지·제외·신규 지정을 결정합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제품별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기업·외산제품 공급을 차단해 제도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기업이나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공장·시설·인력·공정**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가 필수이며, 준비 완료 후 최소 1주 최대 2주가 소요됩니다.

88 계약 이행능력심사제도 — 최저가 배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낙찰 하한율 88%**로 일정 납품가격을 보장합니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부터 심사해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는 납품이행능력·입찰가격·신인도·결격사유로 구성됩니다. 일반 물품구매적격심사(고시금액 미만 낙찰하한율 84.245%) 대비 계약이행능력심사(87.995%)는 최소 대가보장 수준이 **약 3.75%p 높아** 적정 대가를 보장합니다. 고시금액 (2.2억 원) 미만 입찰에서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7년 이내)에는 신용평가등급에 관계없이 만점을 부여합니다.

단독 참여가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은 **적격조합확인제도**로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조합원 1/2 이상이 직접생산 중소기업 등 요건 충족), 소기업·소상공인은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경쟁제품에 대해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1-③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해

☞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 12(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 건설산업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소요 자재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한 뒤, 공사 낙찰기업에 지급·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과도한 가격 인하 요구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해 경영안정을 지원합니다.

구분	적용 대상 범위
기본 요건	공공기관 구매액 10억 원 이상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종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상 40억 원 이상 인 공사
전문공사	전문건설공사·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3억 원 이상 인 공사
대상 품목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000만 원 이상 인 경우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며, 대상 물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구매 적용이 **예외**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3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접구매로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
-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해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도서·벽지 등 특수현장, 원자재 가격 파동에 따른 수급 곤란, 품질 확보 곤란, 공사비용의 현저한 증가 등)

✿ 쉽게 이해하기

정부가 매년 200조 원이 넘는 구매력으로 '가성비'만 따진다면 규모의 경제를 가진 대기업이 입찰을 싹쓸이합니다. 그래서 **판로지원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중소기업 몫을 미리 떼어 둡니다. '중소기업만 뛰는 운동장(중기간 경쟁제품)'에서 '진짜 자기가 만드는 기업(직접생산확인)'만 뛰게 하는 구조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암기: 구매목표비율 '오(50) 일오(15) 오삼(5·3) 일(1) 팔(8)'** — 중소 50%, 기술개발 15%, 여성 물품·용역 5% (공사 3%), 장애인 1%, 창업 8%.

기준	숫자
경쟁제품 지정(생산기업 / 수요)	20개 이상 / 20억 이상
직접생산확인 필요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하한율	88%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종합 / 전문 / 품목)	40억 / 3억 / 4,000만 원 이상

⚠️ **함정: 최저가로 무조건 낙찰이 아닙니다.** 중기간 경쟁입찰은 최저가를 배제하고 **낙찰하한율 88%·종합평점 88점** 이상으로 적정 대가를 보장합니다. 또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어도 경쟁제품은 **직접생산확인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4-2

녹색조달

이 절의 핵심

녹색공공조달(GPP)은 공공부문의 구매력으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물품·용역(서비스)·공사를 조달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적 활용 방안입니다. 국내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가 핵심이며, 고도화 방식으로 생애주기비용(LCC)을 반영한 **종합낙찰제**가 있습니다.

4-2-① 공공조달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개요

📖 근거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구매법) § 6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공공조달의 잠재력은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지구정상회의)**에서 처음 강조되었고, **제21차 당사국총회(COP 21)**와 **파리협정**을 거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선택과 조달 프로세스의 무결성·비용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수 원칙이 되었습니다. 다만 **비용 대비 가치**가 기본 목표라는 점에서, 탄소 배출 감축 등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더라도 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내 녹색공공조달은 **2005년 7월** 공표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며, 환경부의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88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행됩니다. 공공기관의 약 **86%**가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을 통해 녹색제품을 구매하며, 조달청은 최소녹색기준제품·**종합낙찰제** 등을 함께 운영합니다.

양적 성장의 한계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2020년이 2015년 대비 약 **76%** 성장했으나, 전체 공공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2% 내외**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녹색제품의 한정된 종류와 공공수요의 한계**로, 이는 기존의 탄소배출·환경오염물질 저감, 자원 재활용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4-2-②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해

📖 근거법령 · 녹색구매법 § 2의2 · § 6 · § 7 · § 8 · § 9 · § 10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66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17 · § 18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는 「녹색구매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도를 총칭합니다. 「녹색구매법」의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	내용
§ 6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 7	환경부 장관은 매년 녹색제품 구매지침 을 수립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
§ 8·§ 9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이행계획 을 수립·공표하고 구매실적을 집계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 10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 사용 근거 를 마련하는 등 구매촉진 조치를 의무 시행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은 「녹색구매법」 제2조의2에 따라 **환경표지·저탄소·우수재활용** 제품 3종입니다.

구분	내용 · 근거	인증기관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17에 따라 같은 용도 제품 대비 환경성을 개선 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제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의 환경성 고려, KS 등 품질기준 충족)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저탄소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18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탄소발자국이 최대허용탄소 배출량 이하)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수재활용제품 (GR)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33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인증한, 폐자원을 재활용 해 제조한 품질 우수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세부품목에 녹색제품이 있거나 대체 가능한 녹색제품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각급 학교,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지방의료원, 지자체 출연연구원, 사립학교기관·특수법인 등입니다.

4-2-③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 이해

 근거법령 · 녹색구매법 · 조달사업법(조달청 종합낙찰제 운영)

녹색제품 우선구매가 **제3자 인증 기반** 구매인 데 비해, 보다 고도화된 방식은 물품의 생애주기(원재료 → 생산 → 사용 → 폐기) 전반의 환경적 영향을 **비용으로 환산**해 입찰가격과 통합 평가하는 것입니다. 국내는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관점에서 **전과정평가(LCA)** 개념을 적용하며, 대표 제도가 조달청이 **2010년부터** 운영하는 **종합낙찰제**입니다.

종합낙찰제는 에너지 사용 절감·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적 우월성을 **LCC 관점에서 평가**해 입찰가격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입찰 시점의 가격·품질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녹색·환경적 가치가 우월한 물품**이 낙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기준과의 부합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시험포인트 — 종합낙찰제의 낮은 활용도

2020년 기준 약 **36만 건**의 물품 총액입찰 중 종합낙찰제 적용은 단 **94건(0.03%)**에 불과합니다. 이는 적용 대상 제품이 **10개 품명으로 제한**된 데 일부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잡·전문적인 LCC 평가**에 따른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국가 LCI DB(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가 일부 재료·에너지원에만 구축되어 있어, 사용단계 중심의 **간편·부분적 전과정평가** 적용이 요구됩니다.

✿ 쉽게 이해하기

'녹색제품을 사라'는 한 줄은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니라 **시장 설계**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제품을 사주면 기업이 만들 동기가 생기고 시장 전체가 녹색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살 때 값이 아니라 전기세·수리비·폐기비까지 합친 **생애주기비용(LCC)**으로 따지는 것이 종합낙찰제입니다. 싼 형광등보다 비싼 LED가 결국 이득인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 **암기: 녹색제품은 '3종' — 환·저·재** = 환경표지·저탄소·우수재활용(GR). '환경마크 하나만 녹색제품'은 오답입니다.

구분	핵심 숫자
녹색구매법 시행	2005년 7월(§ 6 의무구매)
종합낙찰제 운영	조달청 2010년~
종합낙찰제 적용 비율	약 36만 건 중 94건(0.03%)

⚠ **함정: 종합낙찰제는 좋는데 거의 안 쓰입니다.** 대상 품명 10개 제한과 복잡한 LCC 평가 부담으로 활용도가 **0.03%**에 불과하다는 점이 시험에 나옵니다. 양적 성장(비중은 연 2% 내외 정체)의 한계와 질적 전환 필요성도 함께 기억하세요.

4-3

혁신·기술개발 촉진조달

이 절의 핵심

혁신조달은 정부·지자체가 혁신적 제품·용역(서비스)을 수용해 초기 시장 형성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전략적 활용 방안입니다. 핵심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13종)이며, 대표 제도로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와 2019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있습니다.

4-3-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해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 13·시행령 § 12· § 13 · 국가계약법 시행령 § 26 · 지방계약법 시행령 § 25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해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안정적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우선구매 판로지원 대상 성능인증제품은 총 13종이 존재합니다.

구분	대표 기술개발제품 13종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수요처지정형 기술개발제품(구매조건부·민관공동투자·성과공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수조달 공동상표,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혁신시제품 등)
산업통상자원부	NEP(신제품인증), NET(신기술인증), 산업융합품목·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녹색기술제품
부처별 NET·기타	GS인증(과기정통부), 물산업 우수제품(환경부), 재난안전제품인증(행정안전부) 등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적용 대상으로, 공공기관은 연간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목표비율은 2006년 5% 권고에서 2009년 10%, 2020년 15% 이상 의무로 개정되어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다른 제도와 달리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를 요청하면, 지방청이 기업을 대신해 수요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급실적은 2018년 4.52조 원에서 2023년 6.95조 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4-3-②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이해

근거법령 · 조달사업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1996년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유효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제품의 통합적 우선구매 형태로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누적 6,080개 제품이 지정되었고, 공급실적은 최근 5년 연평균 약 3.9조 원, 2023년에는 약 4.8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2017년 OECD는 공공조달을 활용한 혁신 촉진의 대표 사례로 캐나다 BCIP·영국 SBRI와 함께 우리나라의 우수조달물품(EGSP) 지정제도를 소개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은 중소기업이나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반영된 제품을 지정합니다. 적용기술 종류에 따라 품질소명자료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적용기술	품질소명자료
신제품(NEP) 또는 NEP 포함 제품	제출 생략 가능
신기술(NET) 적용 제품	품질소명자료 제출 대상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국내 특허에 한함)	품질소명자료 제출 대상
저작권 등록 GS인증제품(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 성공제품, 혁신제품	제출 생략 가능

품질소명자료로는 성능인증·GR인증·GS인증·환경마크·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K마크·품질보증조달물품·신뢰성인증 등이 활용됩니다.

4-3-③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이해

☞ 근거법령 · 조달사업법 § 27(구매책임자 면책) · 국가계약법 시행령 § 26 · 지방계약법 시행령 § 25

혁신제품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일환으로,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해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향후 대규모 공급 역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3종 중 가장 최근인 **2019년** 도입되었으며, 당초 3개 유형(FT1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FT2 혁신시제품·FT3 혁신성공공성 인정) 에서 2025년 현재 **유형 1**(국가 우수연구개발·기술인정 혁신제품, 기존 FT1+FT3)과 **유형 2**(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기존 FT2)의 2개 유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지정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 주관 R&D 사업 결과물 ② 상용화 이전 시제품 ③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 인정
지정 절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유형 2는 조달청 주관으로 TRL 7(기술성숙도 7단계) 상용화 직전 제품을 혁신성 평가 후 지정
구매 방법	‘ 혁신장터 ’(혁신조달플랫폼) 전용몰에서 직접 구매, 지정 후 3년간 수의계약 가능
구매책임자 면책	혁신제품 구매로 손실이 발생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 면제 (조달사업법 § 27)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존 제3자 인증 기반 조달이 실적·가격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증되지 않은 시제품**의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조달청이 자체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우선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테스트하고, **실증이 성공판정**을 받으면 대규모 후속 구매로 연계 지원합니다. 혁신시제품은 **공급자 제안형**(조달기업 주도)과 **수요자 제안형**(수요기관 요청) 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시범구매 대상은 핵심기술이 **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솔루션으로 시범사용 기간(최대 1년) 내 성능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정기간은 일반 혁신제품과 동일하게 **지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 쉽게 이해하기

정부가 검증된 제품만 사면 신생 기업은 죽고 기술 발전이 멈춥니다. 그래서 '개발은 했지만 아직 시장이 없는 제품'을 정부가 **먼저 사주는** 3제도가 있습니다. 셋은 비슷해 보여도 '누가 지정하느냐'로 갑니다. 기술개발제품(13종)은 판을 넓히는 큰 우산,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이 꼭 집는 간판, 혁신제품은 아직 안 팔린 새싹을 실증해 키우는 제도입니다.

🔑 **암기: 지정 주체로 구분** — 우수조달물품 = 조달청(1996), 혁신제품 = 조달정책심의위 심의(2019).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목표는 물품구매액의 **15%**.

제도	핵심 포인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3종, 물품구매액 15% 이상(2021~)
우수조달물품	조달청 지정(1996), 중소·초기중견
혁신제품	유형1·2, 혁신장터, 지정 후 3년 수익계약

⚠️ **합정: 인증 주관 부처는 부처마다 다릅니다.** 성능인증(EPC)=중기부, 우수조달물품=조달청, NEP·NET=산업부처럼 갑니다. 또 혁신제품은 손실이 나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구매책임자 면책**(조달사업법 § 27)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4-4

사회적가치 지원 조달

이 절의 핵심

사회적책임조달(SRPP)은 공공조달 절차·기준에 **사회적 고려 요인**을 통합해 긍정적 사회 성과를 달성하는 전략적 활용 방안입니다. 국내에서는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여성기업·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로 구체화되며,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와 연계되고 있습니다.

4-4-① 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도 이해

☞ 근거법령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2· § 9의2·시행령 § 7의2 · 국가계약법 시행령 § 26· § 30 · 지방계약법 시행령 § 25· § 30

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따라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서비스)]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 (소기업 제외)한 기업이며, 장애인기업 제품은 이들이 직접 생산·제공·수행하는 물품·용역(서비스)·공사입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과 계약할 때 **1억 원 이하**는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하며(단,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는 **2인 이상 견적서 필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가산점 1점**,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0.5~1.5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경쟁열위를 보완합니다.

4-4-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이해

☞ 근거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 3· § 6· § 7· § 9· § 12· § 20 · 장애인복지법 § 58· § 6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제품·용역(서비스)을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2025년부터 상향 조정) 의무구매하도록 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을 근거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모든 생산품·용역(서비스) 구매 시 우선구매 의무를 집니다.

구분	내용
생산시설	「장애인복지법」 § 58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장애인보호작업장), § 63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복지법상 재활훈련시설
구매 방법	일반 구매(판매시설·생산시설), 조달청 구매(전자조달시스템), 간접 구매(계약 일반업체를 통한 구매도 포함), 수의계약 구매(업무수행기관 대행)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판로지원법·여성기업법·장애인고용촉진법의 관련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 (§ 20)

우선구매 대상 제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브랜드 ‘**꿈드래**’가 사용됩니다.

4-4-③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 이해

☞ 근거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 9 · § 20의2 · 시행령 § 7 · 판로지원법 § 2 · § 5 · § 9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구매목표비율을 적용하는 **법정의무구매** 제도입니다. 「여성기업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다음 비율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구분	구매목표비율
물품·용역(서비스)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

여성기업은 **여성기업확인서**를 제출해 우선구매를 적용받으나,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았더라도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조달할 때는 여성기업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직접생산 이행 의무**가 부과되어, 반드시 경쟁제품별 **직접생산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실적을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4-④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해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7 · § 8 · § 12 · 시행령 § 12의2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2012년부터** 공공조달 부문에서 실적·계획 관리체계가 시행되며 본격화되었고, **2015년에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품·용역(서비스) 구매 시 사회적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재화·용역(서비스)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없는 제도

2025년 현재 사회적기업제품에는 **법적인 의무구매목표 비율이 없습니다**. 대신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획재정부)·지자체 합동평가(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경영평가(행정안전부) 등 **평가지표에 반영**해 이행력을 제고합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인증 사회적기업은 2024년 10월 말 기준 **3,762개**입니다. 인증 이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은 법령상 우선구매 대상은 아니나 자치단체 합동평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구매실적을 인정합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대상과 동일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 기관이며, 이들은 2월 말일까지 구매실적·구매계획을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에 등록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종합해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합니다.

4-4-⑤ 공공조달과 사회적가치 및 이에스지(ESG)

☞ 근거법령(참고) · UN 책임투자원칙(PRI)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RBC)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포함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핵심 요소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관리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2005년** UNEPFI가 개념을 구체화했고, **2006년** UN

책임투자원칙(PRI)에서 E·S·G를 비재무적 성과의 핵심 요인으로 정의·활용했습니다. CSR·CSV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출발한 것과 달리, ESG는 **기업과 투자자의 관계**에서 출발해 투자 유치에 필요한 비재무적 요소의 관리·평가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SG 요소	대표 가치	전략적 공공조달 연계
E (환경)	온실가스 감축·자원절약·친환경 저탄소 제품 사용	녹색공공조달(GPP)·지속가능한 공공조달(SPP)
S (사회)	인권존중·양극화 해소·공정하고 안전한 사회·차별금지	사회적책임조달(SRPP)
G (지배구조)	법·윤리 규범 준수·투명하고 민주적인 기업 운영	기업책임경영(RBC)

전략적 공공조달의 실행 우선순위가 국가별로 다르듯 ESG 실행의 중점 분야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E(환경)에 중점을 두고 부처별 기준으로 녹색조달(Buy Green Products)을 시행하며, **영국**은 S(사회) 측면에서 **사회적가치법**을 제정하고 사회적기업 중심의 사회적책임조달을 추진합니다. **EU**는 E(환경)와 ESG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조달(SPP)**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쉽게 이해하기

사회적가치조달은 취약계층·사회적기업을 지원해 '포용적 경제'를 실현하는 조달입니다. 핵심은 5대 우선구매의 **비율**과 **의무/촉진** 구분입니다. 뒤에 붙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이 정책들을 묶는 큰 틀로, 나라마다 중점이 달라 미국은 E, 영국은 S(사회적가치법), EU는 SPP를 강조한다고 보면 됩니다.

🔑 **암기: '장일(1) 중일일(1.1) 여오삼(5·3) 사없(없음)'** — 장애인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물 1.1%(2025~), 여성기업 물품·용역 5%·공사 3%, 사회적기업 **법정비율 없음**. 중증장애인 브랜드는 '꿈드래'.

제도	비율 / 특징
장애인기업	1% 이상(장애인 30% 이상 고용)
중증장애인생산물	1.1% 이상, 다른 우선구매법에 우선 적용
여성기업	물품·용역 5% / 공사 3%
사회적기업	법정비율 없음, 평가지표 반영(고용노동부)

⚠ **함정: 두 개가 매번 헛갈립니다.** 사회적기업을 '5% 의무'로 내면 오답(법정비율 없음이 정답), 여성기업을 '5% 단일'로 내면 오답(5%+공사 3% 차등이 정답). 중증장애인 1.1%는 2025년부터라는 점도 주의하세요.

③ 요약노트

한눈에 보는 핵심

📌 한눈에 보는 핵심 (제4장)

- **전략적 공공조달(SPP)**: 구매력을 경제 목적 외 사회·정치 목적에 활용 → **중소기업·녹색·혁신·사회적책임** 4대 분야.
이행수단은 **별도배정(Set-aside)·우선구매**(미국 set-aside, EU reserved contract, 한국 preferential purchasing)
- **중소기업 공공구매**: 총구매액 **50% 이상** 의무. 구매목표비율(기술개발 15%·여성 5%(공사 3%)·장애인 1%·창업 8%).
대상 기관 **863개**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한·지명경쟁, 지정요건(생산 20개·수요 20억·세부품명 10개·10억), 지정 유효 **3년** /
직접생산확인(경쟁입찰·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하한율 88%**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종합공사 40억·전문공사 3억, 품목 4,000만 원 이상 / 재난·국방·협약 시 예외
- **녹색조달**: 녹색구매법(2005) 기반 **녹색제품 의무구매**(환경표지·저탄소·우수재활용) / 고도화=**LCC·종합낙찰제**(조달청 2010~, 활용도 0.03%로 저조)
- **혁신조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3종**(물품구매액 15%) / **우수조달물품**(1996, 통합 우선구매) / **혁신제품**(2019, 유형1·2, 조달정책심의위 지정, 혁신장터·3년 수의계약, 구매책임자 면책)
- **사회적가치조달(SRPP)**: 장애인기업 **1%**(30% 이상 고용)·중증장애인생산물 **1.1%**(꿈드래)·여성기업 물품/용역 **5%**·
공사 **3%** / 사회적기업 **법정비율 없음**(평가지표 반영, 고용노동부 소관)
- **ESG**: E=GPP·SPP, S=SRPP, G=RBC. 미국 E중점·영국 S(사회적가치법)·EU SPP

✅ 자가 진단

1. 전략적 공공조달 4대 분야와 별도배정·우선구매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가?
2. 중소기업 구매목표비율(50%·15%·5%/3%·1%·8%)을 근거법령과 함께 말할 수 있는가?
3.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요건·직접생산확인·계약이행능력심사(88%)를 설명할 수 있는가?
4. 녹색제품 3종과 종합낙찰제(LCC)의 의미·한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5. 기술개발제품 13종·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유형·면책)을 구분할 수 있는가?
6. 장애인·중증장애인·여성·사회적기업 우선구매의 비율과 특징, ESG 연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④ 예상문제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객관식 (10문항)

1. 별도배정(Set-aside)·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캐나다는 별도배정(Set-aside)이라 부른다.
- ② EU는 유보된 계약(Reserved contract)이라 부른다.
- ③ 우리나라는 우선구매(Preferential Purchasing)라 부른다.
- ④ 지원 대상에 구매 규모를 보장하거나 평가에서 우대하는 제도이다.
- ⑤ 우리나라 전략적 활용 4대 분야는 중소기업·녹색·혁신·국방 조달이다.

정답 · 해설

✓ 정답 ⑤ 4대 분야는 중소기업지원·녹색·혁신·사회적책임(사회적가치)이다.

국내 전략적 공공조달의 대표적 4개 부문은 중소기업지원, 녹색조달, 혁신조달, 사회적책임조달입니다. 국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배정은 국가별로 명칭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유사한 제도입니다.

2.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의 구매목표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소기업제품 — 총구매액의 50% 이상
- ②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
- ③ 여성기업제품 — 물품·용역(서비스) 각 구매총액의 5%, 공사 3% 이상
- ④ 장애인기업제품 — 총구매액의 5% 이상
- ⑤ 창업기업제품 — 총구매액의 8% 이상

정답 · 해설

✓ 정답 ④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의 1% 이상이다.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은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제9조의2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입니다. 5%는 여성기업(물품·용역)의 비율입니다.

3.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의 기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내에서 직접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일 것
- ②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수요가 20억 원 이상일 것
- ③ 세부품명 기준 직접생산 가능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일 것
- ④ 세부품명 기준 구매 실적이 10억 원 이상일 것
- 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5개 이상 존재할 것

정답 · 해설**✓ 정답 ⑤ 대기업 존재 요건은 없다.**

지정 요건은 직접 생산·납품 중소기업 20개 이상, 연간 구매 수요 20억 원 이상, 세부품명 기준 직접생산 가능 중소기업 10개 이상·구매 실적 10억 원 이상입니다. 오히려 대기업·수입 유통업체의 진출로 중소기업 판로가 위축된 사실을 확인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정됩니다.

4. 직접생산확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모든 일반 물품 구매에 반드시 요구된다.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 요구된다.
- ④ 서류심사만으로 발급되며 현장조사는 없다.
- ⑤ 지정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다.

정답 · 해설**✓ 정답 ③ 경쟁입찰 참여 또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 제품별 직접생산확인증명이 필요하다.**

직접생산확인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적용되며, 대기업·외산 제품 공급을 차단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기업은 신청할 수 없고, 공장·시설·인력·공정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가 필수입니다.

5.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직접구매로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공사
- ③ 공공기관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해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도서·벽지 등 특수한 공사현장으로 자재 수급이 곤란한 경우
- ⑤ 공사 낙찰기업이 자재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정답 · 해설

✓ 정답 ⑤ 오히려 그런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를 예방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사 수주기업이 자재 생산 중소기업에 과도한 가격 인하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재난 관련 시급 발주, 국방·안보 저해 우려, 협의로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특수현장·수급 곤란·품질 확보 곤란·비용의 현저한 증가 등)입니다.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상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 3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환경표지제품
- ② 저탄소제품
- ③ 우수재활용제품(GR)
- ④ 우수조달물품
- ⑤ (모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④ 우수조달물품은 녹색제품이 아니라 혁신(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관련 제도이다.

「녹색구매법」 제2조의2에 따른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은 환경표지·저탄소·우수재활용 제품 3종입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로 녹색제품과 구분됩니다.

7. 조달청의 종합낙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애주기비용(LCC) 관점에서 환경적 우월성을 평가한다.
- ② 환경적 가치를 입찰가격에 합산하는 방식이다.
- ③ 가격·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환경적 가치가 우월하면 낙찰될 수 있다.
- ④ 2010년부터 운영되었으며 활용도가 매우 높다.
- ⑤ 국제적 기준과의 부합성이 높은 제도이다.

정답 · 해설

✓ 정답 ④ 종합낙찰제의 활용도는 매우 낮다.

종합낙찰제는 2010년부터 운영되었으나, 2020년 기준 약 36만 건의 물품 총액입찰 중 적용은 단 94건 (0.03%)에 불과합니다. 적용 대상 제품이 10개 품명으로 제한되고, 복잡·전문적인 LCC 평가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8.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총 5종이다.
- ②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 ③ 구매목표비율은 도입 시부터 지금까지 15%로 동일하다.
-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우선구매 요청에 관여하지 않는다.
- ⑤ 대기업만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13종입니다. 구매목표비율은 2006년 5% 권고 → 2009년 10% → 2020년 15% 이상 의무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술개발제품 보유 중소기업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요청하면 지방청이 대신 수요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합니다.

9.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19년 도입되었으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일환이다.
-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 ③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 책임자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손실 책임이 면제된다.
- ⑤ 반드시 최저가 낙찰제로만 구매해야 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⑤ 혁신제품은 '혁신장터'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혁신제품은 혁신조달플랫폼 '혁신장터'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지정 후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 26, 지방계약법 시행령 § 25). 구매책임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실 책임이 면제됩니다(조달사업법 § 27).

10. 사회적가치 지원 조달(사회적책임조달)의 제도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애인기업 — 구매총액의 1% 이상 우선구매
- ② 중증장애인생산물 — 총구매액의 1.1% 이상 우선구매(2025년 상향)
- ③ 여성기업 — 물품·용역(서비스) 각 5%, 공사 3% 이상 우선구매
- ④ 사회적기업 — 법정 의무구매목표 비율 20% 이상
- ⑤ ESG의 S(사회)는 사회적책임조달(SRPP)로 구현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④ 사회적기업제품에는 법정 의무구매목표 비율이 없다.

2025년 현재 사회적기업제품에는 법적 의무구매목표 비율이 없으며, 대신 공공기관 경영평가·지자체 합동평가 등 평가지표에 구매실적을 반영해 이행력을 제고합니다.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OX (5문항)

11. 우리나라의 전략적 공공조달은 별도배정(Set-aside) 방식의 우선구매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있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선구매를 통한 할당(Set-aside)제도를 우선 적용하며, 이 때문에 구매목표비율의 설정·관리가 제도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12.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X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은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를 적용합니다. 낙찰하한율 88%로 일정 납품가격을 보장하며,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3.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근거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2005년 7월 공표된 「녹색구매법」 제6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실행됩니다.

14.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는 관련 규정이 판로지원법·여성기업법·장애인고용촉진법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 ✕)

정답 · 해설

정답: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와 관련해서는 판로지원법 (§ 5 구매계획, § 17 우선구매)·여성기업법·장애인고용촉진법 (§ 22의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물)의 관련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5. ESG의 E(환경)는 녹색공공조달(GPP)·지속가능한 공공조달(SPP)로, S(사회)는 사회적책임조달(SRPP)로, G(지배구조)는 기업책임경영(RBC)으로 각각 공공조달에서 구현된다. (○ / ✕)

정답 · 해설

정답: ○

전략적 공공조달의 각 분야는 ESG 요소를 반영합니다. E는 GPP·SPP, S는 SRPP, G는 사회적책임조달의 구체적 실행 분야인 RBC를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PART 1 · 제5장

공공조달법률 이해

① 학습목표 · 핵심키워드

PART 1 · 필기 제1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30문항)

제5장 「공공조달법률 이해」는 공공조달을 **실행·관리하는 법적 토대**를 다루는 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조달을 「공공계약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형식으로 운영하며, 이 계약법은 **사법(私法)인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① 민법의 계약 규정(해제·해지·도급·위임·화해) → ② 공공계약(국가·지방) 법령 → ③ 조달사업법 → ④ 전자조달법 → 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순으로, 실무·시험에 직결되는 조문과 수치를 익힙니다.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이 장을 학습한 후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민법과 공공계약법의 계약 관련 규정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해지, 도급·위임, 화해**에 관한 민법 규정을 공공계약과 연계해 설명할 수 있다.
- 「공공계약법」의 **계약방법·입찰·낙찰·이행·이의신청** 주요 규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조달사업법」의 정책기반·계약체결 요청·대금지급·공정성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전자조달법」의 전자공고·전자입찰·전자공개수의계약·하도급 전자처리를 설명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위탁·수의계약·의견청취·이의신청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 (Keywords)

공공계약법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조달사업법 · 전자조달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특별법 · 계약자유(사적자치)의 원칙 · 청렴계약 · 추정가격 · 예정가격 · 해제·해지 · 도급·위임 · 화해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제3자단가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입찰서 · 전자견적서 · 하도급지킴이

 이 단원의 4단 구조

- ① 학습목표·핵심키워드 (이 화면)
- ② 본문 — 5-1 민법 규정 / 5-2 공공계약(국가·지방) / 5-3 조달사업법 / 5-4 전자조달법 / 5-5 공기업·준정부기관 (법조문→해설→도식→사례)
- ③ 요약노트 — 한눈에 보는 핵심
- ④ 예상문제 —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5-1

공공계약 관련 민법 규정의 이해

이 절의 핵심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국가·지자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하게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자유(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도급·위임, 화해에 관한 민법 규정이 원용·준용됩니다. 공공계약은 대체로 **전형계약·쌍무계약·유상계약·낙성계약**이며 대표는 **도급계약**입니다.

5-1-① 공공계약과 민법 개요

☞ 근거법령 · 민법(계약자유·사적자치) · 국가계약법 § 3(다른 법률과의 관계) · 헌법 § 10 · § 37①

「민법」은 사인(私人)·사법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며,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은 공공부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입니다. 국가계약법 제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므로 **국가계약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3나54627). 다만 다른 **공법을 근거로 체결한 공법상 계약**(예: 국가연구개발협약)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125).

계약자유 원칙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각자의 자유에 맡겨진다”는 원칙이며, 동일한 개념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98409). 우리 「헌법」은 이를 명문화하지 않았으나 제10조(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와 제37조제1항(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보장)에서 사적자치가 보장됩니다. 민법의 계약 규정 중 **제1관 계약의 성립, 제2관 계약의 효력, 제3관 계약의 해지·해제와 도급·위임** 규정의 이해가 공공계약 이해에 필수적입니다.

구분	내용
계약속성 (전형/비전형)	전형계약 : 민법이 규정한 15종(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 도급 ·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통기금· 화해 ·여행) / 그 외는 비전형계약. 공공계약은 전형계약(대표: 도급)
의무부담 (쌍무/편무)	쌍무계약 :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급부(매매·교환·임대차). 동시이행항변권(§ 536)·위험부담(§ 537) 문제 발생 / 편무계약 : 일방만 급부(증여). 낙찰은 본계약 전 편무예약 성격
대가지급 (유상/무상)	유상계약 : 쌍방이 대가적 출손(매매·임대차), 매매 규정 준용(§ 567) / 무상계약 : 일방만 출손(증여, 무상양여)
성립요건 (낙성/요물)	낙성계약 : 합의만으로 성립(현상광고 제외 전형계약) / 요물계약 : 합의 외 물건 인도·급부 필요(계약금·보증금 계약)

국가계약 등 공공계약은 계약속성상 **전형계약·쌍무계약·유상계약·낙성계약**의 성격이 주로 적용됩니다. 다만 낙찰 자체는 본계약 체결 절차가 남은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다41603).

5-1-② 계약의 효력 관련 규정

☞ 근거법령 · 민법 § 527~§ 542 · 국가계약법 § 28 · 조달사업법 § 12 · § 13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청약은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약의 유인(입찰공고 등)과 구별됩니다. 민법상 계약의 성립·효력에 관한 규정이 공공계약의 **입찰공고→입찰→개찰→낙찰→계약** 절차에 그대로 연계됩니다.

민법 조문	내용 · 공공계약 연계
§ 527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함 → 낙찰자로 선정되어 청약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하지 못하는 근거
§ 528 승낙기간 정한 청약	기간 내 승낙 통지 못 받으면 효력 상실 → 낙찰자가 승낙기간 내 승낙 않으면 효력 상실 (국가계약법 § 28 수의계약 근거)
§ 531 격지자 간 성립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발신주의)
§ 534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변경을 붙인 승낙은 청약 거절+새 청약 → 협상에 의한 계약 의 기술·가격 협상에 적용
§ 536 동시이행의 항변권 / § 537 채무자위험부담	쌍무계약에서 발생 → 공공계약의 대가 지급·이행 관계에 적용
§ 539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 → 조달사업법 § 1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 13 다수공급자계약 의 원리

「조달사업법」 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조달청장이 미리 단가만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 수요기관이 활용하는 계약이며, 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를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상대방은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차액을 감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13②·③).

5-1-③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

🔗 근거법령 · 민법 § 543~§ 553 · 국가계약법 § 12③ · 국가계약법 시행령 § 75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해지**는 해지 이전은 유효로 두되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조치입니다(§ 550). 해제·해지권은 **약정**(당사자 특약)과 **법정**으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 근거
법정해제 — 이행지체	상당한 기간 정해 최고 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544).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 표시 시 최고 불요
법정해제 — 정기행위	일정 시일·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 불가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 545)
법정해제 — 이행불능	채무자의 귀책사유 로 이행불능이 된 때 해제(§ 546). 매수인 귀책이면 해제 불가(대법원 2000다50497)
부수적 채무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 불이행만 해제 사유.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해제 불가(대법원 2005다53705)
불가분성 (§ 547)	당사자가 다수인다면 전원으로부터·전원에 대하여. 1인에 대해 소멸하면 전원에 대해 소멸
해제권 소멸	최고 후 기간 내 해제 통지 없으면 소멸(§ 552), 고의·과실로 목적물 훼손·변경 시 소멸(§ 553)

공공계약에서는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는 이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이 있고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미이행 부분의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 75②).

5-1-④ 도급·위임에 관한 규정

📖 근거법령 · 민법 § 664~§ 674(도급) · 민법 § 680~§ 692(위임) · 국가계약법 § 17

도급은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며(§ 664), **위임**은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입니다(§ 680). 물품제조·용역·공사계약은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적·형식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구분	도급	위임	공공조달 용역계약
목적	일정한 일의 완성	특정 행위(업무)의 수행	일의 완성
보수지급	일이 완성되어야 지급	업무수행 여부에 따라 지급 가능	일이 완성되어야 지급
해지 가능성	특정 사유 없이 해지 불가	언제든지 해지 가능(§ 689)	법적 요건 사유 없이 해지 불가
책임 소재	수급인이 결과에 대해 부담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 681)	수급인이 결과에 책임
적용 법률	민법 § 664~§ 673	민법 § 680~§ 692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도급의 담보책임은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 내** 행사가 원칙이나(§ 670), 토지·건물·공작물의 수급인은 인도 후 **5년**(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은 **10년**) 담보책임을 집니다(§ 671).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17조는 공사 도급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민법 제671조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689), 공공계약 용역계약은 형식상 도급이라도 위임 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법적·내용적 요건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대법원 2015다227376 참조).

5-1-⑤ 화해에 관한 규정

📖 근거법령 · 민법 § 731·§ 732 · 국가계약법 § 28의2 · 중재법

화해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조정·협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731조가 화해의 의의를, 제732조가 **화해의 창설적 효력**(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합의한 내용대로 새 권리가 발생하거나 기존 권리가 소멸)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화해에는 소송 결과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며**,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화해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조항에 반영되어, **국가계약분쟁조정**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절차의 입법적 근거가 됩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당사자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국가계약법 § 31③).

✚ 쉽게 이해하기

국가·지자체가 맺는 계약도 결국 시장에서 물건 사고파는 것과 같은 **사법상 계약**이라, 기본 규칙은 민법을 씁니다. 다만 국민 세금을 쓰니 투명성 규칙을 더한 것이 국가계약법(특별법)이죠. 그래서 **특별법에 없으면 민법으로 보충**합니다.

🔑 **암기: 민법 5영역 = 성립·효력·해제/해지·도급/위임·화해**

구분	해제	해지
효과	소급 소멸(처음부터 무효)	장래 소멸(그 시점부터)
대상	일시적(도급·매매)	계속적(위임·임대차)

⚠ **함정: 위임은 언제든 해지(§ 689) 가능하지만, 도급은 사유 없이 해지 불가. '공사 중도종료=해제, 용역위임 중도종료=해지'로 구분.**

5-2

공공계약(국가 및 지방) 법령의 이해

이 절의 핵심

우리나라는 공공조달을 「공공계약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며, 주요 규정은 대부분 동일하므로 국가계약법 기준으로 학습하되 지방계약법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계약원칙·예정가격·계약방법·낙찰자결정·이행·이의신청이 핵심입니다.

5-2-① 이해 (계약의 원칙·추정가격·예정가격)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 5 · § 5의2 · § 8의2 · 국가계약법 시행령 § 2 · § 7 · § 9

「국가계약법」 제5조는 계약의 4대 원칙을 규정합니다. ① **계약자유(사적자치)·신의성실의 원칙**(“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 신의성실로 이행”, § 5①) ② **호혜의 원칙**(국제입찰 시 GPA 가입국 국민·물품에 차별 특약 금지, § 5②) ③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금지, 위반 시 무효, § 5③·④) ④ **청렴의 원칙**(금품·향응 수수 시 입·낙찰 취소 또는 해제·해지, § 5의2 —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 제출).

가격 유형	정의 · 기능
추정가격	예정가격 결정 전 산정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제외 . 국제입찰 대상 여부·계약방법·공고기간 등의 기준. 고시금액 이상이면 국제입찰 대상 (시행령 § 2·§ 7)
추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공사는 관급자재비용 까지 합산)
예정가격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낙찰자·계약금액 결정 기준으로 미리 작성한 가격(§ 8의2). 낙찰금액 결정 기준
예비가격기초금액	전자입찰 시 기초금액에서 ±2% 범위로 15개 복수예비가격 생성 → 입찰자가 많이 선택한 4개의 산술평균 이 예정가격

예정가격 결정기준은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③ 표준시장단가(중앙관서의 장 인정) ④ 감정가격·유사 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합니다(시행령 § 9).

5-2-② 계약의 방법에 관한 규정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 7 · § 25 · 국가계약법 시행령 § 10~§ 13 · § 26 · § 27 · § 70 · § 73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상 필요하면 **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시행령 § 11), 이행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사전심사(PQ)**해 적격자만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7②).

경쟁방법	내용 · 해당사항
일반경쟁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 참가. 입찰방식의 기본원칙(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자)
제한경쟁	설비·기술·지역·중소기업 여부로 자격 제한. 고시금액 미만 물품제조·용역의 지역제한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등
지명경쟁	특수기술·실적 보유자가 10인 이내 인 경우 등. 5인 이상 지명, 2인 이상 참가 승낙 시 성립

공급방법별로는 계약목적물 전체를 총액으로 체결하는 **총액계약**과, 수요빈도가 높은 정형화된 물품을 단가로 체결하는 **단가계약**(철근·시멘트·레미콘 등)이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조달사업법상 **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으로 세분됩니다. 대가확정 방법으로는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는 **확정계약**, 계약금액 전체가 미확정되어 이행 후 정산하는 **개산계약**(§ 23, 시행령 § 70), 가격 구성 일부 비목만 미확정하여 정산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시행령 § 73)이 있습니다. 이행기간에 따라서는 예산총액이 미확정된 **장기계속계약**과 예산총액이 확정된 **계속비계약**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 수에 따라 **단독계약**과 공동수급체(컨소시엄)에 의한 **공동계약**(§ 25)으로 나뉩니다.

수계약 유형	대표 사유
수의(경쟁)	천재지변·긴급행사, 비밀물자, 특정인 기술·위치·구조, 추정가격 1억원 이하(청년창업기업·임대차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시행령 § 26)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보증금·기한 외 최초 조건 변경 불가, 시행령 § 27)

5-2-③ 입찰 및 낙찰 절차 규정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 10 · 국가계약법 시행령 § 40 · § 42~ § 46

세입이 발생하는(국가가 대가를 받는) 계약은 **최고가격 입찰자**가, 국가가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국가계약법 제10조는 ①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으면서 최저가격 입찰자 ② 평가기준상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 ③ 시행령에 별도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규정합니다. 공사입찰에서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그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10③, 부실시공 방지).

낙찰제도	내용	근거(시행령)
적격심사제도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평점 이상 우량업체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 덤핑입찰 예방	§ 42① · § 42⑤
2단계 경쟁입찰	규격입찰서로 적격자 판단 후 가격입찰서로 낙찰. 각 단계 2인 이상 유효입찰	§ 42③
종합심사낙찰제	입찰가격·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시설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등)	§ 42④
협상에 의한 계약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물품·용역에 제안서·가격입찰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 기술 80%·가격 20% (조정 가능)	§ 43· § 43의2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요구사항·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렵거나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 등에 경쟁적·기술적 대화로 세부내용 확정 후 제안서 평가	§ 43의3
종합낙찰제 / 희망수량경쟁입찰	총에너지소모비 합산 최저자 선정(펌프·냉동기 등) / 다량물품을 최저단가 순으로 수요수량까지 낙찰	§ 44 / § 46

5-2-④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규정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 11~ § 19 · 국가계약법 시행령 § 49· § 50· § 58· § 62· § 64

계약서에는 ① 계약의 목적 ② 계약금액 ③ 이행기간 ④ 계약보증금 ⑤ 위험부담 ⑥ 지체상금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11). 다만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 계약, 경매, 국가·지자체 상호 간 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 등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 49).

항목	기준 · 근거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경제위기 시 기재부장관 고시로 100분의 5 이상). 계약금액 5,000만원 이하 등은 면제 가능. 미이행 시 국고 귀속(시행령 § 50· § 51)
감독·검사·대가지급	감독(§ 13)·검사(§ 14) 후 검사조서로 대가 지급(§ 15).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재난 시 3일) 이내 지급, 합의로 5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연장(시행령 § 58)
공사 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	공사 도급계약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민법 § 671 초과 불가(§ 17).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시행령 § 62). 3,000만원 이하 공사 등은 면제(§ 18)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시 조정. 두 조정률 중 하나만 적용, 미선택 시 품목조정률 우선(§ 19, 시행령 § 64)

5-2-⑤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 28· § 28의2· § 29· § 30· § 31 · 국가계약법 시행령 § 110

일정 규모(시행령 § 110: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 공사 8,000만원, 물품·용역 5,000만원 이상) 계약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8). 이의신청은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15일 이내** 심사·통지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기한 · 내용
이의신청	원인행위일 20일 이내 또는 안 날 15일 이내 → 중앙관서의 장에게(§ 28②)
중앙관서 심사·통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8③)
재심 청구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28④)
분쟁해결방법 합의	계약 체결 시 위원회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합의로 결정(§ 28의2)
위원회 구성·심사·조정	기획재정부에 설치,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29). 특별한 사유 없으면 50일 이내 심사·조정(§ 31), 15일 내 이의 없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

위원회는 심사·조정 시작 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하면 입찰 절차 연기·계약체결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0).

✿ 쉽게 이해하기

추정가격은 **공고 전에** '이 정도 규모겠다' 어림잡는 값(부가세 제외)으로 입찰방법을 정하고, 예정가격은 **낙찰 판정의 상한선**입니다. 예정가격이 미리 새면 부정입찰이 생기니 기초금액 $\pm 2\%$ 로 15개를 만들고 입찰자가 고른 **4개 평균**으로 아무도 못 맞추게 정합니다.

🔑 **암기: 복수예비가격 '15개→4개 평균' / 계약보증금 10%·대가지급 5일·물가변동 90일·3%**

구분	추정가격	예정가격
부가세	제외	포함
용도	입찰방법·공고기간 결정	낙찰 판정 기준

⚠ **함정: 이의신청 기한은 '원인행위일 20일 또는 안 날 15일' 이내 → 중앙관서 15일 심사 → 20일 내 재심 (분쟁조정위). 지명경쟁은 '5인 지명·2인 승낙'.**

5-3

조달사업법령의 이해

💡 이 절의 핵심

「조달사업법」은 국가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의 조달사업 범위·운영·관리를 규정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되어, 사실상 공공조달 정책·제도 실행의 기준이 됩니다. 정책기반(조달정책심의위원회·사회적 책임)·계약체결 요청·대금지급(대지급·조달수수료)·공정성(불공정조달행위)·수요기관 및 조달기업 지원이 핵심입니다.

5-3-① 공공조달의 정책기반

📖 근거법령 · 조달사업법 § 5 · § 6 · § 8 · § 9 · § 10

공공조달 관련 정책·제도를 협의·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① 중장기 정책·제도 마련 ② 공공수요 발굴·구매대상 선정 ③ 성과관리·평가 ④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등을 다룹니다(§ 5). 위원회는 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제도	내용 · 근거
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절차에서 환경·인권·노동·고용·공정거래·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 반영(§ 6) → 입찰·심사기준·계약조건에 반영
조달의 날	매년 9월 30일 을 조달의 날로 지정(§ 8)
조달통계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입찰·계약·대금지급(하도급 포함) 통계 작성 의무. 조달데이터허브 로 공개(§ 9)
자료제공 요청	외국산 조달물자 비축계획,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해외진출 지원, 비축물자 재판매 조사 목적으로 수출입 거래자료·전자세금계산서 요청(§ 10)

5-3-② 계약체결의 요청 및 방법

📖 근거법령 · 조달사업법 § 11 · § 12 · § 13 · § 14 · 조달사업법 시행령 § 11 · § 14~§ 16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 요청금액·성격이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기준에 해당하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 ① 국가기관 **1억원 이상**(외국산 20만 달러) 수요물자 ② 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단가계약 ③ 국가기관 **종합공사 30억원, 전문공사·전기·소방 3억원 이상** 등. 다만 천재지변·국방·국가기밀·긴급복구·기술 특수성 등은 예외이며,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임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방법 특례	내용
제3자단가계약(§ 12)	조달청장이 미리 단가만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 수요기관 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다수공급자계약(§ 13)	품질·성능·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를 2인 이상 과 체결해 수요기관이 선택. 가격을 시장거래가격 이하 로 유지, 위반 시 차액 감액·청구(범용 상용규격품에 적합)
카탈로그계약(시행령 § 16)	상품 기능·조건·가격을 담은 카탈로그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서 제출·평가·협상 후 납품자 선정
비촉물자 계약(§ 14①)	경쟁 불성립, 가격 변동 극심 등 요건 시 수의계약. 대량 비촉물자는 2인 이상 대상 분할계약 가능
중기 표준제품 공동수급체 계약(§ 14②)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표준제품 을 중소기업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 입찰담합 확인 시 낙찰 취소·해제·해지 및 부정당제재(국가계약법 § 27)

5-3-③ 대금지급 규정

☞ 근거법령 · 조달사업법 § 15 · § 16 · § 17 · 조달사업법 시행령 § 18

계약이 정상 이행되고 납품업체 규모·계약방법·자금 사정을 고려해 효율적이라 판단되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해 계약대금을 지급합니다(**대지급**, § 15). 대지급 대상은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납품대금, 교통 불편지역 군부대 등 접근 제한 수요기관 납품대금, 재해·사고 복구공사 납품대금 등입니다.

항목	내용 · 근거
대지급(§ 15)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해 계약대금 지급. 대지급하지 않으면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 후 즉시 통보
조달수수료(§ 16)	계약 체결·이행 관리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수령 → 조달특별회계 의 세입(정부기업예산법 § 3제4호)
수수료 감면	미리 대금 지급, 수요기관 책임 아닌 지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시 감면. 감경률은 100분의 20 을 초과할 수 없음
연체료(§ 17)	대지급금·수수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수요기관에 연체료 부과 가능

5-3-④ 조달사업의 공정성

☞ 근거법령 · 조달사업법 § 21 · § 22 · § 23

「조달사업법」 제21조는 공정한 조달질서를 위해 **6가지 불공정 조달행위**를 규율합니다. ① 입찰·계약·납품검사 서류 위·변조 또는 거짓 서류 제출 ②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 ③ 원산지 거짓 표시 ④ 사전승인 없는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⑤ 다수공급자계약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13 ②) ⑥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조달청장은 이를 조사하고 시정 요구·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처분을 하며, 이득은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도	내용
거래정지(§ 22)	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허위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위변조 가담 등 시 2년 이내 거래정지
포상금 지급(§ 23)	공무원 뇌물수수·불공정조달행위를 최초 신고·제보 하고 증거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고자 신분 비밀 유지 의무. 감사·조사 종사자의 직무 관련 신고,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

5-3-⑤ 수요기관 및 조달사업의 지원

☞ 근거법령 · 조달사업법 § 24~ § 28 · 전자조달법 § 5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 구매, 공사의 계약·사업** 관련 업무를 지원·대행할 수 있습니다(§ 24). 또한 조달기업에 대해 진출 지원센터, 창업벤처기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으로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25).

지원 제도	내용 · 근거
우수조달물품등 지정 (§ 26)	기술개발제품인 우수조달물품·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고시로 판로 지원(중소기업·중견기업)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 27)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지정, 시범구매·공급. 구매 책임자는 고의·중과실 없으면 손실 책임 면제
혁신제품 지원센터 (§ 27의2)	혁신제품 발굴·추천, 교육·홍보·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등
국제조달 협력·해외진출 지원 (§ 28)	각국 조달기관과 교류·협력 확대, 국내기업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정보 제공·교육훈련·국제교류)

「공공계약법」·「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전자조달법 § 5). 이는 공공조달의 실행원칙인 **전자조달시스템 활용**을 구현하는 조치입니다.

✧ 쉽게 이해하기

국가계약법이 '계약 일반법'이라면, 조달사업법은 **조달청이라는 중앙조달기관을 어떻게 굴릴지** 정한 법입니다. 제3자단가계약은 조달청이 단가만 미리 정해두고 여러 수요기관이 갖다 쓰는 방식, 다수공급자계약은 **비슷한 물품을 2인 이상**과 계약해 수요기관이 골라 쓰게 하는 방식이죠.

🔑 **암기: 조달의 날 9.30 / 조달정책심의위 20명 이내 / 수수료 감경 20% 이내 / 거래정지 2년**

공정성 규칙으로 **6가지 불공정조달행위**(서류 위·변조,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규격 다른 납품,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부정지정)를 막고 이득은 환수합니다.

⚠️ **함정: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는 가격을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어기면 차액을 감액·청구당함 (우대가격유지의무).**

5-4

전자조달법령의 이해

💡 이 절의 핵심

「전자조달법」(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13년** 제정되어, 조달업무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전자적 공고·전자입찰서 제출·전자공개수의계약·하도급 전자처리·이용활용 제한이 핵심입니다.

5-4-① 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 근거법령 · 전자조달법 § 5 · § 6 · § 9 · § 11 · 전자조달법 시행령 § 4 · 특정조달 특례규정 § 8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합니다(§ 6). 공고 방법·시기는 「공공계약법」의 입찰공고 규정을 따르며, GPA 국제입찰은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8조를 따릅니다. 국제입찰 계약문서 언어는 **한국어 원칙**이며, 불가피하면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고, **한국어와 외국어 기재가 상이하면 한국어가 우선**합니다.

우선순위 원칙	내용
게시 내용 vs 입찰공고문	시스템 게시 내용과 붙임 입찰공고문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입찰공고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 적용
전자문서 송·수신 (§ 11)	전자문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수신된 것으로 봄. 전자서명(전자서명법 § 2제2호) 필요. 시스템 외 전산장비 입력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봄
전자계약 성립 (§ 9)	수요기관 전자계약서 송신 → 계약상대자 동의 송신 → 수요기관 확정 송신의 순서 요건을 모두 갖춘 때 성립

5-4-②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 근거법령 · 전자조달법 § 7 · 전자조달법 시행령 § 5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경쟁입찰을 공고하면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같은 입찰에 대해서는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대리입찰 등 교란 방지), 제출된 전자입찰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규정	내용(시행령 § 5)
1컴퓨터 1입찰	같은 입찰은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 제출 가능
취소 신청 예외	입찰금액 등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 가 있는 경우 취소 신청 가능 → 무효 처리
취소 후 재참여	취소로 무효 처리되면 그 입찰에는 참여 불가. 다만 재입찰·재공고입찰 에 부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부속서류 판독 불가	암호 설정·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부속서류를 판독하기 곤란하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5-4-③ 전자공개수의계약

📖 근거법령 · 전자조달법 § 7 · 전자조달법 시행령 § 6 · 국가계약법 시행령 § 30

수의계약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 30(지방계약법 시행령 § 30)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시행령 § 6). 수의계약은 비경쟁적 절차이므로 용어가 경쟁입찰과 다릅니다.

경쟁입찰	전자공개수의계약
입찰공고문	안내공고문
전자입찰서	전자견적서

전자견적서 제출·안내공고에는 시행령 제4조·제5조를 준용하며, 이때 “입찰공고문”은 “안내공고문”으로, “전자입찰서”는 “전자견적서”로 봅니다(시행령 § 6②).

5-4-④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 근거법령 · 전자조달법 § 9의2 · 전자조달법 시행령 § 7 · 건설산업기본법 § 34

원도급(계약상대자)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할 때 그 과정을 **전자조달시스템**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9의2). 시스템에는 ① 하수급인·노무자·자재장비업자에 지급할 금액의 청구·승인·지급 ② 수요기관 실시간 확인 ③ · ④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승낙·확인·통보의 전자적 처리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체결자·하수급인은 지급용 **전용계좌**를 개설해 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 § 7).

시스템 예시	운영기관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조달청
대금e바로시스템	서울시
체불e제로	국가철도공단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3,000만원 미만 또는 30일 내**의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5-4-⑤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활용 제한

☞ 근거법령 · 전자조달법 § 15 · 전자조달법 시행령 § 10

법정 수요기관 외의 자도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Open API 등으로 공공조달 데이터를 연계·가공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습니다 (§ 15).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활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	내용
허위 신청	이용·활용 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질서 훼손 목적	건전한 입찰질서를 훼손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인 경우
부적정(시행령 § 10)	최근 3년 내 처벌받은 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국가계약법 § 27·지방계약법 § 31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

✱ 쉽게 이해하기

종이 조달을 나라장터로 옮긴 법이 전자조달법입니다. 전자문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수신된 것으로 보고, 한 입찰은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만** 넣게 해 대리·중복투찰을 막습니다. 낸 입찰서는 원칙적으로 못 바꾸죠.

🔑 **암기: 수의계약은 용어가 바뀐다 → 입찰공고문=안내공고문, 전자입찰서=전자견적서**

우선순위	기준
내용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이 우선
공고일은	게시한 날이 우선

⚠ **함정: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3,000만원 미만 또는 30일 내' 소규모 공사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의무. 부속서류가 판독 불가면 '제출 안 된 것'으로 간주.**

5-5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 절의 핵심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되, 조직·업무 특성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을 적용합니다. 국제입찰 조달계약 범위, 계약사무 위탁 및 중기간경쟁제품 구매위탁 의무 예외, 수의계약, 의견청취·심의, 이의신청이 핵심입니다.

5-5-① 계약사무규칙 (국제입찰 조달계약 범위)

근거법령 · 계약사무규칙 § 4 · 정부조달협정(GPA)·FTA · 특정조달 특례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은 GPA·FTA에서 국제입찰 대상을 결정하는 **허용 조달 대상물과 규모(금액)**가 국가·지방과 달리 적용됩니다. 「계약사무규칙」 제4조는 별표에 따른 물품·용역·공사 기준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국제입찰**로 하도록 하되, 예외 사유를 규정합니다.

협정	물품·용역(공기업)	공사(공기업)
GPA	7.1억원	265억원
한-칠 FTA	7.9억원	265.1억원
한-미 FTA	7.7억원	-
특례조달계약(기타)	2.3억원	

다만 국제입찰 대상·규모에 해당하더라도 ① 판매·재판매용 물품·용역 ② 중소기업제품 제조·구매(판로지원법) ③ 농·수·축산물 구매 ④ 한국전력공사의 특정 중전기 품목 ⑤ 국가안보·국방 목적 ⑥ 공공질서·생명·건강·지적 소유권 보호 ⑦ 자선단체·장애인·재소자 생산물 ⑧ 급식 프로그램 ⑨ 부동산 취득·임차 등은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①). 계약의 목적·성질상 필요하면 국제입찰 대상이 아니어도 국제입찰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4④).

5-5-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위탁 의무 예외

근거법령 · 계약사무규칙 § 7 · § 7의2 · 공공기관운영법 § 44

기관장은 계약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지자체·다른 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7 ①). 특히 임직원이 계약사무 관련 형법상 죄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기재부장관·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이사회 의결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단위부서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위탁(2년 이내)**해야 합니다(§ 7②·③).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장관 고시금액(국제입찰 기준) 이상 물품·용역·공사를 조달청장에게 **구매 위탁**해야 하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다음의 경우 직접 구매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7의2①). 직접 구매 시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7의2③).

구매위탁 의무 예외 사유

- ①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제품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디자인 공모·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미리 제품을 선정·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전산 SW 개발 등 용역사업 관련 제품으로 고유사업 지원상 직접 구매가 적합한 경우
- ④ 핵심 기자재로서 전문성·품질 확보를 위해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
- ⑤ 그 밖에 특수성·전문성·안전성·구매시기 등을 고려해 직접 구매가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5-③ 수의계약 규정

☞ 근거법령 · 계약사무규칙 § 8 · § 8의2 · 국가계약법 시행령 § 26 · § 27 · 특정조달 특례규정 § 23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상대자**가 되는 수의계약 등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계약사무규칙」 제8조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수의계약 가능 사유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 ② 자회사·출자회사와의 계약(정부 경영혁신 위탁, 제1종시설물 유지관리, 특정기술 보호육성, 비밀계약, 개발선택품 3년 이내, 성과공유제 2년 이내 등)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 26 · § 27에 해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국제입찰 대상 계약의 수의계약은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23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제한(§ 8③)	정보 공개(§ 8의2)
① 2년 이내 퇴직자 가 대표이사·이사·감사로 재직하는 법인과 계약 ② 2년 이내 퇴직자와 계약 ③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회원사·자회사와 계약은 수의계약 금지 . 허위서류 제출 시 해제·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자회사·출자회사 등과의 수의계약은 사업명·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상호·본점소재지, 예정가격·계약금액, 법령상 근거·구체적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이행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5-5-④ 의견 청취 및 심의절차

☞ 근거법령 · 계약사무규칙 § 15 · § 16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하려면, 처분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16①).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조달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충분한 의견 청취와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절차	내용(§ 16)
사전 통지	의견청취 예정일 7일 전 까지 사유·일시·장소를 서면 통지
의견 진술	지정 일시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서면 제출 가능
불응 간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통지에 명시)
진술 확인	관계 직원이 진술 내용을 서면 작성 → 출석자 확인 후 서명·기명날인

5-5-⑤ 이의신청 규정

☞ 근거법령 · 계약사무규칙 § 17 · § 18 · 국가계약법 § 29 · 국가계약법 시행령 § 110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계약한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 110제1항 기준 금액(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 공사 8,000만원, 물품·용역 5,000만원 이상) 이상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해당 기관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7). 이의신청 사유에는 국제입찰 범위,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지체일수, 부당특약, 보증금 귀속, 개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정산, 계약의 해제·해지가 포함됩니다.

절차	기한 · 내용
이의신청	원인행위일 20일 이내 또는 안 날 15일 이내 → 해당 기관장에게(§ 17②)
기관장 심사·통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결과 통지(§ 17③)
재심 청구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계약법 § 29)에 재심 청구(§ 17④)
위원회 심사·조정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심사·조정(§ 18)

이의신청 절차의 기한 체계(20일/15일 → 15일 → 20일)와 재심 기관(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은 국가계약법의 이의신청·분쟁조정 구조와 동일합니다.

✳ 쉽게 이해하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 직속이 아니라 국가계약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법의 위임을 받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을 씁니다. 큰 틀은 국가계약법을 그대로 준용하되 국제입찰 기준금액 등 일부만 다르죠.

🔑 **암기: 의견청취 '7일 전' 통지 / 이의신청 '20일·15일→15일→20일'은 국가계약법과 동일**

국제입찰(공기업)	기준금액
GPA 물품·용역	7.1억원
GPA 공사	265억원

⚠ **함정: 부정당업자 제재는 별도 절차 없이 모든 공공기관에 '즉시·자동 적용'. 수의계약은 '2년 이내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 등과는 금지.**

③ 요약노트

한눈에 보는 핵심

📌 한눈에 보는 핵심 (제5장)

- **법체계**: 우리나라는 「공공계약법」(국가계약법·기재부 / 지방계약법·행안부) 형식. 국가계약법은 **민법의 특별법**(§ 3), 공법상 계약에는 적용 배제
- **민법 계약속성**: 공공계약 = 전형·쌍무·유상·낙성. 낙찰은 본계약 전 **편무예약**. 도급(§ 664, 담보책임 토지·건물 **5년/석조 등 10년**) vs 위임(§ 680, **언제든 해지**)
- **해제·해지**: 해제=**소급 소멸**, 해지=**장래 소멸**. 법정해제=이행지체(§ 544)·정기행위(§ 545)·이행불능(§ 546). 주된 채무만 해제 사유
- **화해**: § 731·§ 732 **창설적 효력**, 착오 취소 불가. 국가계약법 § 28의2 분쟁해결(조정·중재) 근거
- **계약원칙 4대**: 계약자유·신의성실 / 호혜 / 권한남용금지(부당특약 **무효**) / 청렴(청렴계약서).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예정가격=+부가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평균**
- **계약방법**: 일반경쟁 원칙, 2인 이상 성립. 제한·지명(10인 이내, **5인 지명 2인 승낙**)·수의(1억원 이하). 확정/개산/사후원가검토, 장기계속/계속비, 단독/공동
- **낙찰제도**: 적격심사(낙찰하한율), 2단계, 종합심사(100억↑), 협상(**기술80·가격20**), 경쟁적 대화. 공사 **98% 미만** 입찰 낙찰 배제
- **이행**: 계약서 7항목(3천만원↓ 생략), 계약보증금 **10%↑**, 하자보수보증금 **2~10%**, 대가지급 5일, 물가변동 **90일·3%**
- **이의신청**(국가계약·공기업 동일): 20일/15일 → 15일 통지 → 20일 재심 → **국가계약분쟁조정위**(50일, 15일 내 이의없으면 재판상 화해)
- **조달사업법**(1995): 조달정책심의위(기재부, 20명↓), 사회적 책임(§ 6), 조달의 날 **9.30**, 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대지급·조달수수료(감경 **20%↓**), 불공정조달행위 **6유형**, 거래정지 **2년**
- **전자조달법**(2013): 나라장터 공고, 입찰공고문 우선(단 공고일은 게시일), 1컴퓨터 1입찰, 전자공개수의계약=**안내공고문·전자견적서**, 하도급지킴이(3천만원 미만·30일 제외 의무)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제입찰 범위(§ 4, 공기업 물품 7.1억·공사 265억), 계약사무 의무위탁(10일·60일·2년), 수의계약 제한(2년 내 퇴직자), 의견청취 **7일 전** 통지

✅ 자가 진단

1. 국가계약법이 민법의 특별법인 근거와 공법상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2.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 법정해제 사유(이행지체·정기행위·이행불능)를 설명할 수 있는가?
3. 도급과 위임의 차이, 화해의 창설적 효력을 설명할 수 있는가?
4. 계약원칙 4대, 추정가격·예정가격, 낙찰자 결정제도를 구분할 수 있는가?
5. 조달사업법의 불공정조달행위 6유형과 대지급·조달수수료를 설명할 수 있는가?
6. 전자조달법의 전자공개수의계약 용어 차이와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의 이의신청 기한을 설명할 수 있는가?

④ 예상문제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객관식 (10문항)**

1. 우리나라 「국가계약법」과 「민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계약법은 민법의 일반법이다.
- ② 국가계약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다.
- ③ 공법상 계약에도 국가계약법이 항상 적용된다.
- ④ 국가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배제된다.
- ⑤ 국가계약법과 민법은 서로 무관하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국가계약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다.

국가계약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적용되므로, 국가계약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3나54627). 다만 별도의 공법을 근거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민법상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제는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킨다.
- ②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 ③ 법정해제 사유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이 있다.
- ④ 계약의 부수적 채무 불이행만으로도 해제할 수 있다.
- ⑤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 정답 ④ 부수적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계약 해제는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하며,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지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다53705). 해제는 소급 소멸(§ 548), 해지는 장래 소멸(§ 550)이며 의사표시는 철회 불가(§ 543②)입니다.

3. 도급과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급은 사무의 처리를, 위임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③ 도급은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 ④ 공공조달 물품제조·공사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 ⑤ 위임은 결과에 대해 수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689).

도급은 일의 완성을, 위임은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도급은 일이 완성되어야 보수를 지급하고 결과에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공공조달의 물품제조·용역·공사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위임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5조가 규정하는 계약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계약자유(사적자치)·신의성실의 원칙
- ② 호혜의 원칙
- ③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 ④ 청렴의 원칙
- ⑤ 최저가 낙찰의 원칙

정답 · 해설

✓ 정답 ⑤ 최저가 낙찰은 계약의 원칙이 아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제5조의2는 계약자유·신의성실, 호혜, 권한 남용 금지(부당특약 무효), 청렴의 4대 원칙을 규정합니다. 최저가 낙찰은 낙찰자 결정 방식의 하나일 뿐 계약의 원칙이 아닙니다.

5.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 ② 예정가격은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③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면 국제입찰 대상이 된다.
- ④ 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 ⑤ 복수예비가격은 10개를 생성한다.

정답 · 해설**✓ 정답 ③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면 국제입찰 대상이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대상 여부·계약방법 등의 기준이며, 고시금액 이상이면 국제입찰 대상이 됩니다. 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전자입찰 시 $\pm 2\%$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생성하고 많이 선택한 4개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6. 「국가계약법」 상 계약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 ③ 지명경쟁은 5인 이상을 지명하고 2인 이상이 참가를 승낙하면 성립한다.
- ④ 개산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계약이다.
- ⑤ 계약상대자가 2명 이상이면 공동계약이다.

정답 · 해설**✓ 정답 ④ 개산계약은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계약이다.**

개산계약은 계약 대상물 가격 전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 후 정산하는 계약입니다(확정계약과 반대). 일반경쟁 원칙, 2인 이상 성립, 지명경쟁 5인 지명·2인 승낙, 공동계약(2명 이상)은 모두 옳습니다.

7. 「국가계약법」 상 계약 이행 관련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 원칙이다.
-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이다.
- ③ 물가변동 조정은 계약 체결 후 30일 경과 시 가능하다.
- ④ 계약금액 5,000만원 이하 계약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
- ⑤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항상 10년이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10% 범위입니다(시행령 § 62). 계약보증금은 원칙 100분의 10 이상, 물가변동 조정은 90일 경과·3% 이상 증감 시, 계약서 생략은 3,000만원 이하, 공사 담보책임은 민법 § 671에 따라 5년(석조 등 10년)입니다.

8. 「조달사업법」 상 불공정 조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입찰·계약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③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④ 다수공급자계약의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⑤ 예정가격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행위

정답 · 해설

✓ 정답 ⑤ 예정가격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정상적 절차이다.

조달사업법 제21조의 불공정 조달행위는 서류 위·변조,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부정 지정의 6유형입니다. 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산정하는 것이 정상 절차입니다.

9. 「전자조달법」 상 전자입찰·전자공개수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같은 입찰에 대해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출된 전자입찰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다.
- ③ 전자공개수의계약에서는 입찰공고문 대신 안내공고문을 사용한다.
- ④ 전자공개수의계약에서 제출하는 문서는 전자입찰서이다.
- ⑤ 전자공개수의계약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에 적용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④ 전자공개수의계약에서 제출하는 문서는 전자견적서이다.

수의계약은 비경쟁적 절차이므로 '입찰공고문' 대신 '안내공고문', '전자입찰서' 대신 '전자견적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시행령 § 6). 1컴퓨터 1입찰, 교환·변경·취소 불가, 2인 이상 견적서 요건은 모두 옳습니다.

10.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상 이의신청 절차로 옳은 것은?

- ① 원인행위일부터 3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신청한다.
- ② 원인행위일 20일 이내 또는 안 날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신청한다.
- ③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 ④ 재심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청구한다.
- ⑤ 이의신청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원인행위일 20일 이내 또는 안 날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신청한다.

계약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이의신청은 원인행위일 20일 이내 또는 안 날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하며, 기관장은 15일 이내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이는 국가계약법의 이의신청 구조와 동일합니다.

OX (5문항)

11. 「국가계약법」의 소관 부처는 기획재정부이고, 「지방계약법」의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가 소관합니다. 두 법의 주요 계약 규정은 대부분 동일하므로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학습하되 지방계약법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12. 민법상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X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며,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 731· § 732).

13. 전자적 공고에서 시스템 게시 내용과 붙임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게시 내용과 입찰공고문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 적용됩니다.

14.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당사자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국가계약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완료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합니다.

15. 「조달사업법」 상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보다 높게 유지해야 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X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며(조달사업법 § 13②), 위반 시 차액을 감액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거래가격보다 높게 공급하는 것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PART 1 · 제6장

공정조달 관리

① 학습목표 · 핵심키워드

PART 1 · 필기 제1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30문항)

제6장 「공정조달 관리」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조정·중재)**하고, 법령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무엇이 우선**하며, 법규를 위반한 조달기업에 어떤 **제재**(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불공정조달행위 제재, 부당이득금 환수)가 부과되는지를 다룹니다. 공공조달의 **공정성·투명성을 사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들을 단계적으로 익히는 장입니다.

🎯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이 장을 학습한 후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공공조달 관련 분쟁의 **유형과 조정·중재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공공계약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과 감사사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해지** 및 후속 조치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 및 제재 조치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불공정조달행위** 유형 및 후속 조치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부당이득금 환수** 사유 및 조치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핵심 키워드 (Keywords)

공공조달 분쟁(Public Procurement Disputes) · 유권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중재(Arbitration) · 대안적 분쟁해결(ADR) · 계약 해제·해지(Rescission·Termination) · 부정당업자 제재(Debarment) · 과징금 · 불공정조달행위(Unfair Procurement Practices) ·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

■ 이 단원의 4단 구조

- ① 학습목표·핵심키워드 (이 화면)
- ② 본문 — 6-1 법규 분쟁 및 해석(분쟁조정·유권해석·계약보증금·부정당제재법리·허위서류) / 6-2 법규 위반시 제재(해제해지·부정당업자·불공정조달·부당이득환수)
- ③ 요약노트 — 한눈에 보는 핵심
- ④ 예상문제 —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6-1

공공조달 법규 분쟁 및 해석

💡 이 절의 핵심

공공조달 분쟁은 소송보다 **조정(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중재(대한상사중재원)**로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령 해석의 우선순위는 **사법해석(법원) > 정부유권해석(법제처) > 행정해석(개별 행정기관)** 순이며, 계약보증금·부정당제재·허위서류를 둘러싼 다양한 **유권해석 사례**가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6-1-① 공공조달 분쟁조정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 28의2 · § 29 · 지방계약법 § 34의2 · § 35 · 중재법 § 3 · § 35~§ 38 · 국가계약법 시행령 § 110

공공조달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조달사업법」 등 공공계약·조달 법규와 「판로지원법」·「여성기업법」 등 전략적 공공조달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450건** 내외의 본안소송·가처분·행정심판이 발생하고 그중 약 **79%**는 **조달청이 승소**합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인력·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조달기업 입장에서는 소송 이전에 **조정·중재**로 조기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쟁 유형	내용
민사소송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 에 따른 대등한 주체 간 신분·경제 생활관계 소송. 화해·조정·중재 등 ADR로 다룰 수 있음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한 권리·이익 침해 구제. 항고·당사자·민중·기관소송으로 구분. 공공조달에서 가장 빈번 (부정당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보조금 환수·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형사소송	형법 위반자 처벌. 공공계약법령과 직접 관련한 분쟁에서 발생 가능성은 낮음

공공조달·계약 관련 분쟁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정’을 선택하면 「국가계약법」 제29조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선택하면 「중재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합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제34조의2에 따라 조정·중재를 당사자 합의로 정하고, 조정 시 제35조의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시험 포인트 —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2013년 도입, **정부·민간위원 15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 신청 대상은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종합공사 4억·전문공사 1억·기타공사 8천만·물품/용역 5천만 원** 이상 계약. 신청 사유는 국제입찰 조달범위·부당특약·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낙찰자 결정·입찰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계약금액 조정·개산계약 정산·지체상금·계약 해제해지 등 **10개 항목**. 신청 비용은 **무료**(감정 등 실비는 발생 가능). 위원회는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완료.

분쟁조정 절차는 ① **이의신청** → ② **이의신청 회신**(조정 이전 단계) → ③ **재심청구** → ④ **수리·각하 의결** → ⑤ **심사·조정안 작성** → ⑥ **조정안 통보**(조정 신청 단계)의 6단계입니다. 이의신청은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 회신하며, 회신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재심을 청구합니다. 조정 청구를 수리하면 7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재제도와 ADR 특성 비교

중재는 당사자 합의로 **재산권상 분쟁**을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중재법 § 3).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 절차는 ① **중재합의** → ② **중재신청** → ③ **중재판정부 구성** → ④ **중재심리** → ⑤ **중재판정**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중재인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3명이 원칙**이며, 실무상 신청금액 **5억 원** 이하는 **1명**, 초과 시 3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재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협상	조정	중재	판결
참여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강제적
제3자 개입	없음	조정인(합의)	중재인(합의)	판사
결론	상호 합의	상호 합의	중재판정(단심제)	판결(3심제)
강제성	계약 효력	계약 효력	집행력 있음	집행력 있음

중재는 **탄력성·우호성·전문성·비밀성·중립성·신속성(경제성)**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중재법 § 35)을 가지나, 별도의 중재합의를 해야 하고 국제중재는 고액이며 절차 강제력이 미흡한 단점도 있습니다.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정본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무능력·통지 미이행·합의 범위 초과·절차 위반·중재 부적합·선량한 풍속 위배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1-② 유권해석 및 감사사례

☞ 근거법령 · 정부조직법 ·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전자조달법 시행령 § 4 · 지방계약법 § 7②

법령 해석은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제정 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작업으로, 통상 **법제처**가 행하는 것을 **정부유권해석**이라 합니다. 단, 민사·상사·형사·행정소송·국가배상 관련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해석은 **법무부**가 수행합니다.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위반 시 징계·감사원 감사 등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집니다.

☞ 법령 해석 효력의 우선순위

사법해석(법원) > 정부유권해석(법제처) > 행정해석(개별 행정기관). 법원의 확정판결(사법해석)이 나오면,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정부유권해석보다 우선합니다. 공공조달·계약 관련 **행정해석기관**은 국가계약법령=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령=행정안전부, 조달사업법·전자조달법=조달청이며,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의 행정해석 업무는 **2003년부터 조달청이 위임**받아 수행합니다.

공공계약법령 해석에 관한 대표적 유권해석·감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해석 결과
중앙조달 요청 시 적용 법령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중앙조달)하면, 조달청은 요청기관의 계약 수탁자 지위 이므로 수요기관에 적용되는 「 지방계약법 」을 적용. 이후 지방계약법 § 7②에 단서를 신설해 명시
회계연도/예산확정 전 입찰공고	긴급 재해복구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은 예산배정 전이라도 미리 계약 가능(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예산배정 이후 발생). 입찰공고도 가능하되 예정가격 변경 가능성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확정 예산으로 예정가격이 변경되면 공고 취소 후 새 공고
전자조달시스템 vs 붙임 공고문	내용이 다르면 입찰공고문 우선 (경쟁방법·낙찰자선정방법 등). 다만 공고(게시)일자 가 다르면 전자조달시스템의 게시일 우선 (전자조달법 시행령 § 4③)
입찰공고 중대 하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적용 오류 등 중대한 하자 는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 취소 후 새 공고 . 단순·경미한 오류는 정정공고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 가산)로 대체
대표자 성명 변경등록 미이행	대표자 성명이 개명으로 변경됐음에도 변경등록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면(책임 없는 사유 제외) 입찰 무효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15· § 44/ § 42)

낙찰자 결정 관련 해석

계약 체결 전 1순위 업체에 계약무효(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재공고 없이 **차순위 업체를 심사해 낙찰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인 이상 유효입찰 성립 시). 그러나 **계약 체결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새 공고로 낙찰자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재공고 후에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법제처 유권해석).

6-1-③ 계약보증금 쟁점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50· § 51· § 74· § 75 · 지방계약법 § 30의2

계약 이행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 75②). 따라서 이행 의사가 있는 계약상대자에게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 지체상금의 계약보증금 도달 시점

분할 가능한 용역·물품을 **일부 검사·인수**한 뒤 미이행분에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시점은 **기성부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에 달하는 시점으로 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851). 즉 시행령 § 50①의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계약보증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계약 이행 가능성이 있거나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약보증금을 추가 징수한 뒤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에서 기성·기납부분을 인수한 경우에는, 국고 귀속 시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기납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제외**하고 귀속시킵니다(시행령 § 51②).

6-1-④ 부정당제재 처분 법리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30· § 76 · 지방계약법 시행령 § 92 · 행정소송법 § 23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 관련해 **사유의 발생과 처분의 확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심사 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처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적격심사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 체결 전에 제재 처분을 받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 76, 지방계약법 시행령 § 92).

집행정지의 효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되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본안 소송 확정판결 시까지 제재 처분이 유보**되므로 그동안 **입찰참가·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재 대상의 **지위**도 쟁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견적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수의계약을 미체결하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정한 조달질서를 위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지방계약법령상 학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해석되어, 관내 모든 학교와의 수의계약에서 배제됩니다.

6-1-⑤ 허위서류 관련 쟁점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76②1호가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 92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1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입찰·계약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해 제출 당사자의 **허위 인식 여부·고의성은 중요하지 않으며**, 허위임을 인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 허위실적을 제외해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실적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으나, **허위 실적을 제외하고도 정당한 실적만으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가능합니다**. 허위 서류가 심사 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제출 그 자체만으로**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대상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허위서류 제출은 ① **부정당업자 제재**(제출 자체로 성립, 고의·과실 불문) ② **계약 해제·해지**(적격심사기준 § 10에 따라 가능) ③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대상 아님**)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 쉽게 이해하기

이 절은 '문제가 터졌을 때'의 도구함입니다. 다투는 법에는 **협상→조정→중재→판결** 4단계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남(제3자)이 세계 개입하고 강제력도 커집니다. 조정·중재는 소송 전에 조기 합의로 끝내는 **대안적 분쟁해결(ADR)**이라, 시간·돈을 아끼려는 조달기업에 유리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무대라고 짚지어 기억하세요.

🔑 **암기: 조정 '50·15' — 청구받고 50일 내 완료, 조정안 받고 15일간 조용하면 재판상 화해(끝). 중재는 '단심·집행력' 두 단어.**

	조정	중재	판결
심급	합의	단심제	3심제
강제성	계약 효력	집행력 있음	집행력 있음

⚠ **합정: 해석 우선순위는 '법원 > 법제처 > 개별기관' 순 — 정부유권해석이 법원보다 위라거나, 유권해석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 오답(구속력은 없고 '사실상' 구속력).**

6-2

법규 위반시 제재

💡 이 절의 핵심

법규 위반 시 제재는 **계약 해제·해지 →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최대 2년)·과징금 → 불공정조달행위 제재 → 부당이득금 환수**로 이어집니다. 부정당업제재는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강력한 처분이고, 부당이득금 환수는 행정처분과 별개인 **민사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가집니다.

6-2-①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75 · 지방계약법 § 30의2 · 시행령 § 91 · (계약예규)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는 발주기관과 조달기업의 계약관계를 단절시키는, 법규 위반 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한 제재**입니다.

구분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효력 방향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	결정 시점부터 미래(불소급)
내용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무효화	유효 성립된 계약의 장래 효력 소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시키는 경우, 또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고** 수행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해제·해지 대상이 됩니다. 이행 가능성·유지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 계약보증금 징수 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6조는 ① 납품기한 내 규격 물품 납품 거부·미완료 ② 귀책사유로 납품기일 내 납품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 ③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를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해제·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

계약상대자 책임 사유로 해제·해지 시: ① 발주기관이 기성(기납품) 부분을 검사·인수하면 해당 대가를 지급 ② 계약상대자는 미정산 선금 잔액에 **약정이자**를 가산해 상환. **발주기관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해지 시: ① 기성부분 미지급 대가를 **14일 이내** 지급 ② 인력·자재·장비 철수 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잔액을 상환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음**. 해제·해지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손해배상·부정당업자 제재와 **병행**되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6-2-② 부정당업자 제재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 27 · 국가계약법 시행령 § 76 · § 76의2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77·[별표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9개 항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규정합니다. 제재 사유는 ① 부실·조잡·부당·부정한 계약 이행 ② 담합 ③ 하도급 제한 위반 ④ 사기·부정행위로 국가 손해 유발 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공정위 요청) ⑥ 상생협력법 위반(중기부 요청) ⑦ 뇌물 공여 ⑧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한 위해 ⑨ 경쟁의 공정한 집행 저해·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이행 저해·다른 법령 위배 등입니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세부 사유까지 합하면 **총 20개**의 제재 사유가 규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과

제재를 받으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처분을 부과한 기관뿐 아니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처분권자는 제한기간 개시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를 게재**(시행규칙 § 77)하며, 상호·대표자 변경을 통한 우회 입찰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면허번호 등을 확인합니다.

제재 기간은 사유의 중요도·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설정됩니다. 제재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최대 2년 초과 불가)하고, 복수 처분 시에는 **가장 긴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제27조 제1항 제7호(뇌물)를 제외하고는 위반의 동기·내용·횟수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현저히 경미하면 다시 2분의 1 감경이 가능합니다(**최소 1개월 이상**).

대표 제재 사유	제재 기간(예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자	2년
사기·부정으로 국가에 10억 원 이상 손해	2년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2년
서류 위·변조·허위서류로 낙찰받은 자	1년
서류 위·변조·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6개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개월
입찰참가·낙찰자 계약체결·이행 방해	3개월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령 § 76의2)

제재 사유에 해당해도 사안이 **경미하고 특정 요건**(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발주자 귀책, 공동 책임, 입찰금액 과소산정으로 책임 경미, 단순 착오, 공정성·적정성이 현저히 훼손되지 않고 재발 위험이 낮은 경우 등)에 부합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담합·공정위 요청·중기부 요청·뇌물·고의 무효입찰·원가계산 부실산정·타당성조사 부실**은 과징금 대체가 **불가**합니다. 통지받은 자는 **60일 이내** 납부(부득이한 경우 사유 해소일부터 30일). 계약금액의 10% 초과 또는 중소기업에 10억 원 초과 부과 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가능(연장은 당초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불가, 분할은 간격 3개월 이하·**3회 이내**).

6-2-③ 불공정조달행위 제재

 근거법령 · 조달사업법 § 21 · § 11~§ 14 · 조달사업법 시행령 § 21 · 국가계약법 § 27·시행령 § 76

「조달사업법」 제21조 제1항의 **‘불공정조달행위’**는 수요물자(물품·용역) 조달 과정(입찰·계약 체결·이행·검사검수·대금지급)에서 공정한 질서·관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크게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번호	불공정조달행위 유형
①	입찰·계약·납품검사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 서류 제출
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
③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납품
④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⑤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⑥	우수조달물품·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불공정조달행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5개 업체 내외**가 적발됩니다(2022년 72개사, 2023년 79개사, 2024년 77개사). 조사는 신고(조달청 불공정조달신고센터) 또는 조달청 자체 조사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고에 따른 조사는 ① 신고 접수 → ② 사전 검토 → ③ 조사 개시 → ④ 현장·진술조사 → ⑤ 중간조사 완료 → ⑥ 의견 청취 → ⑦ 심의 → ⑧ 조사 완료 → ⑨ 결과 보고 → ⑩ 결과 통보 → ⑪ 후속조치 → ⑫ 신고 포상금 지급의 12단계로 진행됩니다. 자체 계획 조사는 사전 검토 단계에서 조사 대상 품명 선정·조사계획 보고가 추가되고, 신고 포상 단계는 제외됩니다.

❖ 불공정조달행위 후속조치 (시행령 § 21④)

- **행정적 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면 **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이면 **거래정지** 조치
- **계약상 조치**: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계약 해지·계약보증금 환수**. 해지 시 납품 완료분·기성분 대가는 지급받되 계약보증금은 국고 귀속
- **기타**: 시정조치, **부당이득금 환수**, 소 제기 등. 우수조달물품·공동상표는 **지정 취소**, 직접생산 위반은 **직접생산확인 취소** 가능

6-2-④ 부당이득금 환수

☞ 근거법령 · 조달사업법 § 21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19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12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조달청훈령 § 2211호)

불공정조달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조달청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합니다(훈령 § 22 ①). 최근 3년간 환수 결정 업체는 연평균 약 70개사, 2024년 기준 환수 결정 금액은 약 **245억 원**(244.3억 원)입니다.

부당이득금 환수 절차는 ① 환수 요청 → ② 조사계획 수립 → ③ 조사 실행 → ④ 대면 설명(요건 충족 시) → ⑤ 조사 결과 보고 → ⑥ 업체 의견 청취 → ⑦ 공정조달국업무심의회 → ⑧ 계약심사협의회 → ⑨ 환수 통보·고지의 9단계로 진행됩니다. 불공정조달행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요기관이 환수를 완료했거나, **채권소멸시효 완성**, 폐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면 조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 부당이득금 vs 계약보증금

부당이득금 환수는 행정처분과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보증금 환수와 **중복 제재가 아닙니다**. 결정적 차이는 **산정 대상**입니다.

구분	부당이득금 환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법적 근거	조달사업법 § 21⑥	국가계약법 § 51⑤
대상	납품 이행 완료(종결) 전부	납품 이행 완료 미포함 (미이행분)
산정	불공정조달행위 유형별 상세 산정기준(별표3)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예컨대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처럼 여러 번 분할 납품하는 경우, 부당이득금은 **분할 납품한 총금액**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은 **기납품 금액을 제외한 잔여 납품금액** 대상으로만 부과됩니다.

불공정조달행위 유형별 부당이득금 산정기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별표3)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유형	산정기준
① 허위·위변조 등 부정한 서류 제출	이행 완료 물품대금에 ㉠ 평균 영업이익률 을 곱한 금액 ㉡ 100분의 10 을 곱한 금액 ㉢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의 차액 중 가장 높은 금액
② 직접생산기준 위반 · ③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납품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위반 비용이 더 적다는 증빙 시 감액)
④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상이한 제품 물품대금 전부 (목적 달성에 문제 없고 공급비용 증빙 시 공제)
⑤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계약단가 - 시장공급 물품단가) × 이행 완료 수량
⑥ 기타 법령·계약조건 위반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 산정기준도 위와 동일하나, **직접이행의무 위반**과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개입**(각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한 산정기준이 추가로 제시됩니다.

✳ 쉽게 이해하기

법규를 어기면 제재가 **계약 해제·해지** → **부정당업자 제재** → **불공정조달행위 제재** → **부당이득금 환수** 순으로 겹겹이 쌓입니다. 한 행위에 여러 제재가 동시에 붙는 '다층 방어'라, 하나만 골라 답하면 안 됩니다. **해제**는 시갯바늘을 계약 전으로 되돌려 없던 일로 만들고(소급), **해지**는 지금부터 앞날만 끊는다(불소급)고 그림을 그려 두세요.

🔑 **암기: 해제='제로로 소급', 해지='지금부터'. 부정당제재는 '최대 2년·전국 모든 공공입찰 차단'.**

제재	산정 대상
부당이득금 환수	이행 완료분 '전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이행 완료분 뺀 '미이행분'

⚠ **함정: 부정당제재는 처분한 기관에서만 막힌다? → 아니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모든 입찰'이 막힙니다. 담합·뇌물·공정위/중기부 요청 등은 경미해도 과징금으로 대체 '불가'라는 점도 단골 함정.**

③ 요약노트

한눈에 보는 핵심

✦ 한눈에 보는 핵심 (제6장)

- **분쟁 통계**: 최근 5년 연평균 450건 내외, 조달청 승소율 약 79% → 소송 전 **조정·중재**가 유리
- **분쟁 유형**: 민사·형사·행정·가사 중 공공조달은 **민사·행정소송**이 주. 행정소송이 가장 빈번
- **조정**: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15명 이내, 2013 도입) / 청구 후 **50일 이내** 완료 / 15일 내 무이의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5단계(합의→신청→판정부→심리→판정), **단심제·집행력**, 취소소송은 정본 수령 후 3개월 이내
- **해석 우선순위**: 사법해석(법원) > 정부유권해석(법제처)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관 국가=기재부·지방=행안부·조달사업=조달청(계약예규는 2003년부터 조달청 위임)
- **주요 유권해석**: 중앙조달 요청 시 **지방계약법 적용** · 공고 상충 시 입찰공고문 우선(게시일자는 시스템 우선) · 중대하자는 취소·재공고, 경미 오류는 정정공고(5일 가산) · 대표자 성명 변경등록 미이행 시 입찰 무효
- **계약보증금 쟁점**: 지체상금 도달 여부는 **전체 계약금액 기준** / 견적서 제출자는 부정당제재 대상 아님(단 3개월 내 포기 시 수의계약 배제)
- **허위서류**: 고의·과실 불문, 허위 실적 제외해도 기준 충족 시 **제재 가능** / 계약 해제·해지는 가능하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은 대상 아님**
- **해제 vs 해지**: 해제=소급(무효화) / 해지=불소급(장래 소멸)
- **부정당업자 제재**: 법 § 27(9개)+시행령 § 76 합쳐 **20개** 사유, **최대 2년**, 모든 공공기관 입찰 제한 / 6개월 내 재발 시 1/2 가중 / 경미 시 1/2 감경(최소 1개월)
- **과징금**: 경미 시 대체, 단 담합·뇌물·공정위/중기부 요청 등은 불가 / 60일 내 납부
- **불공정조달행위**: 6유형(허위서류·직접생산·원산지·규격상이·우대가격·우수조달지정), 신고 시 12단계 조사, 후속=부정당제재/과징금·거래정지·해지·환수
- **부당이득금 환수**: 민사상 손해배상 예정액 성격, **납품 완료분 전부** 기준(계약보증금은 미이행분) / 9단계 절차, 허위서류=가장 높은 금액, 직접생산·원산지는 15%

☑ 자가 진단

1. 조정·중재·판결의 차이(참여·제3자·심급·강제성)를 설명할 수 있는가?
2. 국가계약분쟁조정 절차(6단계)와 기간(50일·15일)을 말할 수 있는가?
3. 법령 해석 효력의 우선순위와 행정해석기관을 구분할 수 있는가?
4. 허위서류 제출의 세 가지 효과(제재·해제해지·보증금)를 구분할 수 있는가?
5.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 후속 조치를 설명할 수 있는가?
6.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기간·가중감경과 과징금 대체 제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7. 불공정조달행위 6유형과 후속조치, 부당이득금·계약보증금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④ 예상문제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객관식 (10문항)

1. 공공조달 분쟁 해결 방법 중 ‘조정’을 선택한 경우 신청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한상사중재원
- ②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③ 공정거래위원회
- ④ 감사원
- ⑤ 법제처

정답 · 해설

✓ 정답 ② 조정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하며, ‘조정’은 제29조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는 「중재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합니다.

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13년 도입되었다.
-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③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한다.
- ④ 신청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 ⑤ 조정안은 통보 즉시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 정답 ⑤ 조정안 제시 후 15일 이내 무이의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보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3. 협상·조정·중재·판결의 특성 비교로 옳은 것은?

- ① 중재는 3심제이다.
- ② 판결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중재판정은 단심제이며 집행력이 있다.
- ④ 조정에는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다.
- ⑤ 협상은 집행력을 가진다.

정답 · 해설

✓ 정답 ③ 중재판정은 단심제이며 집행력이 있다.

중재는 단심제이고 집행력이 있습니다. 판결은 3심제·강제적 참여, 조정은 조정인이 제3자로 개입, 협상은 계약으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4. 공공조달·계약 관련 법령 해석 효력의 우선순위로 옳은 것은?

- ① 행정해석 > 정부유권해석 > 사법해석
- ② 정부유권해석 > 사법해석 > 행정해석
- ③ 사법해석 > 정부유권해석 > 행정해석
- ④ 사법해석 > 행정해석 > 정부유권해석
- ⑤ 행정해석 > 사법해석 > 정부유권해석

정답 · 해설

✓ 정답 ③ 사법해석(법원) > 정부유권해석(법제처) > 행정해석(개별 행정기관).

법원의 확정판결(사법해석)이 나오면,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정부유권해석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5.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중앙조달)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은?

- ① 국가계약법
- ② 지방계약법
- ③ 조달사업법
- ④ 전자조달법
- ⑤ 판로지원법

정답 · 해설

✓ 정답 ② 지방계약법.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조달청은 요청기관의 계약 수탁자 지위이므로 수요기관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합니다. 이후 지방계약법 제7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해 명시했습니다.

6.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 붙임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항상 전자조달시스템의 내용을 우선한다.
- ② 항상 붙임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 ③ 경쟁방법 등 내용은 입찰공고문을, 공고(게시)일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우선한다.
- ④ 경쟁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공고일자는 입찰공고문을 우선한다.
- ⑤ 둘 중 조달기업에 유리한 것을 우선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③ 내용은 입찰공고문 우선, 공고일자는 전자조달시스템 우선.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내용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을 우선하되,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을 우선합니다.

7.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시점 판단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성부분을 제외한 잔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기성부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계약보증금과 무관하게 지체일수만으로 판단한다.
- ④ 미이행분 금액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발주기관이 임의로 정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계약보증금을 의미하므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시점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에 달하는 시점으로 봅니다.

8.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해제는 장래를 향해, 해지는 소급해 효력을 소멸시킨다.
- ② 해제는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해 무효화하고, 해지는 결정 시점부터 장래 효력을 소멸시킨다.
- ③ 해제와 해지는 효력 방향이 동일하다.
- ④ 해지는 계약을 소급해 무효로 만든다.
- ⑤ 해제는 불소급적, 해지는 소급적 조치이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해제=소급(무효화), 해지=불소급(장래 소멸).

계약의 해제는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해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무효화하고, 해지는 결정 시점부터 미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불소급적 조치입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 ② 처분을 부과한 기관의 입찰에만 참가할 수 없다.
- ③ 제재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발 시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④ 처분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다.
- 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확정판결 시까지 처분이 유보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처분 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처분 기관뿐 아니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는 사유로만 묶인 것은?

- ①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단순 착오
- ② 담합·뇌물 공여·공정위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③ 발주자 귀책·공동 책임
- ④ 입찰금액 과소산정으로 책임이 경미한 경우
- ⑤ 재발 위험성이 낮고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되지 않은 경우

정답 · 해설

✓ **정답 ② 담합·뇌물·공정위 요청 등은 과징금 대체 불가.**

담합, 공정위·중기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뇌물 공여, 고의 무효입찰, 원가계산 부실산정, 타당성조사 부실 등은 경미해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경미하면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요건입니다.

OX (5문항)

11. 공공조달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은 주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중 행정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 / ✕)

정답 · 해설

정답: ○

일반적 법률 분쟁 4유형(민사·형사·행정·가사) 중 공공조달은 민사·행정소송이 주이며, 부정당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가장 빈번합니다.

1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견적서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다. (○ / ✕)

정답 · 해설

정답: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조달시스템)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내 포기 시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13. 적격심사에서 허위 실적 서류를 제외하고도 정당한 실적만으로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 (○ / ✕)

정답 · 해설

정답: ✕

허위 실적을 제외하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허위 서류를 제출한 그 자체만으로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하므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가능합니다.

14. 부당이득금 환수는 납품 이행이 완료된 부분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은 이행 완료분을 제외한 미이행분을 대상으로 한다. (○ / ✕)

정답 · 해설

정답: ○

부당이득금은 납품 완료(종결)분 전부를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은 이행 완료분을 제외한 미이행분을 대상으로 환수합니다. 예컨대 분할 납품 시 부당이득금은 총금액, 계약보증금은 잔여 납품금액 기준입니다.

15. 「조달사업법」 제21조 제1항의 불공정조달행위에는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과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이 포함된다. (○ / ✕)

정답 · 해설

정답: ○

불공정조달행위 6유형은 ① 서류 위·변조·거짓서류 제출 ② 직접생산기준 위반 ③ 원산지 거짓 표시 ④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⑤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⑥ 우수조달물품·공동상표 부정 지정입니다.